

외국법제분석 94-3

# 日本의 企業年金法制 分析

1994. 9

연구자 : 김인재(선임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目 次

I. 高齡化社會와 日本의 老後保障體系 .....	5
1. 머리말 .....	5
2. 公的年金制度의 概要 .....	6
3. 退職金制度의 概要 .....	18
II. 日本의 企業年金制度의 沿革 .....	25
1. 初期의 企業年金 .....	25
2. 適格退職年金制度의 創設 .....	26
3. 厚生年金基金制度의 創設 .....	27
4. 企業年金에 대한 勞動組合의 態度 .....	29
III. 適格退職年金制度 .....	33
1. 適格退職年金制度의 構造 .....	33
2. 適格退職年金契約의 要件 .....	34
3. 適格退職年金契約의 承認節次 等 .....	39
4. 適格退職年金의 稅法上 取扱 .....	43
5. 다른 法 및 制度와의 關係 .....	45
IV. 厚生年金基金制度 .....	47
1. 厚生年金基金의 構造 .....	47
2. 厚生年金基金의 設立과 運營 .....	48
3. 厚生年金基金의 賦金 및 紿與 .....	52
4. 厚生年金基金聯合會 .....	57
5. 厚生年金基金의 稅法上 取扱 .....	58
6. 다른 制度와의 關係 .....	60

V. 日本의 企業年金制度의 評價 .....	65
1. 企業과 從業員 입장에서의 評價 .....	65
2. 企業年金制度의 課題와 展望 .....	69
VI. 결어 -- 우리나라 退職金制度改善의 一摸索 .....	71

[附 錄]

I. 法人稅法 及 所得稅法중 關聯規定 .....	79
1. 法人稅法 .....	79
2. 法人稅法施行令 .....	84
3. 所得稅法 .....	100
4. 所得稅法施行令 .....	104
II. 厚生年金保險法중 關聯規定 .....	107
1. 厚生年金保險法 .....	107
2. 厚生年金基金令 .....	136
III. 退職年金規程(例) .....	157
IV. 우리나라의 公的年金 · 退職金 · 個人年金貯蓄及 稅法規定 .....	165
1. 所得稅法 .....	165
2. 法人稅法 .....	168
3. 租稅減免規制法 .....	170

# I. 高齡化社會와 日本의 老後保障體系

## 1. 머리말

인구구조의 급속한 高齡化와 核家族化 현상의 진행에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老齡·障害 또는 부양자의 死亡이라는 사고는, 소득의 상실·감소 또는 부양상실상태를 장기간에 걸쳐 초래함으로써 고령자, 장해자 또는 유족의 生活을 危險에 빠뜨리며, 이러한 事故에 대하여 국가, 사회 및 개인은 生活保障對策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對策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公的年金制度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한편 私的年金制度로서 企業年金制度<sup>1)</sup> 및 個人年金制度를 도입하고 있다.<sup>2)</sup>

日本의 경우에 제2차대전 이전부터 근로자 및 공무원에 대한 年金制度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敗戰後의 고도경제성장 및 사회구조의 변화와 동시에 高齡化社會가 전개됨에 따라 公的年金制度의 완비 및 근로자들의 老後保障體系의 확립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의 老後保障體系는 敗戰 이후에 厚生年金保險을 비롯한 公的年金制度, 企業에서의 退職金制度 및 企業年金制度를 중심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패전 이후의 高齡化社會에 대응한 日本의 老後保障體系의 변천은 크게 3期로 나눌 수 있다.

第1期는 敗戰 이후부터 1960년대초까지의 시기로, 公的年金의 급여수준이 빈약하여 노후보장체계가 주로 企業의 종업원에 대한 退職金制度에 의존하였다. 당시의 퇴직금제도에 의한 퇴직금은 年金보다 주로 一時金으로 지급되었다.

1) 高齡化社會의 展開에 따른 企業年金制度의 意義 및 導入의 必要性에 관하여는 金仁在, 美國의 從業員退職所得保障法制(ERISA), 韓國法制研究院, 1994.5, pp.5~8 참조.

2)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6월에 비로소 租稅減免規制法을 改正하여 세제혜택에 의한 個人年金貯蓄制度를 도입하였으나(『附錄』pp.170~172 참조), 企業年金制度는 아직 制度化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企業(진로그룹, 한솔제지 등)에서 임의적인 社內福祉年金制度를 계획하고 있거나, 個人年金가입사원들에게 일정액을 보조해주고(포항제철, 동양증권, 호남정유 등) 있을 뿐이다. 중앙일보 1994.8.5. 25면 참조.

第2期는 1960년대초부터 1985년까지의 시기로, 공적연금제도를 國民皆年金體制로 확충하여 그 급여수준을 개선하고, 한편에서는 새로이 企業年金制度를 創設함으로써 기존의 複雜금일시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려는 시기이다. 本報告書의 分析對象이 된 稅法上의 適格退職年金制度(1962년)와 후생연금보험법상의 厚生年金基金制度(1965년)가 이 때에 도입·시행되었다.

第3期는 1986년도 이후의 시기로 1985년과 1989년에 각 公的年金法을 대폭 改正하여 각 직종 내지 직역에 따라 복잡·다양하게 펼쳐져 있던 公的年金制度一元化를 도모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政策目標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基礎年金을 導入함으로써 전제도의 공통부분의 일원화를 도모하여 장래에 紙與의 公平性을 꾀하고, 장래에 紙與水準을 抑制하여 고령화가 진행된 21세기에도 安定的인 公的年金制度를 維持하고자 하는데 있었다.<sup>3)</sup>

이상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친 日本의 老後保障體系는 國民年金 및 각종 被傭者年金法을 중심으로 한 公的年金制度와 적격요건을 법제화한 企業年金制度 및 기존 退職金制度 등이 그 기본축을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 企業年金制度는 비록 도입계기는 退職金準備金에 대한 企業의 세제혜택 및 公的年金과의 調整을 도모하려는데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당시 일반화되었던 退職一時金을 年金化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老後保障體系를 확립하는 制度的 根據가 되었다. 이러한 企業年金制度는 우리나라의 노후보장체계에서도 장래 退職金制度를 改善하고 企業年金制度를 導入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日本의 企業年金制度가 어떻게 導入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實施되고 있는가를 關聯法制를 중심으로 分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企業年金制度와 밀접한 公的年金制度 및 退職金制度의 概要에 관하여도 언급한다.

## 2. 公的年金制度의 概要<sup>4)</sup>

일본의 企業年金法制를 분석하기 전에 公的年金制度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가 필요

3) 이 시기의 公的年金制度의 改革에 관한 背景과 内容에 대하여는, 佐藤進, “年金審議會意見をめぐって”, ジュリスト 第929號, 1989.3.15, pp.17~24 참조.

4) 秋保雅男, やさしい國民·厚生年金講座, 中央經濟社, 1993 및 西原道雄, 社會保障法, 有斐閣, 1991, pp.166~195 참조.

하다. 이는 현대 고령화사회에서 노후보장체계는 국가의 公的年金制度가 그 根幹을 이루고 企業年金 등 사적연금제도는 공적연금의 補完의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또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업연금의 한 축인 厚生年金基金制度가 공적연금인 厚生年金保險과의 調整(실제는 代行이지만)을 도모할 목적으로 창설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제도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1) 公的年金制度의 發展

#### 가. 公的年金制度의 沿革

일본의 公的年金制度를 이야기할 때에 통상 3種 7制度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3種 7制度란 후생연금, 공제연금 및 국민연금의 3種과 후생연금보험, 선원보험, 국가공무원등공제조합, 지방공무원공제조합, 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 농림어업단체직원공제조합, 국민연금 등의 7制度를 말한다. 이렇게 제도가 다양·복잡하게 된 背景은 공적연금제도가 일시에 체계적으로 성립되지 않고 근로자(피용자), 공무원 및 자영업자 등의 職種에 따라 다른 시기에 독자적인 연금제도로 도입되었으며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職域에 따라 각기 독립하여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에서는 공무원등에 대하여 이미 明治시대에 官業共濟組合을 필두로 現業 官廳에 共濟組合이 설립되어 1920년 이후 「共濟年金」이 실시되었으며,<sup>5)</sup> 이 공제연금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定額年金 + 報酬比例年金을 지급하였다. 이와 별도로 民間勤勞者에 대하여는 「船員保險法」(1939년)을 비롯하여 생산직 남자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勞動者年金保險法」(1942년)이 제정되고 이후 「退職積立金 및 退職手當法」을 흡수하여 사무직근로자와 여자도 적용대상으로 하는 「厚生年金保險法」(1944년)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노령연금의 수급에 20년이라는 장기의 가입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실

5) 明治23年(1890년)에 軍人恩給法과 官吏恩給法을 제정하여 군인·관리를 대상으로 恩給制度를 실시하고, 大正12年(1923년)에 「恩給法」(1923.4.14, 法律 第48號)을 제정하여 官業共濟組合을 설치하였다. 그 이후 私立學校敎職員共濟組合法(1935.5.1 法律 第128號), 農林漁業團體職員共濟組合法(1944년; 1958.4.28 法律 第99號), 國家公務員共濟組合法(1948.6.30, 法律 第69號; 1958.5.1 法律 第128號로 전문개정), (舊)市町村職員共濟組合(1955년), 地方公務員共濟組合法(1962.9.8, 法律 第52號) 등이 시행되었다. 健康保險組合聯合會 編, 社會保障年鑑(1992年版), 東洋經濟新報社, 1992, p.285.

제적인 급여는 시행되지 못하고, 1956년의 법개정으로 현재의 형태로 바뀌면서 공제조합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자에게 定額年金+報酬比例年金이 지급되었다. 한편 자영업자 및 농림어업종사자 등 소위 被傭者年金制度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國民年金은 「國民年金法」(1959.4.16, 法律 第141號)으로 법제화되어, 1961년 4월 1일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酿出型 地域保險으로 개시되었다. 이 국민연금에서는 피보험자에게 定額年金만 지급되었다. 國民年金制度의 실시와 더불어 비로소 勤勞者는 후생연금보험, 公務員등은 공제연금 그리고 自營業者 및 農漁民은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공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게되는 「國民皆年金時代」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후생연금의 급여수준이 노후보장에 미흡하였으며, 피용자의 피부양배우자(被傭者の妻)의 無年金 내지 급여와 비용부담에 있어서 각 제도간 格差<sup>6)</sup> 등의 문제가 남아있었다. 다만 후생연금의 급여수준에 대하여는 1973년 厚生年金保險法의 改正(法律 第92號)으로, 정액부분의 단가인상과 표준보수의 재평가를 통하여 현역가입자의 평균표준보수의 60%정도로 표준적인 노령연금액을 인상하고,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자동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소위 物價運動制가 도입되었다. 그 결과 급여수준은 꾸준히 개선되어 1985년도에 30년가입의 夫婦인 경우에 표준적인 노령후생연금액은 月 158,000엔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紿與水準의 改善은 다른 한편에서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연금제도가 급속하게 성숙됨으로써 후세대의 부담율을 급속히 가중시키고 장래의 공적연금제도가 危機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일부 현실로 나타났다.<sup>7)</sup> 그리하여 공적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으며, 정부는 “공적연금제도 전체의 長期的 安定과 統合性있는 發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4년 2월 24일 내각의 결정으로 연차별 제도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이 결정의 연장선에서 公的年金制度

6) 受給資格要件, 保険料, 紿與算定構造등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1989년 연금개혁의 주관심사였으며, 특히 費用負擔의 調整을 위하여 「被傭者年金制度間の費用負擔の調整に關する特別措置法」(1989.12.22, 法律 第87號)이 制定되었다.

7) 日本鐵道公社(JR)共濟年금의 재정파탄이 그 예이며, 이를 계기로 3公社의 공제연금제도와 국가공무원공제연금제도간에 財政的 調整을 행하고, 국철공제조합의 연금급여부족분을 매꾸기 위한 제도통합이 행해졌다. (國家公務員共濟組合 및 公共企業體職員共濟組合制度의 통합등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3.12.3, 法律 第82號))

의 大改革이 이루어졌다.<sup>8)</sup>

公的年金의 大改革은 1985년 5월 1일의 「國民年金法等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법률 제34호) 및 동년 12월 27일의 국가공무원등공제조합법을 비롯하여 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법, 농림어업단체공제조합법, 지방공무원등공제조합법의 개정법(법률 제105호, 제106호, 제107호, 제108호) 등의 성립·공포에 의해 이루어졌다(시행일 1986.4.1). 이 개혁으로 비로소 國民年金은 자영업자와 농어민을 중심으로 한 地域型保険에서 모든 사람들의 基礎年金으로 변혁되었다. 근로자(피용자), 공무원, 가정주부, 학생 및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였으며, 무직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본정부가 장기적으로 계획한 모든 연금의 일원화를 위한 1차 작업으로서 국민연금을 「基礎年金」으로 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개정된 후생연금보험법 및 각 공제조합법등은 각 被傭者에 대한 報酬比例年金을 지급하는 구조로 개정되었다. 共濟年金에는 여기에 職域加算部分이 추가되었다.

이후 1989년에 연금실질가치의 조정, 피용자연금의 일원화, 자영업부문연금의 2층부문 도입<sup>9)</sup>, 연금재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인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2차 공적연금의 개혁이 있었다.<sup>10)</sup> 또 1991년 4월 1일부터는 비근로학생도 국민연금의 강제가입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본격적인 연금사회에 대응하는 기반을 조성하였다.<sup>11)</sup>

#### 나. 現行 公的年金制度의 基本構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現行 公的年金制度는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新年金制度가 그 제도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즉 종전에 각각 분립되어 있던 3종·7제도의

8) 이 때의 公的年金制度改革의 背景과 内容에 관하여는 佐藤進, 전개논문, pp.17~18 및 村上清, 年金制度の現状と將來, 前掲 社會保障年鑑, pp.34~38 참조.

9) 1989.12.22일의 法律 第86號에 의한 「國民年金基金制度」. 동제도는 1991년 4월부터 시행되어, 전국 47개 都道府縣에 地域型국민연금기금 및 16개의 職能型국민연금기금이 설립되었다. 健康保險組合聯合會編, 전개서, p.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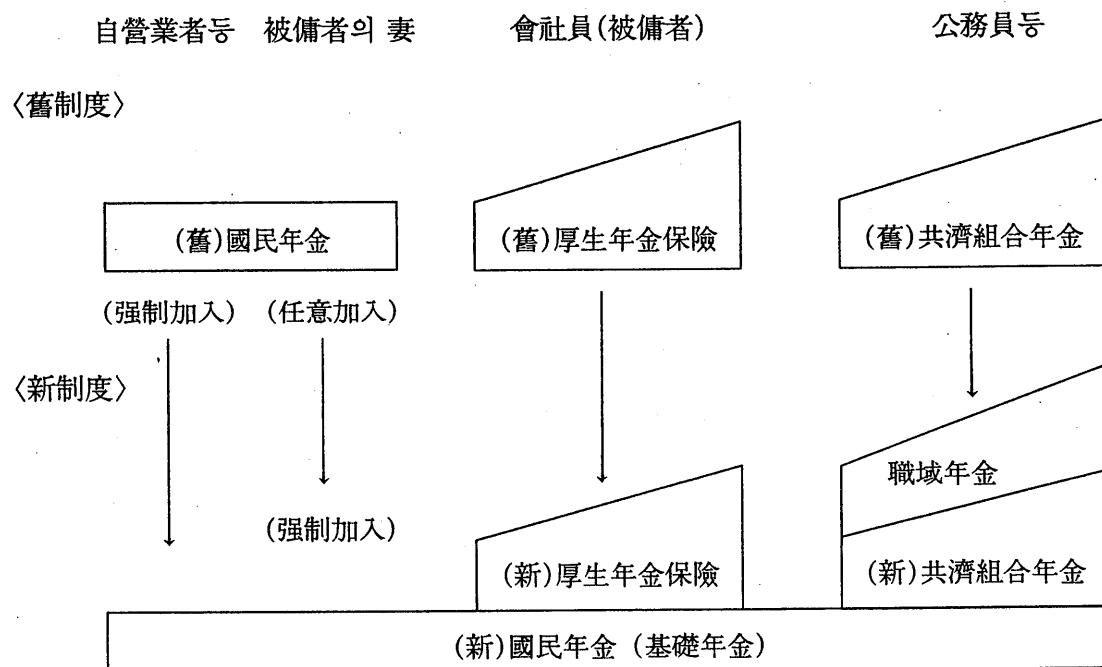
10) 年金審議會, 國民年金·厚生年金保險制度改正に關する意見(1988.11.29), ジュリスト 제929호, 1989.3.15, pp.40~41 참조.

11) 1985년과 1989년에 개혁된 公的年金의 現狀과 問題點에 대하여는 新井鋼太郎·五島淺男, 退職金·年金制度の設計と運用, 經營書院, 1993, pp.234~248 참조.

공적연금제도는 모든 國民을 대상으로 (新)國民年金에 의한 基礎年金을 토대로 하고, 이 基礎年金에 추가하여 (新)厚生年金保險 및 (新)共濟組合年金이 報酬比例年金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 농어민 및 새로이 강제가입대상이 된 피용자의 妻 등은 國民年金으로부터, 피용자와 공무원등은 國民年金 및 해당 被傭者年金으로부터 각각 年金을 支給받는다. 때문에 피용자등의 공적연금제도는 소위 二層構造 (공제연금에서는 三層構造)를 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sup>12)</sup>

이상의 現行 公的年金制度를 舊制度와 比較하여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公的年金制度의 構造와 新舊制度의 比較



12) 新制度에 의하면, 근로자는 노후에 夫와 妻가 각각 국민연금에서 정액의 基礎年金을 수급하고, 夫는 후생연금에서 보수비례연금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그러나 종래의 후생연금은 60세에 지급되므로 개정후에도 夫의 연금은 정액부분과 보수비례부분 모두 60세부터 지급된다. 다만 60세부터 64세 까지의 연금은 후생연금보험에서 지급받는다.

## (2) 國民年金制度

국민연금제도는 日本憲法 제2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념에 기초하여 老齡, 障害 또는 死亡에 의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이 손상되는 것을 國民의 共同聯帶에 의하여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국민생활의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國民年金法 第1條) 이 제도는 원래 자영업자, 농림어업종사자 등 소위 피용자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 1961년 4월 1일부터 실시되었으나, 1986년 4월부터 피용자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공통의 基礎年金을 지급하는 제도로 발전하였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동제도는 일정기간 일정한 保險料를 납부한 경우에 급여가 지급되는 酒出制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 가. 保險者

국민연금사업은 정부과 관장하므로 국민연금의 保險者는 政府(厚生省)이며(제3조),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청장관이 裁定한다(제16조). 裁定이란 연금수급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어도 裁定이라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후생장관 또는 사회보험청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사전에 年金審議會<sup>13)</sup>에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제6조).

### 나. 被保險者

국민연금의 強制加入의 피보험자는 급여와 보험료부담방법의 차이에 따라 제1호피보험자, 제2호피보험자 및 제3호피보험자의 3종류로 분류된다.(법 제7조제1항제1호내지 제3호)

① 第1號被保險者は 자영업자, 농어민, 주간부학생, 무직자 등 일본국내에 주소를 가지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이다. 다만 피용자연금의 노령연금수급권자는 적용 제외된다. ② 第2號被保險者は 厚生年金保險의 被保險者(피용자) 및 각 공제조합의 組

13) 「年金審議會」는 국민연금사업 또는 후생연금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후생장관 또는 사회보험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조사·심의·의견을 진술하는 후생장관의 자문기관이다. 秋保雅男, 전계서, p.153.

合員(공무원등)이다. 제1호피보험자와 달리 20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者도 제2호 피보험자가 된다. 이들에게는 2층이 후생연금보험 또는 공제조합, 1층이 국민연금의 구조를 갖는다. ③第3號被保險者는 제2호피보험자의 被扶養配偶者로서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피용자의 무직업의 妻는 모두 제3호 피보험자가 되게 되었다.

이 밖에 일본국내에 주소를 가지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와 일본국적을 가지는 자로서 일본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에게는 任意加入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부칙 제5조제1항제2호, 제3호).

강제가입피보험자의 資格得喪은 법률에 정하는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발생 하지만(제8조, 제9조), 임의가입의 피보험자는 都道府縣지사에게 申請한 날에 자격을 취득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에 자격을 상실한다.(부칙 제5조제2항 내지 제8항)

#### 다. 給與의 種類 및 受給要件

국민연금은, 피보험자의 노령, 장해 및 사망이라는 保險事故(제1조, 제2조)에 대응하여, 노령기초연금, 장해기초연금, 유족기초연금, 과부연금 및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한다.(제18조) 연금의 支給期間은 지급하여야 할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하여 사망등으로 권리가 소멸한 달까지이다. 연금급여는 2월, 4월, 6월, 8월, 10월 및 12월 연 6회 支給 한다.(제18조제1항 및 제3항)

##### ① 老齡基礎年金

노령기초연금은 保險料納付畢期間<sup>14)</sup>, 保險料免除期間<sup>15)</sup> 및 合算對象期間<sup>16)</sup> 등을 합

14) 「保險料納付畢期間」이란 제1호피보험자로서의 피보험자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제2호피보험자로서의 피보험자기간 및 제3호피보험자로서의 피보험자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국민연금법 제5조제2항)

15) 「保險料免除期間」이란 제1호피보험자의 피보험자기간 중, 일정한 요건(법 제89조 또는 제90조의 규정)을 만족한 것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면제받은 기간(法定免除) 또는 저소득등을 이유로 신청에 의하여 승인된 보험료면제간(申請免除)을 말한다.(국민연금법 제5조제3항 및 부칙 제8조제1항)

16) 「合算對象期間」이란 제1호피보험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해외주재자의 기간등) 중 국민연금의 피보험자가 되지 않았던 기간 및 제2호피보험자기간중 20세 이전의 기간과 60세 이

산한 기간이 25年 이상인 자에 대하여 65세부터 지급되는 연금이다(제26조). 1989년의 노령기초연금액은 666,000엔으로 되어 있으며(제27조), 그 이후의 각연도의 연금액은 이를 기준으로 物價變動率을 곱하여 계산된다(年金額의 自動改定, 제16조의2). 예를 들어 1992년도의 물가변동율은 1.089이므로 연금액은 725,300엔이며, 이는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간 국민연금의 보험료납부필기간을 가진 자에게 65세부터 지급되는 금액이다. 따라서 보험료납부필기간이 40년이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725,300\text{엔} \times \{(보험료납부필월수 + 보험료면제기간} \times 1/3) / 480\text{개월}^{17)}\}$ 이라는 計算式에 의한다.

### ② 障害基礎年金

장해기초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최초로 의사·치과의사의 진료를 받은 날(初診日) 이전에 保險料納付畢期間이 가입기간의 3분의 2이상인 경우에 국민연금법시행령의 별표에 정하는 장해등급(1급과 2급)에 따라 지급된다.(제30조) 장해기초연금액은 보험료납부필기간의 長短에 관계없이 노령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666,000엔(1989년도 가격)이며, 1급장해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장해기초연금액은 666,000엔의 1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장해기초연금액도 매년 물가변동율에 의하여 자동개정된다.

### ③ 遺族基礎年金

유족기초연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한 달 전에 保險料納付畢期間이 가입기간의 3분의 2이상인 경우에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 전에 사망한 자가 노령기초연금의 수급자격기간을 만족하고 있는 경우에 그의 유족에게 지급된다(제37조). 遺族의 範圍는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에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妻와 子로서, 妻는 18세미만의 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하고, 子는 18세 미만의 子이어야 한다(제37조의2). 유족기초연금액도 666,000엔(1989년도 가격)이며(제38조), 물가변동율에 의하여 자동개정된다. 妻가 받는 연금액에는 子의 가산액이 더해진다(제39조, 제39조의2).

---

후의 기간을 말한다(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이 합산대상기간은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만 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俗稱 「カラ期間」이라고도 부른다.

17) 1941년 4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480개월」 대신에 「가입가능연수×12」를 적용한다.

#### ④ 附加年金<sup>18)</sup>

附加年金은 국민연금의 제1호피보험자가 부가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추가지급된다. 부가보험료월액은 400엔으로 제1호피보험자가 국민연금보험료 9,700엔과 함께 납부할 수 있다. 부가연금액은 「200엔×부가보험료납부필월수」의 금액이 노령기초연금에 추가하여 지급된다(제43조, 제44조).

#### ⑤ 寡婦年金

과부연금은 제1호피보험자로서 보험료납부필기간과 보험료면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5년 이상인夫가 연금을 받지 않고서 사망한 경우에 10년 이상 혼인기간을 계속 한 치에 대하여 60세부터 65세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에 지급된다(제49조). 연금액은 노령기초연금의 4분의 3의 금액이다.

#### ⑥ 死亡一時金

보험료납부필기간이 3년 이상인 제1호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노령기초연금·장해기초연금을 받지 않고서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이다(제52조의2). 연금액은 보험료의 납부연수에 따라 10만엔부터 20만엔이다.

### 라. 國民年金의 財政

國民年金의 財政은 保險料와 國庫負擔에 의하여 운영된다.

매년의 기초연금급여에 요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총수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된 보험료에 의한다(제87조). 제1호피보험자의 保險料는 월액 9,700엔(1992.4.부터)의 定額이며, 제2호 및 제3호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피용자연금 보험자가 당해 피보험자수에 따라 소위 보험료총액을 양출금으로 일괄하여 부담한다.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자 등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설정되어 있다(제87조). 또 제1호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월액 400엔의 부가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본래의 연금에 추가된 附加年金을 받을 수 있다(제43조).

國庫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양출금의 3분의 1, 보험료면제기간의 노령급여부분,

18) 이하 부가연금, 과부연금, 사망일시금은 제1호피보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독자적 급여이다. 근로자 및 공무원등에 대하여는 각 피용자연금에서 독자적인 급여가 설계되기 때문이다.

부가연금비용의 4분의 1 및 국민연금운영의 사무비전액을 부담한다(제85조).

### (3) 厚生年金保險制度

후생연금보험은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勤勞者(被傭者)의 노령·장해·사망등의 사고에 대하여 연금 및 일시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나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후생연금보험법 제1조). 이 제도는 오늘날 국민연금과 함께 일본의 공적연금의 大支柱가 되어 있다.<sup>19)</sup> 한편 1965년에는 후술하는 후생연금 기금제도가 창설되어 기업연금과의 조정이 도모되게 되었다.

#### 가. 保險者

후생연금보험은 政府가 관리자로서 保險者이다. 다만, 후생연금기금의 가입자에 대하여 기금이 대행하는 부분 및 기금독자적인 급여에 대하여는 厚生年金基金이 保險者가 된다. 후생연금보험의 裁定者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청장관이다(제33조). 또한 후생장관 또는 사회보험청장관은 후생연금보험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사전에 연금심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제5조, 6조 제3조의2).

#### 나. 被保險者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는 適用事業所에 雇傭되는 65세 미만의 자이다(제9조). 다만 65세까지 노령기초연금의 수급자격기간을 만족하지 못한 65세 이상의 자도 적용사업소에 사용되는 경우에 道都府縣지사에게 신청하여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령임의가입피보험자, 부칙 제4조의3).

被保險者는 가입방법에 따라 3종류로 나뉜다. ①強制被保險者는 강제적용사업소에 사용되는 자이다. 강제적용사업소란 상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소(다만 법인은 5인 미만도 포함)로 업종과 규모가 법정되어 있다(제6조제1항). ②任意包括被保險者는 임의포괄적용사업소에 사용되는 자이다. 임의포괄적용사업소란 강제적용사

19) 1991년 3월말 현재 후생연금보험의 적용사업소는 141萬 事業所이고, 被保險者數는 3,100萬名이라 한다. 健康保險組合聯合會編, 전계서, p.84.

업소 이외의 사업소로서 사업주가 종업원의 과반수의 동의와 都道府縣지사의 인가를 받아 적용사업소로 된 것이다(제6조제3항, 제4항). ③任意單獨被保險者는 적용사업소 이외의 사업소에 사용되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사업주의 동의와 지사의 인가를 받아 단독으로 피보험자가 된 자이다(제10조).

#### 다. 紙與의 種類 및 受給要件

##### ① 老齡厚生年金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기간을 1개월 이상 가지는 자는 국민연금의 노령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 때에 노령후생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제42조). 노령후생연금액은 報酬比例年金額에 加給年金額을 가산한 금액이며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報酬比例年金額 : 평균표준보수월액  $\times$  (10/1000~7.5/1000)  $\times$  피보험자기간의 월수  $\times$  물가변동율(제43조). 이 때 (10/1000~7.5/1000)부분은 1986년 4월 1일 현재의 연령에 따라 결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59세인 자는 10/1000이며 40세미만인 자는 7.5/1000이다.

- 加給年金額 : 노령후생연금을 받게 된 때에 후생연금보험의 被保險者期間이 20년 이상인 경우에 그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配偶者 또는 子가 있으면 加給年金額이 가산된다. 그 금액은 배우자가 202,400엔, 첫째와 둘째의 子가 각각 202,400엔 세째이하의 子는 각각 67,500엔이다. 배우자의 가급연금액은 배우자가 65세가 되어 자기자신의 老齡基礎年金을 받게 될 때까지 지급된다.

##### ② 老齡厚生年金의 特別支給

노령기초연금의 자격기간을 만족하고 있는 자가 60세가 된 후에 퇴직하여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있거나 퇴직하여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에 60세가 된 때에는 65세가 될 때까지 독자적인 급여로서 老齡厚生年金(정액부분+보수비례연금)이 지급된다(부칙 제12조).

##### ③ 障害厚生年金 · 障害手當金

障害厚生年金은 국민연금의 障害基礎年金의 대상이 되는 障害(1급, 2급)가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기간중에 初診日이 있는 傷病으로 발생한 때에 지급된다(제47조). 장해기초연금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障害도 후생연금의 장해등급표에 해당한 때에

는 독자적인 장해후생연금(3급) 또는 障害手當金이 지급된다(제55조).

#### ④ 遺族厚生年金

遺族厚生年金은 피보험자로서 保險料納付畢期間이 가입기간의 2/3이상인 자, 1급 · 2급의 障害厚生年金의 受給者, 노령기초연금의 자격기간을 만족하고 있는 자의 死亡에 의거하여 遺族에게 지급된다(제58조). 遺族의 範圍는 유족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유족 이외에, 子가 없는 妻, 55세 이상의 夫·父母, 18세 미만의 孫, 55세 이상의 祖父母이다(제59조). 夫, 부모, 조부모에게는 60세까지 지급된다.

### 라. 厚生年金保險의 財政

保險給與에 필요한 비용은 保險料, 積立金의 運用收入등에 의하여 충당된다. 保險料率은 1991년 1월부터 標準報酬月額에 대하여 男子 145/1000(坑內員 163/1000), 女子 141.5/1000으로 이를 事業主와 被保險者가 절반씩 부담한다(제81조, 제82조). 다만 여자의 보험료에 대하여 1994년까지 남자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표준보수월액은 최저 80,000엔 최고 530,000엔가지 30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피보험자의 표준보수는 매년 8월 1일 현재에 고용되어 있는 사업소에서 전 3개월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결정된다.

## (4) 共濟組合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한 共濟組合에는, 國家公務員登共濟組合(국가공무원, 일본전화통신공사(NTT), 일본철도공사(JR), 일본담배공사), 地方公務員登共濟組合(지방공무원, 縣市町村직원), 私立學校敎職員共濟組合(사립의 초중고대학의 교직원) 및 農林漁業團體職員控除組合(농업·어업·임업단체의 직원) 등 4종류가 있다.<sup>20)</sup>

공제조합의 年金給與에는 ①退職共濟年金, ②障害共濟年金 및 ③遺族共濟年金 등이 있으며, 이들 3개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의 노령기초연금, 장해기초연금 및 유족기초연금의 追加年金으로 지급된다. 退職共濟年金은 공제조합의 조합원기간이 있는 자

20) 각 共濟組合의 근거법률은 위 註 3) 참조. 각 共濟組合의 歷史와 現況은 健康保險組合聯合會 編, 전계서, pp.58~62 참조.

가 노령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 때에 그 추가연금으로 지급되며, 원칙적으로 65세에 지급이 개시되지만, 후생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60세부터 65세까지는 特別支給의 退職共濟年金이 지급된다. 퇴직공제연금액은 보수비례연금액으로 후생연금보험의 노령 후생연금 상당액에 職域年金相當額을 더한 금액이다. 이에는 다시 가급연금액이 합산 된다. 이외에 장해공제연금·장해일시금과 유족공제연금의 수급요건도 후생연금보험의 그것과 동일하고 각 연금액은 厚生年金相當額+職域年金相當額을 기초로 계산된다. 이와 같이 공제연금의 보수비례부분은 기본적으로 후생연금보험과 구조를 같이 하고 있으며, 그 위에 「職域年金」이 각각 가산되어 있다.

이상의 日本의 公的年金制度를 比較·要約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 3. 退職金制度의 概要

#### (1) 退職金制度의 歷史와 課題

日本의 退職金制度는 연금지급에 의한 형태보다 一時金支給의 형태로 보급되어 온 점에 특징이 있다. 이 퇴직금제도는 숙련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로보상적·은혜적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의 이해와 퇴직 이후의 생활보장수단을 확보하려는 근로자(종업원)의 이해가 합치한 勞動慣行의 產物이었다.<sup>21)</sup> 그것이 전후에 勞動組合의 退職金要求運動에 의하여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널리 보급되고, 또 勤勞基準法에서 就業規則의 상대적 필요기재사항으로 退職手當을 열거함으로써,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확립되었다. 그리하여 퇴직금은 은혜적 급여가 아니라 賃金으로 해석되어 근로조건의 하나로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세법상 退職給與充當金制度(1952년)를 신설하고, 중소기업퇴직금공제법(1959년)이 제정됨으로써 퇴직금제도의 실시가 각 기업에서 일반화되었다.

21) 이 점이 우리나라 勤勞基準法 제28조가 退職金制度의 設計를 法定化(특히 退職金의 支給水準)하고 있는 것과 중요하게 대비된다. 다만 日本에서도 한 때(1936~1944년) 「退職積立金及退職手當法」에 의하여 50인 이상의 공장법 및 광업법의 적용사업장에 법정퇴직금제도를 실시한 바 있다. 荒木誠之, 退職金·企業年金をめぐる立法論的考察, 日本勞動協會雜誌 제323호, 1986.5, p.24.



그런데 退職一時金은 보통 勤續年數에 따라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즉, 「退職金算定基礎額×勤續年數別 支給率」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당시 고도경제성장시대의 대폭적인 임금인상과 종업원의 장기근속은 退職金을 누적적으로 증가시켰다. 다만, 당시에는 고도경제성장으로 장기근속의 정년퇴직자는 아직 적었으며, 기업도 퇴직금지급에 대한 비용부담에 크게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노동조합의 퇴직금의 증액요구에 비교적 안이하게 대응하였다.

그 이후 1960년대에 들어와 長期勤續의 停年退職者가 증가하면서 退職金支給이 기업에 경영상 무거운 부담이 되기 시작하였다.<sup>22)</sup> 이에 기업에서는 퇴직금지급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퇴직금의 지급계수(지급율)는 勞動組合과의 團體協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낮추는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 대신에 退職金을 減額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①퇴직금산정기초의 억제, ②퇴직금제도의 임금체계와의 분리 및 ③기업연금제도의 도입 등을 채택하려고 하였다. 즉, 1970년대 중반에 많은 기업이 임금인상시 상승분이 곧바로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特別給·調整給이라는 명칭의 소위「第2基本給」을 도입하였으며, 퇴직금제도를 賃金體系와 分離하기 위하여 보수표와 別途의 退職金算定基礎報酬表를 만들거나 퇴직금을 정액방식 또는 점수방식에 의하여 지급하는 방책을 강구하였다.<sup>23)</sup> 그러나 이러한 방책들은 임금체계를 복잡하게만 만들었지 근로자·노동조합측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침으로써 큰 실효성이 없었다. 그리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이 많은 기업들은 퇴직일시금제도의 합리화방안을 세제혜택에 의한 企業年金制度에서 찾게 되었다.

## (2) 退職給與充當金制度

退職給與充當金制度란 1952년에 도입된 退職金의 社內積立에 대한 세법상의 우대 조치로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한 退職金規程을 갖는 기업이 대차대조표상 퇴

22) 勤勞者 입장에서 退職一時金制度는 이외에도企業이 평상시 퇴직금의 財源을 社外積立方式이 아닌 社內留保를 함으로써,企業의 倒産등의 경우에 從業員의 受給權確保가 미흡하여 從業員의 老後設計를 불안하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伊藤宗武·藤野信雄·吉牟田勲, 企業年金, 財經詳報社, 1991, p.26 참조.

23) 新井鋼太郎·五島淺男, 전개서, pp.14~16 참조.

직급여충당금계정을 설치하여 매사업연도의 결산시 퇴직금에 충당하는 비용으로서 소정의 한도액 이내의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 이월시키는 경우에 그 이월금액을 損金(必要經費)算入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法人稅法 第55條, 所得稅法 第54條) 이 제도는 매년의 퇴직금의 증가분이 실제로는 퇴직금의 적립분으로 區分會計되지 않으면서도 非課稅로 자금의 社內留保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우대조치였다.

每事業年度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의 이월금액에는 일정한 한도가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0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退職金規程이 團體協約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종업원에게 주지되어 있는 就業規則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당기말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이월한도액은, ①期末에 在籍從業員이 모두 자기사정으로 퇴직하였다고 가정한 경우의 當期末의 퇴직금의 要支給額에서 前期末의 퇴직금의 요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즉 當期중에 발생한 자기사정퇴직금의 요지급액; 發生額基準)과 ②충당금의 누적한도인 요지급액의 40%에서 전기말의 이월퇴직급여충당금의 기말현재가액을 공제한 금액(累積限度額基準)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퇴직금규정이 위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③기말에 재적종업원에 대하여 당기말에 지급한 보수총액의 6% 상당액(報酬總額基準)과 위 ①, ②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이 당기의 이월한도액이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가 대폭 인상된 시기에 기업의 법인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채용된 법인세법상의 우대조치로서, 손금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일정액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업입장에서는 법인세부담이 면제되어 이익금의 社內留保가 가능하다고 하는 커다란 利點이 있다. 그러나 종업원측에서 보면, 퇴직급여충당금은 대차대조표상의 名目的인 留保(nominal reserve)일 뿐 퇴직금지급이 保證되는 積立金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 퇴직금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은 「賃金支給의 確保等에 관한 法律」<sup>24)</sup>에 의한 退職手當의 保全措置의 대상이 된다.

---

24) 동법률(1976.5.27, 法律 第34號)은 기업이 倒産한 경우에도 종업원의 賃金 및 退職金등이 불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사전에 조치할 것이 법제화되어 있다. 즉, ①企業이 倒産하여 임금불지급이 있을 경우에는 國家가 일부를 대신 支給하고(제7조), ②社內預金이 불지급되지 않도록 保全措置를 강구하고(제3조), ③退職手當의 保全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제4조).

### (3) 中小企業退職金共濟制度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中小企業退職金共濟法」(1959.5.9, 法律 第160號)에 의거하여 중소기업퇴직금공제사업단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전체 종업원을 피공제자로 하여 사업단과 退職金共濟契約을 체결함으로써 이 제도에 가입한다. 그리고 종업원 단위로 매월 일정액의 부금을 사업단에 납부한다. 사업단은 부금을 운용하여 퇴직금의 재원으로 하고 피공제자인 종업원이 퇴직할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中小企業의 範圍는 제조업·건설업등의 업종으로 종업원 3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1억엔 이하의 기업, 도매업에서는 종업원 1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3,000만엔 이하의 기업, 소매업·서비스업에서는 종업원 50인 이하 또는 자본금 1,000만엔 이하의 기업으로 되어 있다(제2조제1항).

사업주는 피공제자 1인당 최저 4,000엔 내지 최고 26,000엔의 賦金月額을 사업단에 납부하여야 한다.(제4조제2항) 賦金은 個人企業의 경우에는 必要經費로 인정되고 法人企業인 경우에는 法人稅法上 損金으로 계상할 수 있다. 사업단은 사업주로부터 납부된 부금을 운용하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국가는 부금중 일정액을 보조하고 있다(제95조).

### (4) 特定退職金共濟制度

위의 중소기업퇴직금공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부 商工會議所에서 지역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퇴직금의 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1959년 중소기업퇴직금공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들 지역적인 퇴직금공제제도에 대하여도 세법상의 우대조치가 강구된 것이 이 「特定退職金共濟制度」로서 所得稅法施行令 제66조에 그 설립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특정퇴직금공제제도의 실시주체는 상공회의소, 상공회, 상공회연합회, 중소기업단체중앙회 등의 공익법인이며, 1989년 1월 현재 1,060개 단체가 실시하고 있다.<sup>25)</sup>

---

25) 新井鋼太郎·五島淺男, 전계서, p.59.

동제도의 부금은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와 같은 방식이며, 부금이나 사무비에 대한 국고보조는 없지만 많은 市町村이 사무비나 부금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퇴직금액은 단체마다 독자적인 지급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절반 가까이 생명보험회사가 작성한 지급표를 이용하고 있으며, 연금시대를 맞이하여 대부분의 단체가 연금에 의한 수급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II. 日本의 企業年金制度의 沿革

오늘날 일본의 法定企業年金制度에는 法人稅法에 의한 適格退職年金制度와 후생연금보험법에 의한 厚生年金基金(調整年金)의 2종류가 있으며, 非法定制度로서 일부 기업이 독자적으로 自社年金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들 각 제도는 각각 그 발전과정을 달리하고 있다.

### 1. 初期의 企業年金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주로 퇴직일시금의 형태이었으며, 극히 일부의企業에서 패전 이전부터 年金支給을 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가장 오래된 退職年金으로는 大正初期에 발족한 鐘紡의 「종업원연금급여규정」과 1914년에 실시된 三井商店의 「被用人恩給規程」을 들고 있다. 이들 제도는 그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은급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昭和時代에 들어와서도 민간기업의 연금제도는 별로 보급되지 않았으며, 패전 이전에는 三井, 三菱 등의 재벌기업 또는 극소수의 대기업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有期年金을 시행한 정도였다.<sup>26)</sup>

패전 이후 1952년에 十條製紙, 三菱電機가 기업연금제도를 채용하면서 연금제도는 새로운 퇴직급여의 형태로서 주목을 받았다.<sup>27)</sup> 이러한 기업연금제도는 제2차대전후 미국의 산업계에 널리 보급되고 있던 企業年金(employee pension plan)<sup>28)</sup>의 영향

26) 村上清・五島淺男, 企業年金の新設計, 日本生産性本部, 1986, p.9.

27) 十條製紙의 퇴직연금제도는 미국의 「크라운 세라백」제지회사의 年金制度를 모방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①적립방식, ②임의가입, ③노사공동각출, ④퇴직일시금과 병합제, ⑤퇴직시에 모든 재원을 신탁회사에 불입하고 신탁회사가 퇴직당사자에게 연금을 지급, ⑥연금액은 평균보수와 가입연수에 비례, ⑦지급기간은 10년의 확정연금이었으며, 三菱電機의 연금제도는 이와 대조적으로 非積立方式의 비각출연금으로 종래의 퇴직일시금을 전면적으로 연금화한 것이었다. 第一生命保險會社編, 企業年金白書, 社會保險廣報社, 1982, pp.11~12 참조.

28) 美國의 企業年金制度의 沿革과 發展에 관하여는 金仁在, 전계서, pp.9~20 참조.

을 받은 것으로서 대부분 非積立의 自社年金이었다. 다만 일부에서는 保險 내지 信託을 이용한 적립방식을 채용하기도 하였다.

초기의 企業年金은 근로조건의 하나가 된 기준의 퇴직금제도와 다른 새로운 企業福祉(fringe benefit)制度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퇴직금과는 별도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公的年金인 후생연금의 급여수준이 매우 빈약하여 이에 대신하여야 할 민간의 老後保障體系로서의 기대도 커다. 勞使의 共同醸出에 의한 소위 企業次元의 厚生年金이라는 認識에서 설계된 것이 많았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사회가 바야흐로 高齡化와 低成長의 時代로 이행되면서 퇴직금제도 그 자체가 기업에 무거운 부담이 되고 그合理化方案이 企業年金에서 구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신설되는 기업연금은 대부분 기준의 퇴직금의 전부 내지 일부를 이행하는 방향에서 설계되고 있었다. 한편 공적연금을 확충하여 노후보장의 기초는 厚生年金이 담당하고, 企業年金은 그 보완적 지위를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기업연금의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 適格退職年金制度의 創設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2차대전후 일본에서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기업연금이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나, 保險·信託을 이용한 積立方式에 의한 미국의 그것과 달리 非積立의 自社年金이 대부분이었고, 전체기업수에 비하여 그 보급상태가 미미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일본사회가 퇴직일시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을 뿐만 아니라 稅制面에서도 퇴직금의 年金化에 그다지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적립방식에 의한 기업연금은 장기간에 걸친 연금지급의 약속을 기업의 경영상태에 관계없이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다고 인식한 從業員側에서는 非積立 自社年金의 受給權確保에 불안을 느끼고 勞動組合을 중심으로 기업에 명확한 자금의 적립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런데 당시의 일본의 稅制는 기업연금의 積立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원래 기업이 매년 退職年金規程에 규정된 연금의 지급준비를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醸出하여 積立할 때, 이 적립금은 오로지 연금지급을 위한 자금으로 회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企業立場에서는 稅法上 損金處理를 원하였다. 물론 손금처리가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세법상 기업이 손금으로 처리하려면 그 醸出金은 從業員에 대한 報

酬로 보게 되어 있었다. 또 세법상 會社側의 支出이라고 하려면 그 金額을 受領하는 相對方이 있어야 하는데, 기업이 적립하기 때문에 종업원은 실제로 아직 한푼도 수령하지 않았는데도 세금만 과세되어 매월의 수령보수가 감소해버리게 된다. 從業員으로서는 실제로 年金을 受領하고 있다면 몰라도 수십년 뒤에 연금을 받게된다는 期待만으로 현재 稅金이 課稅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었다. 반대로 종업원이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형식으로 적립하면 이번에는 회사측에서 손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에서 적립방식의 기업연금이 널리 보급되고 있었던 것은 거기에 적합한 稅法<sup>29)</sup>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日經連과 信託協會·生保協會 등에서는 1960년 대 초기에 이를 모방한 세제도입운동을 전개하였다. 즉, 회사가 積立하는 賦金은 捐金으로 처리하고, 종업원에게는 실제로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제도를 참고로 1962년 法人稅法 및 所得稅法의 改正(法律 第44號 및 第45號)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 “適格年金(qualified pension)制度”이다. 이 적격연금제도는 신탁회사 및 생명보험회사와의 退職年金契約에 의거한 社外積立의 연금제도로서, 그 계약 내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에 규정된 적격요건의 전부를 만족하고 國稅廳長의 承認을 받음으로써 사업주의 年金賦金이 捐金에 산입됨과 동시에 積立金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도 낮은 세율의 우대조치를 받게 되어 있다. 이 稅法改正으로 기업연금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널리 보급되었다.

### 3. 厚生年金基金制度의 創設

한편 당시 敗戰으로 파멸상태에 있던 厚生年金保險이 약간씩 年金額을 인상할 조짐이 발생하였다. 年金額의 引上은 필연적으로 사업주부담의 保險料引上来 요구하는데, 이 무렵에는 퇴직금의 수준도 대폭 확충되어 企業에 상당한 財政的 負擔이 예상되었

29) 19세기말부터 기업이 임의로 시행하고 있던 다양한 형태의 기업연금에 대하여 1942년에 내국세 입법전(Internal Revenue Code)를 개정하여 세법상의 適格要件을 갖춘 기업연금에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金仁在, 전계서, p.12 참조.

다. 이에 따라 기업측으로부터, “퇴직금의 평창은 공적연금인 厚生年金이 貧弱하기 때문이며 退職金이 그 負擔을 떠맡았다. 후생연금의 수준이 높으면 퇴직금은 그 정도에서 기업의 무거운 부담으로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후생연금을 인상하고 그에 대응하여 퇴직금을 삭감하든가 또는 이에 대체되는 다른 조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는 주장이 나타났다.<sup>30)</sup>

현실에서는 노사관계의 성격상 후생연금이 인상되었다고 하여 기존의 퇴직금을 삭감하는 것은 곤란하였다. 이 때에 英國에서, “公的年金의 所得比例部分은 민간기업에 그를 대신하는 기업연금이 있을 때에는 適用除外(contract-out)가 인정된다. 즉, 소득비례연금은 기업연금으로 代行할 수 있다”는 제도가 도입되었다.<sup>31)</sup>

결국 영국의 예를 참고로 하여 1965년의 厚生年金保險法의 改正(法律 第104號)에 의하여 1966년 11월부터 厚生年金基金制度가 創設되었다. 이 후생연금기금은 후생연금보험의 노령연금 중 보수비례부분을 대행하는 제도로서 退職金(企業年金)과 厚生年金을 그 機能과 費用負擔의 면에서 「調整」하는 것이 일차적 目的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調整年金」이라고도 불리웠다.

기업측에서는 먼저 기존의 退職金을 企業年金化하고, 이 企業年金에서 厚生年金의 比例部分을 代行함으로써 厚生年金과 退職金의 調整을 도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업측이 의도한 調整의 機能 내지 效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노동조합측의 강한 저항으로 1965년에 厚生年金의 紿與引上이 선행되고 厚生年金基金의 실시가 1966년까지 보류되었으며, 둘째, 企業年金이 아직 미숙하여 公的年金을 대신하는데 미흡하였고, 셋째, 근본적인 문제로 일본에서는 서구와 달리 公的年金과 企業年金 내지 退職金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양자를 하나로 調整·合致한다고 하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다. 서구에서는 公的年金과 企業年金 모두

30) 村上清·五島淺男, 전계서, p.29.

31) 英國의 企業年金制度의 기본적인 形態인 職域年金制度(Occupational Pension Scheme)는 17세기경부터 시작하여 공적연금인 1948년의 國民年金制度(National Pension Scheme)의 영향을 받아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國民年金은 定額年金과 所得比例年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59년부터 기업의 종업원에게는 국민연금의 소득비례연금과 직역연금제도의 선택이 가능하였다. 직역연금제도를 선택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중 소득비례연금으로부터 適用除外(contract-out)되기 때문에 이를 「適用除外制度」라 한다. 英國의 企業年金制度이 發展에 관하여는 伊藤宗武·藤野信雄·吉牟田勲, 전계서, pp.36~39 참조.

운영주체가 정부이거나 기업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자신들의 객출이 자신들의 연금이 되어 반환된다는 동일한 구조로 생각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日本에서는 公的年金은 국가의 사회복지, 退職金은 회사로부터의 後拂賃金으로서, 양자는 異質的인 것이라는 의식이 강하였기 때문이다.<sup>32)</sup>

결과적으로, 후생연금기금제도는 「調整」보다는 후생연금을 「代行」하는 代行年金으로 되었다. 公的保障을 민간의 운영으로 대행하는 예는 健康保險(의료보험)의 健康保險組合(의료보험조합)이 있었으며, 후생연금기금은 예를 들어 설명되었다.

그 이후, 厚生年金基金은 代行給與 외에 독자적인 연금을 附加·加算하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이 경우에 代行給與의 실체는 公的年金이지만 加算給與의 실체는 企業年金이었다. 이 加算給與의 실시에 따라 기존의 退職金의 일부 내지 전부를 年金으로 부가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며, 退職金과는 별도의 紙與로서 加算年金을 설계한 예도 있었다. 이 무렵부터 適格年金과 厚生年金基金에 의하여 기존의 퇴직일시금을 퇴직연금화하는 경향이 강하게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는 그 사이에 기업이 퇴직금과 별도의 연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게 되고, 퇴직금의 지급준비자금의 적립에 연금제도를 이용하려는 생각이 확대되어 왔기 때문이다.

#### 4. 企業年金에 대한 勞動組合의 態度

제2차대전 후 勞動組合의 요구에 의하여 확립된 退職金制度는 각종 제도적 장치에 의하여 많은 企業에 널리 보급되고, 퇴직금액도 상당히 인상되었다. 한편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기업에게는 경영상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에 대한 代案으로 企業은 企業年金을 채용하기 시작하였다.<sup>33)</sup> 이에 대하여 당시의 勞動組合은 企業年金制度의 導入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反對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주된 理由는, ①勤勞者들의 노후생활설계상 퇴직일시금에 대한 현실적 요구가 강하다는 점, ②기업연금제도는 장기 근속한 정년퇴직자에 비하여 자기사정 및 결혼퇴직등에 의한 短期勤續者에게 현저히不利하다는 점, ③낮은 年金額, 窪은 支給期間 및 物價變動에 대한 보호장치미비 등 企業年金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점 및 ④노후보장의 정책은 社會保障의 充實에 의하여

32) 村上清·五島淺男, 전개서, p.30 참조.

33) 第一生命保險會社 編, 전개서, 1982, pp.17~18.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는 점 등이 있었다.<sup>34)</sup>

특히 厚生年金基金의 도입시 후생연금과 기업연금의 調整에 관하여 사업주측과 피보험자(근로자)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事業主側은 후생연금보험의 대폭적인 급여개선을 전제로 하여, 퇴직일시금 내지 기업연금과의 調整을 요구한데 대하여, 被保險者側은 기득권으로서의 퇴직일시금이 조정조치에 의하여 삭감되게 될 우려가 있으며, 勞務管理로서 실시되고 있는 私的인 기업연금과 公的인 후생연금보험을 조정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보장의 후퇴라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5년 후생연금보험법의 개정에 의하여 후생연금기금제도가 창설되었지만, 노동조합의 반대로 그 시행이 1년간 지체되었다.

그러나 1973년 이후 勞動組合측은 그 태도를 바꾸었다. 이는 ①1973년 후생연금보험법의 개정으로 물가연동제와 평균표준보수의 재평가조치가 도입되고, 후생연금의 급여가 대폭 인상되었으며, ②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퇴직일시금의 기능이 변화하였으며, ③평균수명의 신장에 따라 노후생활비에 대한 연금의존이 높아졌고, ④대기업에서 기업연금을 채용하는 비율이 높아져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후생연금기금 도입시에 우려되었던 기금에 의한 퇴직금의 흡수, 후생연금의 저액고정화 등의 불안이 제거되었으며, 나아가 퇴직일시금의 용도에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결음 더 나아가 勞動組合側은 기업연금을 공적연금의 보완으로서 위치지워 그改善構想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에 이르렀다.<sup>35)</sup> 먼저 (舊)日本勞動組合總評議會(總評)은 1980년에 『厚生年金制度의 改革에 관한 제1차 報告』를 제출하여 기업연금을 전향적으로 평가하고, 그 이듬해에는 企業年金에 관한 구체적인 方針을 내렸다. 즉, ①먼저 老後生活保障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公的年金이 주체이며, 企業年金은 그 补足給與로서 위치지워지고, ②老後の 所得保障은 현역시대의 年收入의 60~70%로 하고 그 중 50%를 공적연금에서 나머지 10~20%를 기업연금에서 확보하고 있을 것, ③후생연금기금의 總合型 설립제도를 활용하여 동일업종 또는 동일산업에서의 협동에 의한「職域年金」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④퇴직일시금을 연금화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금선택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정착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sup>36)</sup> 한편 (舊)全日

34) 石名坂邦昭, おが國企業年金制度の特色と今後の課題, 保險學雜誌 제506호, 1984.9, p.58.

35) 日本勞動協會編, 退職金·年金と勞動組合, 日本勞動協會, 1984, pp.93~115 참조.

36) (舊)日本勞動組合評議會(總評), 厚生年金制度의 改革に關する第2次報告, 1981.2.

本勞動總同盟(同盟)은 1981년에 기업연금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구상을 제시하였다. 즉, 먼저 기업연금의 目的과 體系에 대하여 ①기업연금의 목적은 老後의 所得保障의 일환으로 公的年金制度를 補完하는 것으로 하고, 후생연금기금과 적격퇴직연금은 공적연금의 附加給與를 행하는 것으로 하고, ②기업연금은 물가슬라이드제 내지 통산조치가 가능한 厚生年金基金으로 單一化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③새로운 기업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 가능한 한 후생연금기금의 설립을 지향할 것을 주장하였다. 기업연금의 紿與에 대하여는 30년 가입자의 경우에 근로자의 평균보수의 15% 이상으로 하고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보수의 75% 이상의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 酿出에 대하여는 ①후생연금기금과 적격퇴직연금 모두 勞使의 共同負擔으로 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공동부담을 행하지 않으며, ②사용자의 부담비율은 70% 이상(후생연금기금의 경우에는 80% 이상)으로 하고, ③過去勤務債務의 償却에 관한 각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근로자의 부담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sup>37)</sup>

그 이후 현행 企業年金制度에 대한 改革要求로서 근로자들은 먼저 ①기업연금제도를 모든 고용근로자에게 보급시키고, ②공적연금과 함께 노후생활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급여수준을 확보함과 동시에 受給權의 保全을 위한 通算制度를 확립하며, ③채권확보를 위한 再保險制度의 導入, ④物價連動制의 실시, ⑤제도관리에의 가입대표자의 참가 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sup>38)</sup>

---

37) (舊)全日本勞動總同盟(同盟), 企業年金制度の改善構想, 1981.1.

38) 片岡直, 高齡化社會と企業年金, 日本勞動法學會誌 제70호, 1987, p.7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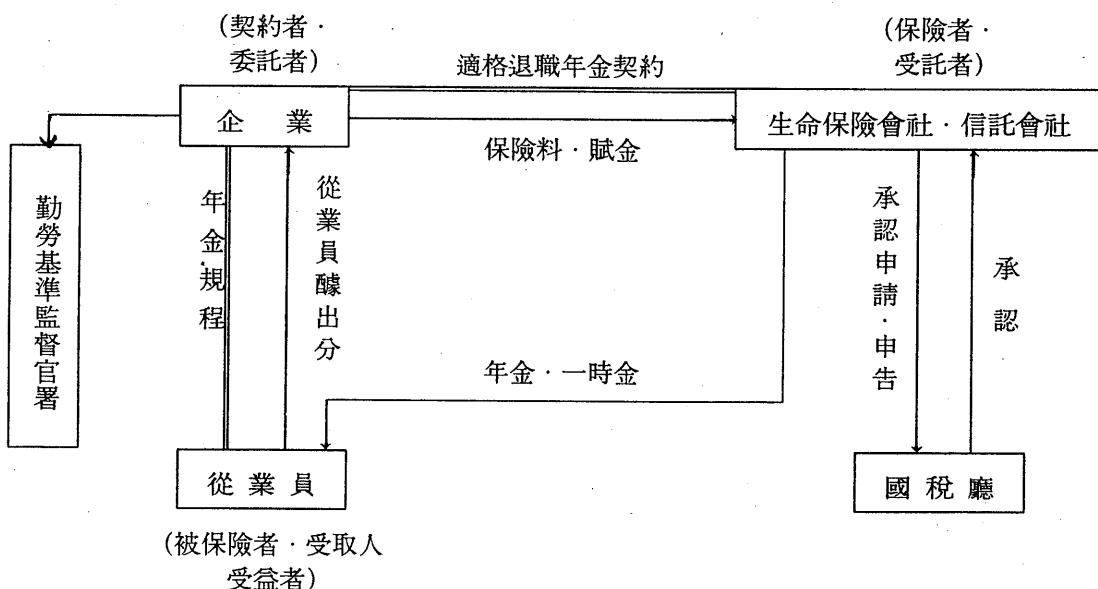
### III. 適格退職年金制度

#### 1. 適格退職年金制度의 構造

適格退職年金制度를 실시함에는 적격퇴직연금계약, 즉 사업주가 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와 신탁계약, 생명보험계약 또는 생명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대하여 國稅廳長의 適格承認을 받아야 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60조), 적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法人稅法 施行令 제159조 각호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급여를 행할 자유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의 회계와 분리하여 外部機關에 종업원의 이익을 위하여 취소불능한 형식으로 소요자금을 積立하여야 한다.

〈그림 2〉

適格退職年金制度의 構造



적격퇴직연금계약은 ①信託契約의 경우에는 사업주를 위탁자, 신탁회사를 수탁자,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고, ②保險契約의 경우에는 사업주를 보험계약자, 생명보험회사를 피보험자, 종업원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여 체결된다. 적격퇴직연금제도의 핵심은 適格退職年金規程인데, 이는 사업주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團體協約 또는 종업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정된 就業規則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적격퇴직연금규정은 勤勞基準監督官署에의 申告를 필요로 하고, 적격퇴직연금계약은 이 적격퇴직연금규정과 일체로 구성되어 國稅廳長의 承認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適格退職年金制度의 구조는 앞의 <그림 2>와 같다.

## 2. 適格退職年金契約의 要件

法人稅法 제84조제3항은 “適格退職年金契約이란 퇴직연금에 관한 신탁, 생명보험 또는 생명공제의 계약으로서 그 계약에 관한 賦金 또는 保險料 및 紿與額이 適正한 年金計理에 의거하여 산정되어 있을 것 기타 政令으로 정하는 要件을 구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政令으로 정하는 要件」은 法人稅法施行令 제159조의 적격퇴직연금계약의 요건으로서 이를 소위 「適格要件」이라고 한다. 따라서 적격퇴직연금제도란 법인 세법시행령 제159조에 규정된 적격요건을 구비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생명보험회사 또는 신탁회사등과의 적격퇴직연금계약에 의하여 社外積立을 행하는 企業의 退職年金制度라고 할 수 있다.

適格要件은 다음의 12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目的 (제1호)

적격퇴직연금계약은 退職年金의 支給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어야 한다. 「퇴직연금의 지급만」이라는 것은 퇴직연금 이외에 慶弔金등의 급여를 부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다만, 연금의 受給資格을 충족하지 않은 短期勤續者에 대하여 一時金을 지급하거나 또는 연금지급에 대신하여 一時金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퇴직일시금을 적격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 (2) 契約의 形態 (제2호)

사업주가 신탁회사(신탁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포함), 생명보험회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와 체결한 신탁계약, 보험계약 또는 생명공제계약으로 사업주가 계약자가 되고 그 被傭者(從業員)를 급여의 수취인으로 하여 賦金 또는 保險料를 불입하고, 계약가입의 피용자가 퇴직한 때에 受託機關이 직접 受取人(被傭者)에게 退職年金 또는 一時金을 支給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의 형태이어야 한다.

## (3) 加入者의 範圍(가입자요건) (제3호)

계약의 가입자중에는 個人企業의 사업주 혹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및 事業主인 法人の 임원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被傭者兼務任員」은 가입이 허용된다. 여기서 被傭者兼務任員이란 임원중 부장, 과장, 지점장, 공장장, 지배인, 주임 등 범인의 기구상 정해져 있는 被傭者로서의 職務上 地位에 從事하는 者를 말한다.(법인세법 제25조제5항) 또 특히 機構로서 직무상 지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임원이 상시 종사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이 피용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피용자겸무임원이 된다.

## (4) 適正한 年金計理要件 (제4호)

賦金額 및 紿與額이 소정의 기준에 합치한 適正한 年金計理에 기초하여 算定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연금제도의 財政的 健全性보다도 오히려 稅法上の 利益造作을 防止하기 위한 규제조치이다. 물론 적격퇴직연금을 승인할 때에는 세법상의 견지에서 뿐만 아니라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검증한다. 소정의 기준에는 부금액 및 연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豫定利率, 豫定死亡率 및 豫定脫退率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豫定利率 : 낮은 예정이율을 이용하여 부금액을 과대로 하지 않도록 연 5%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역으로 부금을 낮게 하기 위하여 매우 높은 예정이율을 이용하여 연금재정의 파탄을 초래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율로서 실세이율보다 낮은 年 5.5%를 사용하도록 지도가 행해지고 있다.

-豫定死亡率,豫定昇級率 또는豫定脫退率 : 이들의 계산기초율은 그 산정시의 현

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계산되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豫定死亡率은 국민생명표를 기준으로 하며, 豫定昇級率은 기업의 보수실태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을 사용하고, 豫定脫退率은 과거 3년간의 탈퇴실적을 기초로 산정된 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예정승급율은 가입자 100인 이상의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고, 예정탈퇴율은 100인 이상의 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sup>39)</sup>

#### (5) 通常賦金의 決定基準 및 酒出方法 (제5호)

賦金(소위 通常賦金)의 형태는 定額方式 또는 報酬比例方式 기타 이에 유사한 방법으로 산출한 액으로 하는 방식 중 어느 하나를 事前에 정하여야 한다. 기업이 임의로 변동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過去勤務債務」의 부금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이 정해져 있다.

定額方式을 채용할 때에도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가입자 전원에게 일정액으로 하거나 근속연수별 정액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報酬比例方式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가입자 전원에게 퇴직시기준보수의 몇 %로 하거나 근속연수별 보수비례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기타 정액방식과 보수비례방식을 조합하여 정액+보수비례방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 (6) 過去勤務債務(P.S.L. : Past Service Liabilities)<sup>40)</sup> 賦金의 決定基準 (제6호)

과거근무채무의 償却方法은 다음의 한 방식으로 事前에 정해두어야 한다.

39) 新井鋼太郎·五島淺男, 전개서, p.79.

40) 「過去勤務債務」란 연금급여를 위한 적립금중 기업연금제도 도입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적립부 족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도입시점에서 25세인 신입 종업원과 50세인 종업원이 있다고 할 때에 정년을 55세로 한다면 25세인 종업원은 30년간 각출료를 납부하게 되고 50세인 종업원은 5년간 각출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50세인 종업원이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기전의 근무기간 즉 과거근무기관도 기업연금에 각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이 각출료를 부담하는 것이 퇴직후 노후생활보장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것이다.

### 가. 定額方式

매년의 상각액이 과거근무채무총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일정액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또 가입자 1인당 일정액으로 하는 방법도 인정되며, 이 경우에 상각액을 결정한 시점에서 연간의 상각액이 100분의 20 이하로 되어 있으면 그 후 가입자의 증가에 따라 한도범위액을 초과하더라도 상관없게 되어 있다.

### 나. 報酬比例方式

보수비례의 제도로서 계약체결 또는 변경시에 산정된 과거근무채무총액을 연간의 상각비율 100분의 20 이하에서 기준급여의 일정률로 정하여 상각하는 방식으로 그 후의 급여상승등에 따른 한도범위의 초과는 상관없다.

### 다. 과거근무채무의 現在額의 일정비율로 하는 소위 減價償却方式

매년 과거근무채무의 현재액을 산출하여 그 100분의 30 이하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상각하는 방식으로 과거근무채무의 현재액이 그 연도의 통상부금액 이하로 된 때에는 그 연도에 전액상각할 수 있다.

### (7) 超過留保額의 取扱 (제7호)

계약체결시부터 5년 이내의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당해기간 동안의 당해 계약에 관한 신탁재산, 보험료적립금액 또는 공제금적립금액을 再評價하여 年金積立金額이 퇴직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보하여야 할 금액을 超過할 때에는 그 초과부분의 금액은 賦金으로 充當하든가 事業主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 (8) 要留保額의 事業主에의 返還禁止 (제8호)

퇴직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보하여야 할 금액에서 과거근무채무의 현재액을 공제한 금액(要留保額)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주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가. 厚生年金基金으로의 移行

적격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하여 厚生年金基金(조정연금)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要留保額증 사업주 부담상당액을 후생연금기금으로 직접 불입하기 위하여 반환을 받은 경우

### 나. 合併등에 의하여 다른 適格退職年金에의 가입

합병, 영업양도, 법인성립 또는 전적에 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하여 다른 적격퇴직연금계약의 부금으로서 직접 불입하기 위하여 반환을 받는 경우

### 다. 受託機關의 인수비율의 변경

계약을 수탁하고 있는 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간에 인수비율의 변경이 있어서 積立金의 移受管이 행해지는 경우(수탁기관 상호간에 직접 적립금의 이수관이 행해지지만, 형식적으로 사업주는 지분감소회사로부터 적립금의 반환을 받아 지분증가회사에 그 지분을 직접 불입하는 형태를 채용한다).

### (9) 解約返還金의 從業員歸屬 (제9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약된 경우 解約返還金은 가입자인 從業員에게 支給하여야 하고 사업주에게는 반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10) 差別的 取扱의 禁止 (제10호)

부금액 또는 급여액 기타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에 대하여 성별, 직종별, 직급별 등에 따라 특정의 從業員에게 不當한 差別的 取扱을 하지 않아야 한다.

### (11) 資產運用의 制限 (제11호)

사업주가 적격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受託機關으로부터 통상

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貸出 기타 이와 유사한利益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또信託契約의 경우에 사업주는 신탁재산(적립금)의 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2) 契約의 繼續性 (제12호)

연금제도는 기업이 존속하는 한 계속할 것을 전제로 한 항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당기간 계속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3. 適格退職年金契約의 承認節次 等

### (1) 承認節次

적격퇴직연금계약으로서 稅法上의 優待措置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의 承認이 필요하다. 적격퇴직연금으로서의 承認節次는 먼저 승인신청서에 적격요건을 구비한契約書의 사본, 團體協約 또는 근로기준감독관서 신고필의 就業規則(退職年金規程), 賦金算定에 관한 計理資料 등을 첨부하여 국세청장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법인 세법시행령 제160조제1항) 다만 실제에서는 承認申請書가 생명보험회사 또는 신탁은행에 의하여 제출되기 때문에 承認의 通知도 생명보험회사·신탁은행측에 대하여 행해진다. 초기에는 1건 단위로 적격요건을 만족한 계약임을 증명하는 계약서류나 계리관계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별적으로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았지만, 1977년 2월 이후는 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현재는 契約申請→契約內容의 審理→承認通知라는 일련의 사무절차를 受託機關이 自主的으로 審查함으로써 특수한 계약 이외에는 신고서의 제출로 완료되도록 되어 있다(定型的 約款에 의한 自動承認制). 이는 적격퇴직연금의 취급에 적극적인 생명보험회사·신탁은행등에 자주적인 심사를 맡겨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계약사항중 賦金額, 紿與額 및 기타 適格要件에 관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節次등은 처음의 적격승인과 동일하다.(동조 제4항)

적격퇴직연금계약을 승인받은 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청장은 그 適格의 承認을 取消할 수 있다. 즉, ①규약, 계약서등의 금여액, 부금액등의 요건에

관한 사항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된 때, ②규약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사실행위가 요건에 위반하고 있을 때 등이다. 이 승인의 취소는 계약단위로 행해지고 국세청장은 취소를 행한 대에는 그 내용을 신탁회사 또는 생명보험회사에 통지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적격퇴직연금의 실시에 필요한 加入人員規模는 生命保險契約의 경우 15인 이상, 信託契約의 경우는 1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 다만 이 가입인원요건은 계약체결시에 충족되어 있으면 되고, 계약성립후에 가입인원이 감소하더라도 保險契約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이 되는 때에 해약하고, 信託契約의 경우에는 80인 미만으로 되는 때에 보험계약으로 인계하거나 해약하게 되어 있다.<sup>41)</sup>

〈표 2〉

適格退職年金의 現況

(1990년 3월 현재)

受託機關別		加入者規模別	
生命保險會社	73,561 (88.9)	100인 미만	66,115 (79.9)
信託會社	7,960 ( 9.6)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2,022 (14.5)
全共農協聯合	1,272 ( 1.5)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3,713 (4.5)
計	82,793件(100%)	1,000인 이상	943 (1.1)

註: 新井鋼太郎·五島淺男, 전개서, pp.85~88에서 발췌. 親子會社가 공동계약한 件數가 7,566건이고 당해계약에 관계되는 子會社가 12,879社이므로, 실제 적격퇴직연금계약을 도입한 企業數는 95,672社이다. 加入者는 총 9,044,703人이고, 年金資產은 11조8,590억엔에 달한다.

## (2) 制度實施의 順序<sup>42)</sup>

企業이 適格退職年金制度를 實施하려고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順序에 따르는 것 이 일반적이다.

41) 新井鋼太郎·五島淺男, 전개서, p.83.

42) 伊藤宗武·藤野信雄·吉牟田勲 전개서, pp.53~58을 요약.

### 가. 制度案 檢討

적격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 먼저 制度의 實質的 內容을 이루는 가입자의 범위 및 가입자격, 급여내용 및 수급자격, 지급기간과 급여액, 각출제의 여부 및 퇴직일시금제도와의 관련 등의 항목에 대하여 勞動組合 및 從業員代表와 충분히 協議하여 할 뿐만 아니라 세법상 適格要件과의 관련성에 대하여도 충분한 주의를 하여 제도화를 피하여야 한다.

### 나. 退職年金規程作成

制度案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退職年金規程으로 성문화하는 작업에 들어가 賦金額 등의 일부를 제외하고 연금제도의 내용을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이 退職年金規程은 보통 團體協約 또는 就業規則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관련있는 다른 諸規程 특히 報酬規程이나 退職金規程등과의 정합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 이 퇴직연금규정은 社內規程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適格退職年金契約의 하부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사전에 受託機關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 賦金의 計算

適格年金의 賦金은 適格要件에 합치하는 適正한 年金計理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보통 受託機關에 위탁하여 행한다. 또 부금은 企業의 상황에 맞게 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制度案, 報酬規程, 退職金規程등과 加入者의 연령, 근속, 보수에 관한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야 한다.

### 라. 受託會社 決定

신탁회사 또는 생명보험회사등의 受託會社와 그 受託比率을 결정하여야 한다. 적립금의 예상규모, 운용수익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마. 承認申請 관계서류의 작성

적격퇴직연금계약의 적격성에 대한 承認申請은 受託會社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

로企業은 수탁회사측에 관련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바. 勞動組合 및 從業員의 同意

앞서의 부금율등 年金規程이 완성되어 이미 제도안에 대한 基本的 合意가 되어있지만, 기타 관련 제규정을 포함하여 團體協約 또는 就業規則으로 정식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 勤勞基準監督官署에의 申告

年金規程은 團體協約으로 되어 있더라도 就業規則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사항이므로, 과반수로 조직된 勞動組合 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從業員代表의 의견을 첨부하여 勤勞基準監督官署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 賦金拂入과 退職年金契約의 締結

자. 國稅廳에의 承認申請

차. 年金委員會의 發足

적격연금이 발족한 후에 회사의 자문에 응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조언하기 위하여, 통상 회사 및 노동조합 또는 종업원대표 同數로 연금위원회를 구성한다.

카. 適格退職年金契約의 調印

보험계약이나 신탁계약 모두 일반적으로 주무관청 및 국세청의 인정을 얻은 標準約款이 작성되어 있다.

타. 國稅廳의 承認

## 4. 適格退職年金의 稅法上 取扱

### (1) 事業主부담의 賦金

事業主가 부담하는 적격퇴직연금계약의 賦金은, 사업주가 法人인 경우에는 부금을 지출한 事業年度의 所得計算上 損金計上이 인정되고(법인세법시행령 제135조제2호), 個人事業主인 경우에는 事業所得의 計算上 必要經費로 인정된다(소득세법시행령 제70조). 적격요건에 위반하여 임원등에 관하여 지불된 부금은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 (2) 從業員부담의 賦金

적격퇴직연금계약의 부금은 사업주가 부담할 것을 전제로 하여 세법상 우대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연금제도는 종업원의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라는 취지에서 공적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從業員에게도 賦金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從業員이 부담한 賦金은 生命保險型 뿐만 아니라 信託型도 生命保險料共濟의 대상이 된다(소득세법 제76조). 다만 다른 생명보험계약의 보험료와 합산한 뒤에 적용된다.

생명보험료공제액은 연간 불입부금을 기준으로 25,000엔까지는 전액, 25,000엔을 초과하여 50,000엔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2분의 1, 50,000엔을 초과하여 10만엔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4분의 1이 공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1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액은 50,000엔이 되게 된다.

### (3) 積立金

適格退職年金制度에서는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가 부금불입시점에서 일시금 · 연금급여의 수급시점으로 연기되는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과세유예기간중의 利子를 징수한다는 취지에 의하여 遲延利子의 과세형태로 적격퇴직연금의 적립금에 대하여 1%의 特別法人稅가 과세된다(법인세법 제87조). 이 법인세는 퇴직연금계약의 受託會社인 생명보험회사 또는 신탁회사에 대하여 課稅되며, 수탁회사 자신에 대한 법

인세와 구별하기 위하여 特別法人稅라 부르고 있다.

특별법인세의 세율은 적립금의 1.0%이며, 이에 특별법인세의 17.3%에 해당하는 法人住民稅가 과세되어(지방세법 제51조), 실제로 퇴직연금적립금에 대한 세법상의 취급은 합산하여 1.173%가 과세된다.

#### (4) 紿 與

적격퇴직연금계약에 기초한 紿與는 생명보험회사 또는 신탁회사로부터 직접 수급권자에게 지급된다. 紿與者와 受給者의 사이에 직접적인 雇傭關係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되는 급여로 간주되어 세법상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먼저 적격퇴직연금계약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年金에 관하여 종전에는 紿與所得으로 과세되고 있었지만, 1988년에 세법이 개정되어 현재에는 雜所得으로 취급되고 있다(소득세법 제35조). 소득세법상 「公的年金等에 관계되는 雜所得」이란 후생연금등의 공적연금, 후생연금기금 또는 기업에서 직접 지급되는 연금을 합산한 연금액으로서 「定額控除+定率控除」의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1990년 현재 정액공제는 100만엔, 정률공제는 정액공제후의 연금수입에 대하여 360만엔까지는 25%, 720만엔까지는 15%, 720만엔 초과는 5%가 공제된다. 다만 정액공제+정률공제가 140만엔 이하인 자는 140만엔이다.

적격퇴직연금계약의 賦金이 全額 事業主負擔의 경우에는 연금액 전액이 잡소득으로 간주되지만, 일부 從業員의 負擔이 있는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액중 종업원이 부담한 부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잡소득으로 과세하게 되어 있다.<sup>43)</sup>

적격퇴직연금계약에 의한 退職一時金은 退職所得으로 간주된다. 퇴직소득은 退職所得控除額을 공제한 殘額의 2분의 1이 과세의 대상이 된다(소득세법 제30조, 제31조). 이 때에도 종업원부담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부담부금 원본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게 되어 있다.

이외에 적격퇴직연금계약에 의하여 遺族年金(一時金) 및 障害年金(一時金)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모두 所得稅는 비과세되나, 유족연금의 수급권 및 유족일시금이 相

43) 종업원부담금은 「나음-개신식」으로 개신한 금액과 함께 세된다. 즉, 공세액=연금×종업원부담금의 일정본총액/연금지급총액 또는 그 예상액.

續稅課稅의 대상이 된다.(상속세법 제3조제1항)

## 5. 다른 法 및 制度와의 關係

### (1) 勤勞基準法과의 關係

1988년 4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就業規則에 退職手當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퇴직수당의 결정, 계산 및 지불방법, 지불시기를 규정하는 것이 의무지워졌다(제89조). 이는 과거 勤勞基準法이 퇴직금의 지급조건 등을 상세하게 정할 것을 명문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툼이 많았기 때문이다. 법개정에 따라 退職金規程에 퇴직금의 지급기일등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기업에서는 就業規則(退職金規程)을 개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89조가 규정하는 “퇴직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이란 근속연수 · 퇴직사유등 퇴직수당액결정의 요소, 퇴직수당의 산정방법, 일시금 · 연금의 구별 등을 말한다. 또 퇴직금을 不支給 또는 減額支給하는 경우의 사유도 “퇴직금의 결정, 계산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적격퇴직연금제도에서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퇴직금의 결정 · 계산 · 지급방법 · 지급시기 등을 退職年金規程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퇴직연금에서는 이미 제도발족 당시부터 위와 같은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되어있다.

### (2) 男女雇傭機會均等法과의 關係

男女雇傭機會均等法(1986년 4월 1일 시행)은 제11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여자인 점을 이유로 남자와 차별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또 여자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에 의한 퇴직이유를 정하거나 혼인,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하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남녀차별정년제, 여자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하는 퇴직제도를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격퇴직연금제도의 適格要件에서는 이미 성별에 의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제10호).

### (3) 退職給與充當金과의 調整

退職給與充當金은 퇴직금의 사내적립에 대한 세법상의 우대조치이며, 適格退職年金은 퇴직연금·일시금의 사외적립에 대한 세법상의 우대조치이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고 있는 기업이 적격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 損金處理가 2종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양자간의 調整이 필요하다.

특히 調整은 퇴직금제도가 적격퇴직연금으로 全面履行 또는 一部履行한 경우로서 정년퇴직자 뿐만 아니라 중도퇴직자에게도 퇴직금 또는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필요하다. 양자간의 조정은 退職給與充當金을 撤廢함으로써 행해진다. 다만, 기업연금의 적립은 제도실시시부터 장래에 향하여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철폐하더라도 과거근무채무의 상각에 대응하여 분할철폐하는 방법이 취해진다. 예전에는 사업연도에 있어서 과거근무채무의 부금상당분을 每期 철폐하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이행연도의 다음 期부터 7년간 균분하여 철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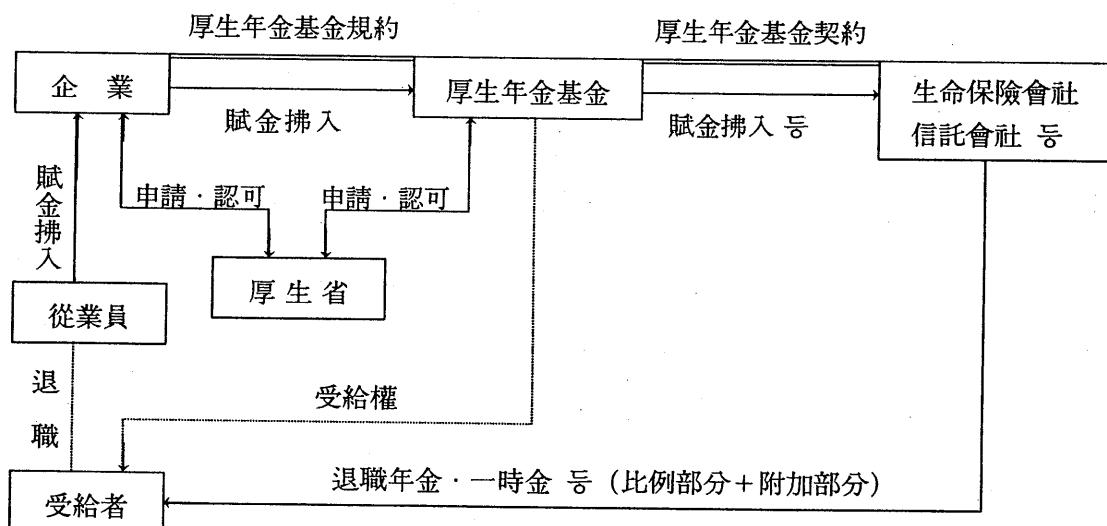
## IV. 厚生年金基金制度

### 1. 厚生年金基金의 構造

厚生年金基金이란 가입원의 老齡에 대하여 紙與를 行함으로써 가입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후생연금보험법 제106조). 즉 후생연금기금은 「厚生年金基金」이라는 特別法人이 국가를 대신하여 후생연금보험의 노령후생연금을 代行하고<sup>44)</sup> 나아가 企業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附加給與를 지급함으로써 종업원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企業年金制度이다.

〈그림 3〉

厚生年金基金의 構造



44) 다만 過去의 標準의 再評價와 물가연동제에 의한 증액부분, 장해후생연금, 유족후생연금 및 기금 설립전의 노령후생연금은 계속 국가에서 지급한다.

이 厚生年金基金은 厚生年金基金規約에 기초하여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업 및 가입자인 종업원으로부터 賦金(保險料)을 징수하고 生命保險會社 또는 信託會社등과 厚生年金基金契約을 체결하여 자산을 관리·운용하고 紿與를 지급하게 한다(앞의 <그림 3> 참조).

## 2. 厚生年金基金의 設立과 運營

### (1) 設立

후생연금기금을 실시하려면 기업은 健康保險組合(우리나라의 醫療保險組合에 해당됨)과 유사한 「厚生年金基金」이라는 特別法人을 설립하여야 한다(제108조, 제109조). 이 후생연금기금은 후생연금의 일부를 대행하는 準公的年金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설립 및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먼저 후생연금기금은 厚生年金保險의 適用事業所의 事業主 및 그 적용사업소에 사용되는 被保險者로 조직된다(법 제107조). 기금의 設立에는 최저 500인의 가입원을 필요로 하고(후생연금기금령 제1조), 후생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금을 설립할 때에는 從業員(被保險者)의 2분의 1이상의 同意 및 종업원 3분의 1이상으로 조직하는 勞動組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同意가 필요하다. 동일한 사업소에 종업원 3분의 1이상으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법 제111조).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후생연금기금이 공적연금으로서의 성격 뿐만 아니라 企業年金으로서 勤勞條件의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금의 설립은 임의이지만 위와 같은 동의요건을 충족하면 설립에 반대하였던 종업원도 모두 가입이 강제된다.

후생연금기금의 設立形態에는 다음과 같이 1기업만이 설립하는 「單獨設立」 이외에 친자회사등의 공동설립하는 「聯合設立」 및 동종동업등의 다수기업이 설립하는 「總合設立」의 3종류가 있다.

### 가. 單獨設立

기업이 단독으로 기금을 설립하는 경우에 상시 고용되는 被保險者數가 500인 이상이어야 한다. 1966년의 발족 당시는 1,000인 이상이었지만, 1988년부터 800인 이상으로, 1989년 4월부터 현재의 500인으로 인원요건이 인하됨으로써 그 보급이 확대되었다.

### 나. 聯合設立

단일 기업의 피보험자수가 500인 미만인 경우에도 주식소유등의 유기적인 연계가 있는 소위 親子會社는 전체 인원규모가 800인 이상이면 공동으로 후생연금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또 母企業이 이미 기금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母企業을 제외한 연합 설립도 인정되지만 그 경우에는 2,000인 이상이 필요하다.

### 다. 總合設立

동종동업형과 지역형(이업종흔합의 총합형)이 있다. 前者는 동종동업의 기업들이 강력한 지도통제력을 갖는 조직모체가 있는 경우에 공동하여 1개의 기금을 설립하는 것이다. 後者는 1989년 4월부터 새로 인정된 것으로 상업단지, 공업단지 및 상점가 등에 소재하는 기업들이 사업협동조합을 조직하여 그 조합이 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강력한 지도통제력을 갖는 경우 또는 기업들간에 건강보험조합이 설립되어 있어서 그 운영상황이 건전하고 양호한 경우에 설립이 인정된다. 총합설립을 위한 인원규모는 피보험자수 3,0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

## (2) 運營

후생연금기금은 規約을 작성하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업주 및 가입자를 대표하는 代議員會, 집행기관으로서 理事長 및 理事 및 자기감독기관으로서 監事를 둔다. 規約에는 ①가입원의 범위, ②표준보수의 산정방법, ③급여액의 산출방법, ④신탁회사 또는 생명보험회사와의 자금운용에 관한 계약, ⑤부금율 및 ⑥부금의 사업주와 종업

원의 부감비율등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제115조). 또한 大議員會 및 理事의 구성에는 사업주대표와 가입원(종업원)대표를 同數로 하여야 한다(제117조, 제119조).

후생연금기금의 加入員은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이지만, 근로자가 설립사업소에 고용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가입원이 된다. 가입원은 사망, 65세에 달한 때, 설립사업소에 고용되지 않게 된 때 또는 고용된 사업소가 설립사업소가 아니게 된 때의 다음 말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제124조).

후생연금기금은 設立할 때 뿐만 아니라 規約의 變更이나 豫算에 대하여도 厚生長官의 認可가 필요하며, 사업의 실시상황, 매년도의 결산에 대하여 후생장관에 報告할 義務가 부과되어 있다.

### (3) 業務

후생연금기금은 가입원 또는 가입원이었던 자에게 年金給與를 支給하고, 가입원 또는 가입원이었던 자가 死亡 또는 脫退한 경우에 一時金을 支給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행하고, 業務의 일부를 신탁회사·생명보험회사·후생연금기금연합회에 委託할 수 있다. 다만 연금계리에 관한 업무는 후생연금기금연합회에 위탁할 수 없다(제130조).

### (4) 制度實施의 順序<sup>45)</sup>

企業이 厚生年金基金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適格退職年金의 경우와 달리 審查가 복잡하다.

#### 가. 事前協議

制度內容등에 관하여 예비신청을 하기 전에 厚生省,企業 및 受託機關의 담당관들이 사전 협의를 한다. 특히 聯合設立 또는 總合設立의 경우에는 사전협의가 빠뜨릴 수 없

---

45) 伊藤宗武·藤野信雄·吉牟田勲, 전개서, pp.66~70을 요약.

는 절차이다.

#### 나.豫備申請

예비심사는 厚生省의 심사담당관이 基金의 設立에 관하여 實質審查를 하는 것이다. 제출서류는 기업 및 기금의 概況表, 規約案, 信託(保險)契約案, 연금계리관계서류 및 연금계리인확인서류, 초년도 예산관계서류 및 업무위탁관계서류, 상업등기부등본, 최근 1년간의 결산관계서류, 법인세납부증명서 기타 취업규칙·단체협약·퇴직급규정 등 참고서류 등이다.

#### 다. 都道府縣의 審查

예비신청을 받은 각 都道府縣 보험과에서 주로 업무경리의 예산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직·인사에 관한 사항 및 사회보험료 납부상황 등에 관하여 면접심사한다.

#### 라. 厚生省의 審查

厚生省은 주로 기업의 사업내용과 업적, 제도내용과 설계의 취지 및 노동조합·종업원의 同意여부를 면접심사한다.

#### 마. 内認可

후생성은 청문의 결과 기금의 존속성 및 제도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한 때에 都道府縣을 경유하여 内認可를 행한다.

#### 바. 本申請

본신청은 設立認可申請書, 規約, 연금계리관계서류 및 연금계리인확인서류, 설립등의 서 및 수탁회사의 계약서안 등을 都道府縣을 경유하여 후생장관에게 한다. 本申請은 예비심사와 달리 形式審查이다.

## 사. 本認可

本認可是 厚生長官의 이름으로 하며, 認可書는 都道府縣을 경유하여 신청자(사업주)에게 교부된다. 厚生年金基金은 認可에 의하여 곧바로 설립된 것으로 되며, 認可日이 設立日이다.

그 후의 절차로서는 ①代議員의 선정 및 호선, ②대의원회에서 理事·監事を 선임, ③이사회에서 理事長 선임, ④基金의 設立公告, ⑤加入員 확정 및 管理事務 개시, ⑥제1회 賦金의 納入告知 및 徵收, ⑦年金信託(保險)契約의 締結 등이 있다.

## 3. 厚生年金基金의 賦金 및 紿與

### (1) 賦 金

후생연금기금은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원의 標準報酬月額을 표준으로 하여 매월 賦金을 징수한다(제138조). 즉, 후생연금기금의 재정방식은 사전적립에 의하게 되어 있고, 부금은 標準報酬에 대한 일정율로 정해져 있다. 여기서 標準報酬란 厚生年金保險의 標準報酬에 해당하는 것으로 上限과 下限이 정해져 있다(제129조, 영 제17조). 또 여기에 일정액을 가산하는 것도 인정되는데, 예를 들어 표준보수의 4%+200엔으로 할 수도 있다.

賦金은 원칙적으로 加入員과 事業主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지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범위내에서 사업주의 부담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사업주가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제139조). 기금의 부금은 기금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 정부가 관장하였을 때 징수하는 賦金과 同額 이상일 것을 요한다. 결국 기금을 설립하더라도 부금은 정부가 관장할 때보다 낮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代行型의 부금중 정부관장을 상회하는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하든가 또는 노사가 일정한 비율로 분담한다. 加算型의 가산부분의 부금은 노사가 공동부담하기도 하지만 퇴직금으로부터의 이행등으로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후생연금기금을 설립한 기업은 대행급여의 賦金에 대응하는 후생연금보험의 保險料의 국가에의 납부가 免除된다. 賦金率(免除保險料率)은 男子 1000분의 32,

女子 1000분의 30으로서, 후생연금의 본래 보험료율은 1991년 1월부터 남자 1000분의 145, 여자 1000분의 141.5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에 불입하는 보험료율은 남자 1000분의 113, 여자 1000분의 111.5가 된다. 이는 기금설립의 경우에 보수비례부분은 국가에서 기금으로 이양되어 정액급여부분의 보험료만 국가에 불입하면 되기 때문이다.

후생연금기금의 賦金에는 최고한도가 없지만 稅法과의 관계에서 標準報酬의 8.64% 상당액에 합치하는 부금을 초과하는 부금은 全額 事業主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 초과하는 부금부분에 대응하는 積立金額에는 1%의 세율에 의한 法人稅가 부과된다.

## (2) 紿 與

후생연금기금은 가입원 또는 가입원이었던 자에게 年金給與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자가 사망 또는 탈퇴한 경우에는 一時金給與를 지급할 수 있다(제130조). 즉 후생연금기금은 후생연금보험의 보수비례부분의 대행을 포함한「年金給與」(법정급여)와 任意附加給與인「一時金給與」를 행한다. 한편 후생연연금기금은 그 업무중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의 지급을 위한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즉 연금자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모두 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또는 지정법인과 信託契約 또는 保險契約을 체결하여야 委託管理시켜야 한다(제130조의2).

연금급여는 당해 기금의 가입원 또는 가입원이었던 자가 적어도 老齡厚生年金의 受給權을 取得한 때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수급권은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소멸사유 이외의 이유로 소멸시켜서는 아니된다(제131조). 연금급여의 額은 加入員의 標準報酬와 加入員期間에 기초하여 算定되고, 노령후생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급여는 加入員인 被保險者期間의 平均標準報酬月額의 1000분의 7.5 상당액에 가입원인 피보험자기간의 月數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동시에 기금은 실제로 지급되는 연금급여의 수준이 위 금액의 2.7배에 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32조). (1988년 개정시 新設)

연금급여는 報酬比例年金일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또 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급여는 정부에서 기금의 가입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와 적어도 동시에 지급되는 終身年金이어야 한다. 따라서 支給開始年齡은 정부지급의 연금개시연령보다 늦어서는 아니되며, 또 가입원기간이 1월이더라도 그자에게 정부지급의 연금이 지급될 때에는

반드시 지급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기금이 지급하는 연금급여의 支給期月은 정부가 지급하는 老齡厚生年金의 예에 의하게 되어 있다(제13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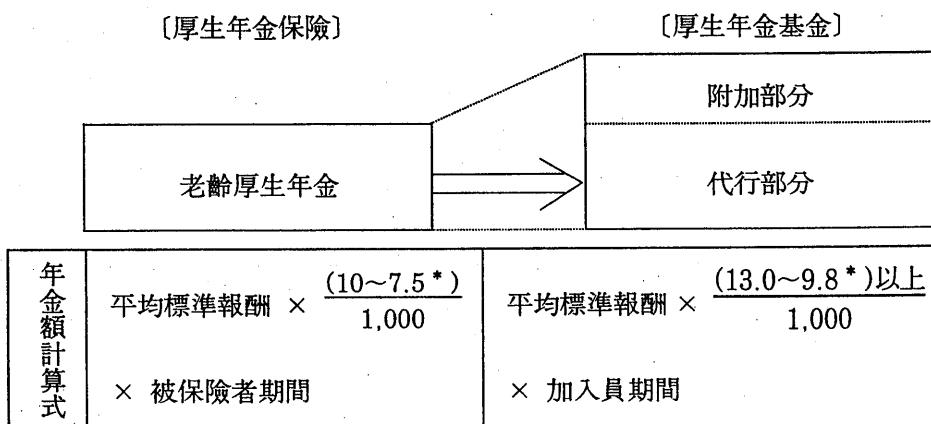
실제 후생연금기금의 급여형태에는 후생연금보험의 代行給與와 기업의 독자적인 加算給與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代行型」, 「加算型」 및 「共濟型」의 3개 유형이 있다.

### 가. 代行型

후생연금의 老齡厚生年金의 紿與와 동일한 방식을 취하며 급여의 乘率이 플러스알파(割増)인 방법이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노령후생연금의 보수비례부분은 「평균보수 월액 × 乘率 × 가입기간」으로 금액이 산정되는데, 기금을 설립한 것이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한 것보다 종업원에게 유리하도록 이 승률에 附加(플러스알파)하는 방식이다. 이 플러스알파승률은 設立認可基準에서 30%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sup>46)</sup>

〈그림 4〉

代行型



\* \*은 生年月日에 의하여 정해지는 比率

46) 그 이유는 후생연금은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자이면 지급정지되기 때문에 평균적인 지급개시연령이 62.5세가 되지만, 후생연금기금은 기업연금이기 때문에 60세 정년에 퇴직하여 다른 기업에 재취직하여 후생연금의 가입자가 되더라도 지급이 정지되지 않으며, 60세에 지급된다. 이것이 지급개시시기에 의한 플러스알파급여로서 14%정도 급여가 두터워진다. 따라서 설립인가기준에 위와 같은 플러스알파 30%가 정해진 것이다. 新井鋼太郎·五島淺男, 전계서, p.98.

이 대행형은 후생연금보험의 대행기능의 강하게 나타나고 제도도 국가의 급여와 비교하기 쉬운 점 및 대행메리트에 의하여 후생연금기금의 제도발족 초기에는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였다.

#### 나. 加算型

후생연금보험의 代行給與(기본부분)과 기업독자의 급여(가산부분)을 각각 별도로 설정하여 양자를 병행하여 지급하는 유형으로서 2층구조이다. 대행부분의 설계는 대행형과 동일하고, 가산부분에 대하여는 報酬比例方式 또는 定額方式 중 어느 것도 채용할 수 있다. 기본부분에 대하여는 0.1/1000 이상의 附加給與가 필요하다. 또 전체 급여(기본부분과 가산부분의 합계)에서는 대행급여의 25% 이상의 부가급여가 필요하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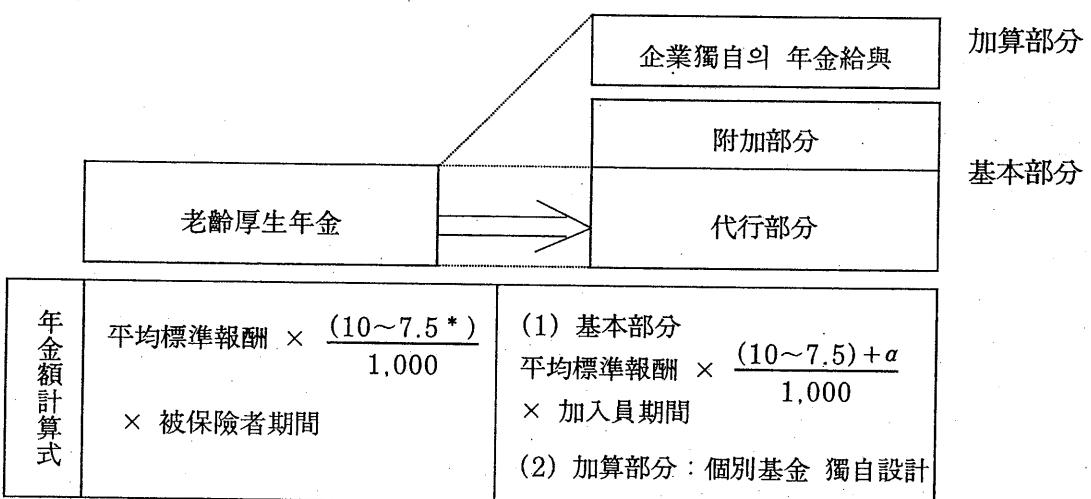
이 加算型에서는 가산부분에 대하여는 退職事由에 따라 급여에 차이를 둘 수도 있으며, 종업원의 희망에 따라 一時金으로 수급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퇴직일시금 또는 적격퇴직연금으로부터 이행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대행형의 대행메리트가 상실한 이후에 대부분의 厚生年金基金은 이 加算型을 채용하고 있다.

〈그림 5〉

#### 加 算 型

[厚生年金保險]

[厚生年金基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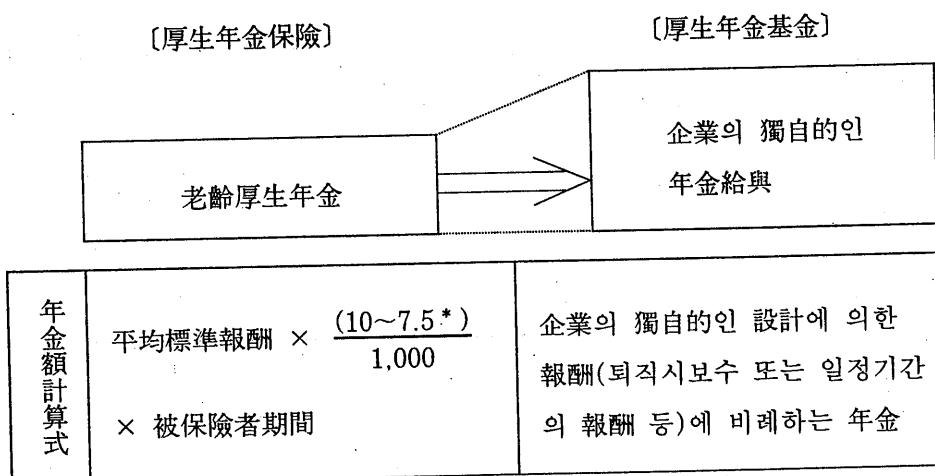
\* a는 0.1 以上

#### 다. 共濟型

기금에서 급여하는 代行部分과 부가부분을 분리시키지 않고, 기업이 독자적으로 전체를 하나의 연금제도로 설계하여 그 중에 대행급여를 포함하는 유형이다. 공무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控除年金과 유사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많으므로 共濟型이라 불려 왔다. 또 대행부분과 부가부분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融合型이라고도 불린다. 이 유형에서는 퇴직전 보수나 퇴직전 수년간의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하여 급여하는 것이 많다. 그러나 대행급여와 부가(가산)급여가 혼연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관리가 어려운 면도 있다. 따라서 현재는 政府關係機關(公金庫, 公團等)을 중심으로 13개 基金에 불과하다.

〈그림 6〉

#### 共濟型



이상의 후생연금기금의 給與形態는 1970년대 중반 이후 代行型에서 加算型으로 이행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 이유는, 후생연금기금의 발족 초기에는 대부분 代行給與의 賦金率이 免除保險料率보다 낮게 산출되어 기업측에서는 厚生年金保險에 맡기는 것보다 기금을 설립하여 독립한 운영을 행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973년에 후생연금보험법이 개정되어 급여수준이 대폭적으로 인상됨과 동시에 물가

슬라이드제가 도입됨으로써, 基金이 代行하는 部分에 대하여도 과거보수의 재평가에 의한 재평가와 물가슬라이드에 의한 増額給與가 필요하게 되었다. 기금이 대행부분에 대하여 그러한 增額分을 급여하기에는 財源이 不足하였으며, 과거보수의 재평가 및 물가슬라이드에 의한 연금증액분은 정부관장의 후생연금보험에서 지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결과 기금의 代行給與는 해마다 비중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加算部分의 중요성이 재고되게 되었다. 厚生省도 1974년과 1975년에 설립인가기준을 완화하여 대행형으로부터 가산형으로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특히 1979년부터는 부분적인 有期年金의 도입을 인정하고, 신규설립의 기금은 加算型만 인가하였다.<sup>47)</sup>

厚生年金基金의 設立形態別, 紿與形態別의 現況은 다음과 같다.

〈표 3〉 厚生年金基金의 現況 (1990년 3월말 현재)

設立形態別		給與形態別			
設立形態	件數(基金數)	比率(%)	給與形態	件數(基金數)	比率(%)
단독형	474	35.0	대행형	332	24.5
연합형	480	35.4	가산형	1,009	74.5
총합형	400	29.6	공제형	13	1.0
합 계	1,354	100.0	합 계	1,354	100.0

註: 新井鋼太郎·五島淺男, 전개서, p.102에서 발췌.

#### 4. 厚生年金基金聯合會

厚生年金基金聯合會는 후생연금기금에 短期間 가입하여 脫退한 자의 연금을 통산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설립한 전국단위의 연합체로서의 특별법인이다.

厚生年金基金은 厚生年金保險의 노령후생연금(보수비례부분)을 代行하기 때문에

47) 新井鋼太郎·五島淺男, 전개서, pp.98.

基金에 加入하고 있던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中途脫退者에게도 기금의 가입원이었던 기간에 대응하는 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年金支給開始年齡에 도달하기 까지의 장기간 中途脫退者의 事務管理를 개별기금에서 운영하는 것은 매우 번잡하다. 이러한 사무관리의 번잡을 해소하고 단기가입에 의한 少額給與를 가입자단위로 모아 지급하기 위하여 短期中途脫退者의 年金은 厚生年金基金聯合會에 移管하여 연합회로부터 기금규약에 의거한 연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또 중도탈퇴자로서 연금급여를 이전할 수 있는 자는 가입원기간 15년 미만으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각 기금의 규약에 정해져 있으며, 가입 10년 미만을 중도탈퇴자로 하는 예가 많다.

후생연금기금연합회는 전체 厚生年金基金의 少額年金을 通算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다. 동시에 후생연금기금의 운영상의 제문제부터 제도의 구조의 기본적인 문제까지 조사·연구·상담·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1989년 4월부터는 加算部分의 통산도 행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단기가입의 중도탈퇴자에 대한 대행급여의 통산만이 가능하여 加算部分의 급여는 一時金으로 지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퇴직금을 노후보장의 자금으로 하는 기능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일부의 직종에서는 노동력의 이동이 매우 빈번하였기 때문에 가산부분의 소액급여도 연합회에 이관하여 통산하고 60세부터 연금으로서 수급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또 支給保證制度와 共同事務處理事業이 전술한 통산제도와 동시에 연합회의 사업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이 중 支給保證制度란 기업의 도산등으로 기금이 해산한 때에 기금독자의 가산부분의 급여에 대하여 예를 들어 적립금이 부족하더라도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다. 당분간 지급보증은 대행급여의 3할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다. 각 기금은 본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소정의 삭출금을 연합회에 삭출하게 되어 있다. 한편 共同事務處理事業은 기금의 설립인가기준의 완화에 의하여 단독설립의 인원규모가 대폭 인하되게 되었기 때문에 800인 미만의 小規模基金은 그 관리사무적인 업무를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무비부담의 경감을 도모하는 점에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기금의 보급을 촉진하도록 한다는 목적도 있다.

## 5. 厚生年金基金의 稅法上 取扱

후생연금기금에 대한 세법상의 취급은 適格退職年金과 거의同一하지만 약간의 점에서 차이가 있다.

### (1) 事業主負擔의 賦金

후생연금기금의 부금은 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강제적으로 징수되기 때문에, 기금규약에 기초하여 事業主가 부담한 賦金은 가산부분에 관한 비용을 포함하여 全額을 損金에 算入된다. 또 부금의 손금상한범위의 규제도 없기 때문에 정년퇴직금을 목표로 한 제도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 (2) 從業員負擔의 賦金

從業員이 부담한 부금은 적격퇴직연금에서는 生命保險料控除의 대상이 되지만 厚生年金基金에서는 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社會保險料控除가 인정된다. 따라서 全額所得控除의 對象이 된다.

### (3) 積立金

후생연금기금의 積立金에 대하여는 代行給與에 상당하는 金額의 2.7倍를 超過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만이 特別法人稅의 課稅對象이 된다. 이 때 세율은 적격퇴직연금과 마찬가치로 1%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금이 非課稅의 취급을 받고 있다.

이 점이 積立金 全額을 대상으로 1%가 과세되는 適格退職年金과 세제면에서의 큰 차이점이다. 積立金에 대하여 특별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과세되는가는 적립금이 100억엔이면 특별법인세는 1억엔이 되기 때문에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또 運用利率 1%의 차이에서 紿與 또는 賦金에 미치는 영향은 20%라는 큰 것이 된다. 適格退職年金에서 厚生年金基金으로 이행하는 메리트는 여기에 있다.

### (4) 紿與

적격퇴직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후생연금기금에서 급여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雜所得, 일시금에 대하여는 退職所得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또 從業員負擔의 賦金原本에 대하여는 적격퇴직연금의 경우는 소득세과세필의 각

출금으로 과세대상에서 공제되지만, 厚生年金基金의 경우에는 課稅對象이 된다. 이는 후생연금기금의 경우에는 酿出時點에서 社會保險料控除에 의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 6. 다른 制度와의 關係

### (1) 退職給與充當金과의 調整

적격퇴직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厚生年金基金의 賦金은 전액 손금산입이 인정되기 때문에 退職給與充當金의 산입액과 2중손금으로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조정이 필요한 것은 ①同一從業員에 대한 퇴직급여가 退職給與充當金과 厚生年金基金制度의 양쪽에서 준비되고 있으며, ②退職金支給規程중에 후생연금기금(가산부분)에 기초한 급여를 포함하여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이다.

이 때 調整은 退職給與充當金에 대하여 退職金의 要支給額 및 累積限度額을 기준으로 행해진다. 퇴직금규정에 후생연금기금에 기초한 급여를 퇴직금의 일부로 충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퇴직급여충당금의 이월한도액의 기준이 되는 퇴직금의 요지급액은 후생연금기금에 기초한 급여액을 감액하여 기업에서 직접 지급하는 부분으로 된다. 또 퇴직금의 요지급액의 감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도 감소시키므로, 이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益金에 산입하여야 한다.

厚生年金基金의 실시와 동시에 기존의 퇴직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年金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調整이 필요하다.

### (2) 適格退職年金과의 比較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厚生年金基金은 후생연금의 일부를 대항하는 公的年金으로서의 機能을 가지고 있는 점이 순수하게 私的年金인 適格退職年金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다. 이 점을 대전제로 몇 개의 점에서 양자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이 비교는, 기업연금을 도입함에 있어서 적격퇴직연금으로 할 것인가 후생연금기금으로 할 것인가 혹은 양자를 2중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 가. 管理·運營 事務

厚生年金基金의 경우에는 기금(특별법인)을 설립하고 거기에 전념할 직원을 배치하여 후생연금의 일부를 대행하게 된다. 또 각종 法的規制가 있으며, 후생성의 감독에서 복잡한 管理事務를 행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適格退職年金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사적연금제도이기 때문에 관리사무도 간단하여 社內의 인사·노무 또는 후생부문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 나. 稅法上의 取扱

각각의 稅法上 取扱의 항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세제면에서는 적격퇴직연금보다 厚生年金基金의 경우가 유리하다. 후생연금기금은 공적연금에 준한 취급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 다. 資產運用의 비교

厚生年金基金의 경우, 대행급여 상당분에 관한 적립금에 대하여는 기금설립후의 경과연수에 따라 積立金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을 정부의 投融資計劃에 협력하여야 한다.(국채 또는 정부보증채권의 구입) 이 제약 이외에는 適格退職年金과 마찬가지로 연금자산의 50%는 원본보증성있는 대출 또는 채권등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주식 및 사채는 30% 이하, 또 부동산투자는 20%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또 1990년도부터 후생연금기금의 資產運用方法이 확대되어 운용기관으로서 종래의 신탁회사·생명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투자자문회사가 추가되었다. 이와 동시에 기금의 자산운용에 자주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유리한 운용이 기대될 수 있게 되었다.

### 라. 制度의 設計

厚生年金基金은 準公的年金인 성격상 제도설계면에서도 적격퇴직연금에 비하여 제약이 크다. 연금의 種類, 加入資格, 受給資格의 설정에 대하여 탄력성이 결핍되어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종래 특히 가산부분도 종신연금으로 할 것을 요구하여 퇴직금으

로부터의 이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그 결과 기금을 이미 설립하고 있는 기업이 퇴직금의 연금화를 도모하는 경우에 종래는 새로이 適格退職年金을 도입하여 양제도의 병용으로 대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79년에 부분적인「有期年金」의 도입이 인정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의 연금화가 훨씬 용이하게 되었다.

#### 마. 過去勤務債務의 償却

후생연금기금의 加算部分의 재정방식에서는 일반적으로 적격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加入年齡方式」이 採用되어 있다. 그 경우에 양자의 「過去勤務債務」의 償却方法에 차이가 있다. 과거근무채무의 상각기간에 대하여 厚生年金基金에서는 7年 이상 20년 이내라는 제약이 있다. 매년의 償却額에 대하여는 탄력성이 인정되어 있다. 適格退職年金의 경우는 매년의 상각비율을 정하여 상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상각기간을 장기간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 변경은 再計算(5년 이내의 일정기간) 또는 증액 개정의 시기로 한정되어 있다.

〈표 4〉

厚生年金基金制度와 適格退職年金制度의 比較

	適格退職年金制度	厚生年金基金制度
創設 및 根據	1962년 4월 1일 法人稅法	1966년 10월 1일 厚生年金保險
制度의 概要	稅法上 규정된 適格要件을 具備한 退職年金制度	厚生年金保險의 老齡厚生年金의 一部(보수재평가 및 물가연동제부 분을 제외한 부분, 代行部分)의 給與와 이를 상회하는 基金의 獨 자적인 追加部分을 합한 年金給與 를 행하는 制度
監督官廳	國稅廳	厚生性 (창구는 都道府縣廳)
實施主體	事業主, 기업은 신탁회사·생명보험회사 또는 全共聯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부분의 사무는 신탁회사·또는 생명보험회사 또는 전공련에서 행한다.	후생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厚生年金基金. 기금의 사무로서 賦金의 결정·징수, 기록의 관리, 給與의 재정·지급 등의 사무를 행한다.

加入人員規模	生命保險契約은 15인 이상, 信託契約은 100인 이상	500인 이상
積立方式	社外積立	社外積立
受託機關	信託會社, 生命保險會社 또는 全國共濟農業共同組合聯合會(全共聯)	信託會社 또는 生命保險會社 및 投資諮詢業者(業務의 일부를 指定法人 또는 厚生年金基金聯合會 에도 委託할 수 있음)
契約方法	適格退職年金契約	厚生年金基金契約, 投資一任契約
加入資格	企業 또는 團體의 被傭者 (사업 주인 개인, 이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법인의 임원 등은 가입할 수 없다)	후생연금기금을 설립한 사업소에 사용되는 厚生年金保險 被保險者
受給權賦與	통상 退職年齡 이상으로 退職時	加入 20年 이상
通算制度	合併이나 轉職의 경우 통산가능	脫退一時金 또는 해산시 分배받 은
支拂保證事業	없음	代行部分의 1.3배까지 支拂保證
稅法上取扱給與	企業의 賦	全額 捐金 산입
	本人의 賦	生命保險料控除 대상
	年金積立金	종업원부담 부금분을 공제한 부 분에 대하여 1%의 法人稅 課稅. 500인 미만으로 후생연금기금과 동일한 제도에 대하여는 후생연 금기금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 본인부담분을 공제한 액: 雜所 得 (公的年金等控除 적용) -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所得稅非 課稅, 相續稅 課稅 - 퇴직일시금: 급여액에서 종업 원부금상당분을 공제한 액이 퇴職所得 - 급여의 전액: 雜所得 (公的年 金等控除 적용) - 사망일시금: 所得稅, 相續稅는 非課稅 - 선택일시금: 退職所得



## V. 日本의 企業年金制度의 評價

### 1. 企業과 從業員 입장에서의 評價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의 企業年金은 일부 종업원의 社內福祉制度로 출발하여 退職一時金制度의 合理化方案 내지 厚生年金保險의 補完策으로 創設·施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企業年金制度가 企業과 從業員 입장에서 어떤 점이 유리하고 불리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48)</sup>

기업연금의 이러한 有不利에 대한 기업과 종업원의 판단은 企業年金制度 자체보다는 종전의 退職一時金制度를 企業年金制度로 이행할 경우에 가지는 상대적인 것이다.

#### (1) 企業側에 유리한 점

##### 가. 資金負擔에 대한 效果的 對應

전술한 바와 같이 대다수의 기업이 채용하고 있는 退職金制度는 退職時의 報酬에 근속기간별 支給率을 곱하여 퇴직일시금의 支給額을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방식에서는 항상화된 임금상승은 퇴직금지급액을 자동적으로 증가시키고, 퇴직자의 발생상황에 따라 그 지급액이 크게 변동한다. 또한 현행 退職給與充當金制度로는 지급 재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없기 때문에 다액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企業의 資金調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에 대하여 適格退職年金 및 厚生年金基金의 기업연금에서는 평균적으로 賦金을 事前積立함으로써 연금의 지급자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동시에 자금부담 및 부담비용의 平準化를 꾀할 수 있다. 또 기업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면 「賃金支給의 確保等에 관한 法律」에 의거한 退職金의 保全措置를 하지 않아도 된다.

---

48) 伊藤宗武·藤野信雄·吉牟田勲, 전계서, pp.27~31.

#### 나. 稅法上의 優待措置

社外積立의 企業年金은 社內留保의 複직금제도에 비하여 여러 점에서 稅法上 優待를 받으며, 결과적으로 企業會計도 건전해진다. 즉, 社內留保의 複직금제도에 의거한 退職給與充當金에서는 當期末 退職金의 要支給額의 40% 限度 및 자기사정에 의한 複직 경우의 要支給額에 대해서만 法人稅의 소득금액 계산상 損金算入이 인정되지만, 企業年金制度에서는 급여에 필요한 賦金全額에 대하여 損金算入이 인정되고, 停年 및 퇴사사정에 의한 複직의 지급액에 대해서도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退職給與充當金의 運用收益에 대하여는 法人稅등의 과세대상이 되지만, 企業年金制度의 적립금에 대하여는 연 1%의 特別法人稅가 부과될 뿐이다. 특히 厚生年金基金에서는 이 특별법인세도 代行部分의 2.7배까지 非課稅되어 한층 우대되고 있다.

#### 다. 雇傭安定과 人才確保

기업연금을 실시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약속하는 것은 종업원에 대하여 노후의 불안을 해소하여 雇傭安定에 이바지하는 이외에 종업원채용에 있어서도 인재확보에 도움될 것이 기대된다.

#### 라. 資金의 民間保有

厚生年金基金의 경우에 厚生年金保險料로서 국가에 납부되어야 될 자금의 일부(보수비례부분 상당액)가 會社側에 留保된다. 이에 따라 소위 代行메리트(면제보험료와 대행소요부금의 차액) 또는 運用差益(예정율을 초과하는 초과운용수익)을 향수할 수 있다. 다만 이 점은 유동적인 면도 있다.

### (2) 企業側에 불리한 점

#### 가. 資金의 社外流出

社內留保의 複직금제도에 의거한 退職給與充當金에서는 複직금준비자금을 사외에

유출하지 않고도 법인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이 인정되어 이 資金을 企業內에서 運用할 수 있지만, 企業年金制度에서는 퇴직금준비자금을 社外에 각출하게 되어 이 자금을 기업내에서 영업운용에 운용할 수 없다.

#### 나. 過去勤務債務의 償却

퇴직일시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移行하면 過去勤務債務의 償却을 위하여 퇴직금으로 지출하는 이상의 자금을 상당기간 企業外로 酿出하여야 한다.

#### (3) 從業員側에 유리한 점

##### 가. 受給權의 確保

社內留保의 退職金制度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기말 자기사정에 의한 退職金의 要支給額의 40% 밖에 退職給與充當金으로 충당할 수 없고, 또 퇴직급여총 당금에 의하여 보유된 자금은 실질적으로는 營業資產으로 有用되기 때문에 회사가 倒産등 만일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從業員의 退職金受給權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된다. 이에 대하여 기업연금제도의 경우에는 信託會社등 기업외의 금융기관에 事前에 연금계리에 기초하여 適正金額이 積立되고 管理·運用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종업원의 受給權은 대체로 確保된다. 또 企業年金은 정부(후생성, 대장성)의 監督을 받을 뿐만 아니라, 특히 후생연금기금의 대행급여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에 의하여 紿與가 保障됨으로써 종업원의 수급권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 나. 老後生活의 安定

기업연금제도의 경우 일정한 시기에 일정금액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생활의 보장이 용이하다. 기업연금제도가 終身年金(후생연금기금은 원칙적으로 종신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더욱 안정된 노후생활이 보장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 지급도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 다. 稅法上의 優待措置

연금급여에 대하여는 雜所得으로 과세되지만, 퇴직후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기 때문에 공적연금등공제 또는 각종 소득공제등으로 실제에는 非課稅가 되든가 매우 낮게 과세된다. 더우기 후생연금기금에서 從業員賦金은 대행급여과 가산부분 모두 社會保險料控除가 인정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점 적격퇴직연금 및 자사연금보다도 유리하다.

#### 라. 制度運營에의 직접참가

厚生年金基金을 실시하는 경우 勞動組合의 동의 및 從業員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하고 또 제도운영을 위한 기관은 기업측과 종업원측 각각 동수의 대표에 의하여 구성된다. 따라서 從業員은 기업과 대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제도운영에 참가할 수 있다.

#### (4) 從業員側에 불리한 점

##### 가. 稅法上의 恩典의 抛棄

퇴직일시금의 경우, 退職所得控除후의 금액의 2분의 1의 금액에 대하여 分離課稅된다. 退職所得控除는 근속연수 20년 이하의 경우 40만엔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근속연수 20년 초과의 경우 20년을 초과한 연수에 대하여 1년에 70만엔을 곱한 금액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勤續年數 30년으로 퇴직일시금이 1,500만엔인 경우에는 全額이 非課稅된다. 이 퇴직소득공제액의 恩典을 완전히 누리는 것은 큰 장점으로 기업연금의 경우 이를 포기하게 된다.

##### 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不安

퇴직일시금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금을 스스로 운용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처 할 수 있다. 그러나 企業年金의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슬라이드제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하에서는 將來의 年金額에 대하여 불안감을 갖게 된다.

#### 다. 年金基金의 不安

기업연금제도에서 未積立된 過去勤務債務가 많은 경우에는 장래의 연금액에 대하여 불안을 갖게 된다. 특히 기업연금의 有期年金에 대하여는 그 現在價가 退職一時金보다 크지 않으면 퇴직일시금을 취득하여 信託會社에 신탁한 경우와 다르지 않게 된다.

### 2. 企業年金制度의 課題와 展望

#### (1) 退職一時金에서 退職年金으로

일본의 企業年金制度는 주로 退職一時金을 재원으로 하여 이것을 외부에 事前積立하여 퇴직일시금의 부담을 평준화하고 퇴직금의 支給保障을 꾀하는 방책으로 보급되어 왔다. 企業들이 기존의 退職一時金을 退職年金化하는 경우에, 그 移行形態로는 ① 기존 퇴직금의 전부를 퇴직연금으로 이행하는 방식, ②기존 퇴직금의一部만 연금으로 이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一部移行의 방식중에는 퇴직금의 全支給額의 일정비율만 연금화하는 방식(橫割移行)과 개별 정년퇴직자에 대응하는 退職金의 일정비율을 연금화하는 방식(縱割移行)이 있었다. 이 외에도 기존의 退職金과 별도의 年金制度를 도입하기도 하였다.<sup>49)</sup>

그러나 退職金이 年金化된 경우에도, 55세 정년제가 일반적이었던 시절에는 종업원측의 일시금수급에 대한 妥當 ·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또 年金보다 一時金受給을 우대하는 稅制에 의하여 일시금수급을 선호하고 연금수급을 선택하는 예는 매우 적었다. 이는 퇴직일시금의 수급권 확보를 위한 事前積立의 수단으로 기업연금제도가 이용되고 있음에 다름아니다. 기업연금제도의 目的이 「年金」支給에 있다고 할 때에 이러한 현상은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이다.

그 후 일본인의 平均壽命이 신장하고 勞動行政의 적극적인 추진<sup>50)</sup>에 의하여 60세

49) 退職金을 年金制度로 移行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村上清 · 五島淺男, 전계서, pp.100~116; 新井鋼太郎 · 五島淺男, 전계서, pp.124~128 및 伊藤宗武 · 藤野信雄 · 吉牟田勲, 전계서, pp.107~113 참조.

50) 1971년도에 제정된 「高年齢者等의 雇傭安定等에 관한 法律」 제4조에서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

정년제가 급속히 일반화되었다.<sup>51)</sup> 60세 정년제의 실현에 따라 勤勞者의 隱退와 厚生年金의 지급개시가 연결됨으로써 企業年金은 공적연금의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즉 기업연금이 종래 퇴직금의 事前積立制度에서 본격적인 老後保障을 위한 年金制度로 轉換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厚生年金의 재정문제로 인하여 지급개시연령이 가까운 장래에 65세로 인상될 경우에는 기업연금을 「連結年金」(退職時부터 公的年金受給開始時까지의 連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 厚生年金基金의 一般化

기업이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별도의 從業員福祉制度로서 企業年金을 도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全部 또는一部를 企業年金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초기에는 退職金을 適格退職年金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앞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요건·법적규제등이 까다롭고 制度運營이 복잡한 후생연금기금보다는 事務運營이 간단한 적격퇴직연금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퇴직금을 일단 適格退職年金으로 年金化한 다음에 다시 厚生年金基金으로 移行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후생연금기금으로 이행하는 경향이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背景으로 먼저 기업연금에 관한 課稅制度와의 관련성을 들 수 있다. 즉, 適格退職年金에서는 積立金에 대한 1%의 特別法人稅가 과세되지만, 厚生年金基金에서는 代行給與 상당액의 2.7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超過部分만이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후생연금기금의 경우가 훨씬 유리하다. 또 후생연금기금에서는 加算部分도 원칙적으로 終身年金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年金受給이 유리하여 노후생활보장의 실효성도 높아지고 厚生年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勞使가 共同釀出制로 할 경우에 從業員의 釀出分 전액이 社會保險料控除를 받으므로 적격퇴직연금의 경우 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sup>52)</sup>

---

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년이 60세를 하회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986년 개정)고 규정함으로써 60세 정년제를 추진하고 있다.

51) 勞動省의 「雇傭管理調査」에 의하면 1990년 현재 정년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5,0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는 90.7%에 달하는 등 전산업의 평균이 63.9%가 되었다. 勞動省, 雇用管理調査, 1990. 1 참조

52) 新井鋼太郎·五島淺男, 전개서, pp.266~269 참조.

## VI. 結語 -- 우리나라 退職金制度改善의 一摸索

일반적으로 企業年金이 公的年金의 보완수단으로서 個人貯蓄과 함께 현대 고령화 사회에서 老後生活保障體系를 이루고 있음은 수차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노후보장 체계도 公的年金制度로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sup>53)</sup>, 制度의 기업연금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여 法定退職金制度가 확립되어 있고<sup>54)</sup>, 금년 6월부터 세제혜택에 의한 個人年金貯蓄制度가 도입됨으로써, 형식적·제도적으로는 국가, 기업 및 개인에 의한 노후보장체계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제도의 실질에 들어 가면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첫째, 공적연금제도 중 國民年金이 공무원연금법등의 적용대상자를 제외한 민간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것도 자영업자 및 농어민을 강제가입이 아닌 任意加入對象者로 함으로써, 실제로는 국민전체의 노후보장체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sup>55)</sup> 둘째, 勤勞基準法

53) 日本의 제도와 用語가 비슷하지만, 基礎年金으로서 일본의 國民年金과 같은 제도는 우리나라에 없고, 적용대상의 면에서 「우리 國民年金法 = 일본의 厚生年金保險法」, 「우리 公務員年金法 · 私立學校教員年金法 · 軍人年金法 = 일본의 각 共濟組合法」의 도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日本과 우리나라의 所得保障 관련법제를 비교하면 본문의 <표 5>와 같다.

54) 우리의 退職金에 대한 稅制도 일본의 退職一時金에 대한 稅制와 유사하다. 즉, 勤勞者의 退職所得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 분리파세되고 있다.(소득세법 제22조, 제70조제2항 참조)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退職者 또는 死亡者的 遺族이 받는 紙與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5조 참조) 또 退職給與充當金은 “당해연도 1년간 계속 근로한 被傭者에게 지급한 總給與額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退職給與充當金累積額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피용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推計額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必要經費(損金)의 산입이 인정되고 있다.(소득세법 제33조 및 범인세법 제13조 참조)

55) 우리 國民年金法은 명칭만 「國民」年金法이지 그 실질은 1985년 제도개혁 이전의 日本의 厚生年金保險法과 같이 被傭者年金法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 國民年金制度의 문제점과 개선등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하여는 金仁在, 國民年金制度의 定着을 위한 法改善方案, 法制研究 제5호, 韓國法制研究院, 1993, pp.249~272 참조.

제28조에 의한 法定退職金制度도, 퇴직금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재정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퇴직금준비금이 社外積立이 強制되지 않음으로써<sup>56)</sup> 근로자의 受給權確保에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은 과거 수차 지적된 바이다.<sup>57)</sup>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노후보장체계의 여러 問題點은 당연히 社會保障制度인 公的年金의 改革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企業年金制度의 도입이나 退職金制度의 개선은 2차적인 방안에 불과하다. 이러한 前提아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退職勤勞者의 새로운 老後保障體系 또는 현행 退職金制度改善의 한 方案으로서 企業年金制度의 도입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企業年金制度의 도입에 대한 先決課題로서, 企業年金이 공적연금의 보완적 지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公的年金制度의 改革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기업측에서 퇴직금지급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주장할 때 노동조합의 반대에 직면한 政府는 공적연금의 國民皆年金化 및 紿與水準의改善을 위한 제도 개혁을 선행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재 國民年金에의 임의가입 내지 적용제의 대상자로 되어있는 農漁民, 自營業者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및 非正規勤勞者들에게도 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소득대체율이 50% 정도가 되도록 紿與水準도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다.<sup>58)</sup> 이와 같이 國民年金制度를 改革하지 않고는 企業年金의 또 하나의 目標인 公的年金과의 調整문제는 그 論議가 시기상조라 할 것이다.

다음, 현행 退職金制度를 개선하는 한 방안으로 企業年金制度로 移行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制度의 設計는 適格年金의 형태 또는 厚生年金基金과 같은 형태등 다양하게 채용할 수 있겠지만, 勤勞者의 勤勞條件으로서 확립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최저기준 및 기존 퇴직금에 대한 기득권이 보장되는 차원에서 企業年金制度의 構造가 복제화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酿出의 문제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법정퇴직금은 後拂賃金으로서 성격을 갖기 때문에, 企業年金화하는 경우에 각출은 사용자가 全額負擔하여야

56) 우리나라 세법에서도 勤勞者의 退職을 지급사유로 하고 근로자를 被保險者와 受益者로 하는 保險(소위 團體退職保險)의 保險料에 대하여 法人の 損金計上을 인정함으로써 社外積立을 유도하는 규정이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참조)

57) 현실에서는 退職金額을 결정하는 退職金算定基礎인 平均賃金에 포함되는 金品의 範圍問題등이 勤勞法上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58)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金仁在, 전개논문 참조.

한다.<sup>59)</sup> 다만 현행 법정수준 또는 현행 퇴직금규정의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근로자의 각출을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둘째, 紿與水準의 문제이다. 현행 법정퇴지금제도는 근로자가 退職할 때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최소한 1월분의 平均賃金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사업장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退職金規程(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이 이상의 급여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退職年金의 급여수준은 적정한 年金計理에 의하여 이를 수준 이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 퇴직금에 대한 既得權의 保障의 문제이다. 기존 퇴직금에 대한 기득권이란 ①退職時 14일 이내에 退職一時金을 受給할 權利, ②團體協約 또는 就業規則에 의하여 확보된 수준의 퇴직금을 수급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금의 지급은 一時金이어야 하고 年金支給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화하려면 먼저 퇴직금의 연금지급도 가능하도록 勤勞基準法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에도 55세 정년이 일반화된 사업장에서는 당분간 一時金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退職金의 一部를 연금화하는 경우에는 一時金으로 남은 부분과 年金化된 부분의 급여의 합계가 기존의 급여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또 團體協約 또는 就業規則에 정해진 근로조건은 法規範的 效力を 갖기 때문에, 기존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퇴직금수준의 變更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통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종업원 과반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企業年金으로 이행할 것인가도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日本의 厚生年金基金의 設立에 종업원 과반수 및 노동조합의 同意를 요구하고, 機關의 구성을 비롯한 企業年金의 運營에 종업원의 제도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점, 단체협약 또는 종업원에게 주지된 취업규칙에 의한 適格退職年金契約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세법상 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게 하고 있는 점이 참고가 될 것이다.

넷째, 당연한 것이지만 기존의 退職金을 기업연금화할 때에는 稅法上 優待措置가 취해져야 함은 물론이다. 현행 稅法에서는 일정한 退職給與充當金의 損金(必要經費)

59) 이 점은 退職金制度가 法定制度인 우리나라와 勞使自治制度인 일본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일본에서는 애초에 근로기준법에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에 의하여 노사자치적으로 형성된 제도이므로 이를 기업연금화할 때에 勞使合意로 기존 제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法定基準은 노사합의로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算入이 인정되고, 退職所得에 대하여 종합소득과 별도 과세되고 있을 뿐이다. 기업연금을 채용할 경우에는, 勞使의 酬出金(賦金 또는 保險料), 積立金 및 退職給與 등에 대하여 현행 퇴직금에 대한 것보다 유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 일본의 적격퇴직연금 또는 후생연금기금의 세법상 취급이 참고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사회의 전개에 따라 退職一時金보다는 退職年金의 수요가 증가하고, 기업이 퇴직일시금제도에서 기인하는 재정적 부담완화를 요구하는 사회환경에 비추어 볼 때, 현행 退職金制度의 改善을 위한 하나의 모색으로 분명 企業年金制度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企業年金制度를 法制化할 때에 그 適格要件으로서 특히 위와 같은 점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5〉 日本과 우리나라의 所得保障關聯法制의 比較

項 目	日 本	우 리 나 라	備 考
公的年金制度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民年金法( 모든 國民) : 基礎年金</li> <li>· 厚生年金保險法(被傭者), 각 共濟組合法(公務員등)</li> <li>· 基礎年金에 추가한 報酬比例年金</li> <li>· 附加制度 : 國民年金基金, 農業者年金基金, 厚生年金基金, 石炭礦業年金基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民年金法 : 18세~59세의 國民</li> <li>- 강제가입 : 5인 이상 사업장에 사용되는 勤勞者</li> <li>- 임의가입 : 강제적용 이외의 자</li> <li>- 적용제외 : 공무원, 교원, 군인 및 비정규 근로자</li> <li>· 公務員年金法, 私立學校教員年金法, 軍人年金法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li> </ul>	현재 農漁民의 國民年金 적용을 위한 입법작업이 추진중임.
退職金制度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任意制度 : 團體協約 · 就業規則</li> <li>· 就業規則의 相對的 必要記載事項 : 勞動基準法 제89조제1항제2호의2</li> <li>- 社內留保, 一時金이 대부분, 일부 社外積立, 年金支給</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法定制度 : 勤勞基準法 제28조 (團體協約 · 就業規則으로 具體化)</li> <li>· 就業規則의 必要的 記載事項:</li> <li>- 社內留保, 一時金 (단 團體退職保險 및 從業員退職信託에 의한 社外積立 유도</li> </ul>	日本 : 「賃金支給等의 確保에 관한 法律」에 의거한 退職手當의 保全措置 요구(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中小企業退職金共濟制度 (中小企業退職金共濟法), 特定退職金共濟制度(所得稅法施行令 제66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법시행령제13조 참조)</li> </ul>	韓國 : 勤基 法 제30조의 2(賃金債權等 의 優先辨濟)
退職금 및 年金 에 관한 稅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退職手當(一時金) : 退職 所得控除</li> <li>- 私的 · 公的 모든 退職 一時金</li> <li>- 所得稅法 제30조, 제31조</li> <li>· 退職年金: 雜所得(公的年金 等控除)</li> <li>- 私的 · 公的 모든 退職年金</li> <li>- 所得稅法 제35조</li> <li>· 個人年金 : 雜所得(필요경 비공제)</li> <li>- 所得稅法 제35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退職給與 : 退職所得控除</li> <li>- 所得稅法 제22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公的年金 : 非課稅</li> <li>- 所得稅法 제5조</li> <li>· 個人年金 : 非課稅</li> <li>- 租稅減免規制法 제80조의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退職給與充當金 : 損金(必 要經費)</li> <li>- 法人稅法 제55조, 令 제 105~109조</li> <li>- 所得稅法 제54조, 令 제 153~157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退職給與充當金 : 損金(必 要經費)</li> <li>- 法人稅法 제13조, 令 제 18조</li> <li>- 所得稅法 제33조, 令 제 65조</li> </ul>	
企業年 金制度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適格退職年金 : 法人稅法</li> <li>· 厚生年金基金 : 厚生年金</li> </ul>	〈관련제도 없음〉	
個人年 金制度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所得稅法 제76조제2항 및 제4항, 令 제211조, 제212조</li> </ul>	租稅減免規制法 제80조의 2, 令 제75조의2	



# 附 錄

I. 法人稅法 및所得稅法 중 關聯規定

II. 厚生年金保險法 중 關聯規定

III. 退職年金規程(例)

IV. 우리나라의 公的年金 · 退職金  
· 個人年金貯蓄 관련 稅法規定



## I. 法人稅法 및 所得稅法中 關聯規定

### 1. 法人稅法<sup>1)</sup>

#### 第2編 內國法人의 納稅義務

##### 第1章 各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

第55條 (退職給與充當金) ①內國法人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退職給與規程을 정하고 있는 자가 그 피용자의 퇴직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에 損金處理에 의하여 退職給與充當金計定에 이월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금액중 당해 사업연도 종료시에 재직하는 피용자 전원이 자기사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견적액 중 당해 사업연도에 증가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을 기초로 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상 損金額에 산입한다.

②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액에 산입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이미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가지는 内國法人은 그 피용자가 퇴직한 경우, 전항의 퇴직급여규정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 또는 동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한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은 각각 취소된 날 또는 취소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소득금액의 계산상 益金額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확정신고서에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 이월된 금액의 損金算入에 관한 명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⑦ (생략)

1) 전문개정 1947년 3월 31일 법률 제28호; 최근개정 1992년 6월 26일 법률 제87호.

## 第2章 退職年金等積立金에 대한 法人稅

### 第1節 課稅標準 및 그 計算

第83條 (退職年金等積立金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 退職年金等積立金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事業年度의 退職年金等積立金額으로 한다.

第84條 (退職年金等積立金額의 計算) ① 退職年金業務等(適格退職年金契約, 厚生年金基金契約, 勤勞者財產形成給與 또는 勤勞者財產形成基金給與契約과 관련한 信託, 生命保險, 生命共濟, 損害保險, 預·貯金의 受信 또는 有價證券의 購入 및 당해 구입한 有價證券의 保管受託 등의 業務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을 행하는 內國法人的 각 事業年度의 退職年金等積立金額은 당해 事業年度開始時의 退職年金等積立金額을 12로 나누고, 이것에 당해 사업연도의 月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전 항에서 규정하는 退職年金等積立金額은 다음 각호 法人的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適格退職年金契約, 厚生年金基金契約, 勤勞者財產形成給與契約 또는 勤勞者財產形成基金給與契約에 관한 信託業務를 행하는 內國法人的 경우에는 다음 금액의 合計額 가. 각 適格退職年金契約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에 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서 당해 계약에 관한 부금액 중 당해 신탁수의자가 부담한 부분의 금액으로서 그 신탁재산에 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나. 각 厚生年金基金契約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에 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서 당해 계약에 관한 후생연금기금 또는 후생연금기금연합회가 후생연금보험법(1954년 법률 제115호) 제132조제3항(연금급여의 기준)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수준의 급여를 행한 경우에 당해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유하여야 할 금액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 각 勤勞者財產形成給與契約 또는 각 勤勞者財產形成基金給與契約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에 관한 신탁재산의 가액으로서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 適格退職年金契約, 厚生年金基金契約, 勤勞者財產形成給與契約 또는 勤勞者財產形成基金給與契約에 관한 生命保險業務를 행하는 內國法人的 경우에는 다음 금액의 합계액 가. 각 適格退職年金契約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에 관한 보험업법 제88조제1항(책임준비금)에서 규정하는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금액(이하 이 호 및 제4호에서는 “책임준비금액”이라 한다) 중 보험료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당해 계약

에 관한 보험료액 중 그 보험금수취인이 부담한 금액으로 그 보험료적립금에 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나. 각 厚生年金基金契約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과 관련한 책임준비금액 중 보험료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당해 계약에 관한 후생연금기금 또는 후생연금기금연합회가 후생연금보험법 제132조제3항에 규정하는 상당한 수준의 급여를 행한 경우에 당해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유하여야 할 금액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 각 勤勞者財產形成給與契約 또는 각 勤勞者財產形成基金給與契約에 대하여는, 이들 계약과 관련한 책임준비금액 중 보험료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3. 適格退職年金契約,勤勞者財產形成給與契約 또는 勤勞者財產形成基金給與契約에 관한 生命共濟業務(당해 생명공제업무과 관련한 공제금지급사유의 발생을 공제사고로 하는 공제업무를 포함한다)를 행하는 農業協同組合聯合會(농업협동조합법(1947년 법률 제132호) 제10조제1항제8호(공제시설)의 업무를 행하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금액의 합계액

가. 각 適格退職年金契約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에 관한 농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 5(공제사업과 관련한 책임준비금)에서 규정하는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금액(이하 이 호에서는 “책임준비금액”이라 한다) 중 공제부금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당해 계약과 관련한 부금액 중 그 공제금수취인이 부담한 부분의 금액으로 그 공제부금적립금과 관련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나. 각 勤勞者財產形成給與契約 또는 각 勤勞者財產形成基金給與契約에 대하여는, 이들 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액 중 공제부금적립금에 상당한 금액으로서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4. 勤勞者財產形成給與契約 또는 勤勞者財產形成基金給與契約에 관한 損害保險業務를 행하는 內國法人的 경우에는, 각 勤勞者財產形成給與契約 또는 각 勤勞者財產形成基金給與契約에 대하여 이들 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액 중 환불적립금에 상당한 금액으로서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5. 厚生年金基金契約 또는 勤勞者財產形成給與契約에 관한 預·貯金의 受信業務를 행하는 內國法人的 경우에는 다음 금액의 합계액

가. 각 厚生年金基金契約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에 관한 예·저금액에서 당해 계약과 후생연금기금 또는 후생연금기금연합회가 후생연금보험법 제132조제3항에 규정하는 상당한 수준의 급여를 행한 경우에 당해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유하여

야 하는 금액으로서 당해 계약에 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나. 각 勤勞者財產形成基金給與契約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에 관한 예·저금액으로서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6. 厚生年金基金契約 또는 勤勞者財產形成基金給與契約에 관한 有價證券의 購入 및 당해 구입한 유가증권의 保管受託의 業務를 행하는 內國法人的 경우에는 다음 금액의 합계액

가. 각 厚生年金基金契約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에 관한 유가증권의 가액에서 당해 계약에 관한 후생연금기금 또는 후생연금기금연합회가 후생연금보험법 제132조제3항에 규정하는 상당한 수준의 급여를 행한 경우에 당해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당해 계약에 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나. 각 勤勞者財產形成基金給與契約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에 관한 유가증권의 가액으로서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③ 전2항에서 규정하는 適格退職年金契約이란 퇴직연금에 관한 신탁, 생명보험 또는 생명공제의 계약으로서 그 계약에 관계되는 부금 또는 보험료 및 급여액이 적정한 年金計算에 의거하여 산정되고 있을 것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것을 말하며, 이를 규정에서 규정하는 厚生年金基金契約이란 후생연금보험법 제130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연금급여등적립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제159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연금급여등적립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계약의 체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신탁계약 혹은 생명보험계약 또는 동법 제130조의2제4항 혹은 제159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는 예·저금의 예입 혹은 유가증권의 구입에 관한 계약을 말하며, 전2항에서 규정하는 勤勞者財產形成給與契約이란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1971년 법률 제912호) 제6조의2제1항(勤勞者財產形成給與契約등)에서 규정하는 신탁, 생명보험, 생명공제 및 손해보험의 계약(당해 생명공제계약에 관계되는 공제금지급사유의 발생을 공제사고로 하는 공제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는 같다) 또는 동항에 규정하는 증권투자신탁의 설정의 위임에 관한 계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을 말하며, 전2항에 규정하는 勤勞者財產形成基金給與契約이란 동법 제6조의3제2항(근로자재산형성기금계약)에 규정하는 신탁, 생명보험, 생명공제 및 손해보험의 계약 또는 동항에 규정하는 증권투자신탁의 설정의 위임에 관한 계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신탁계약 및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예·저금의 예입 또는 유가증권의 구입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④ 제1항의 월수는 曆에 따라 계산하며, 1월 미만의 단수는 버린다.

第85條 (退職年金業務등의 引繼를 받은 경우의 特例) ① 퇴직연금업무등을 행하는 내국법

인이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또는 퇴직연금업무등에 관한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 합병 또는 양도가 합병후 존속하는 내국법인 또는 양도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항에서는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사업연도의 중도에 이루어지고 또 합병법인등이 당해 퇴직연금업무등에 관한 사업의 전부를 인계한 때에는 합병법인등의 합병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退職年金等積立金額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합병법인등의 당해 사업연도개시시의 전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退職年金等積立金額을 12로 나누고, 여기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합병 또는 양도에 의하여 인계한 퇴직연금업무등에 관한 합병 또는 양도시에 계산되는 전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退職年金等積立金額을 12로 나누고, 여기에 합병 또는 양도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전항의 월수는曆에 따라 계산하며, 1월 미만의 단수는 버린다.

第86條 (退職年金業務등을 폐지한 경우의 特例) 퇴직연금업무등을 행하는 내국법인등이 전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에 퇴직연금업무등을 폐지한 경우에, 이를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제84조제1항 및 전조제1항제1호 중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는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퇴직연금업무등의 폐지일까지의 월수”로, 동항제2호 중 “합병 또는 양도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의 월수”는 “합병 또는 양도일부터 퇴직연금업무등 폐지일까지의 기간의 월수”로 한다.

## 第2節 稅額의 計算

第87條 (退職年金等積立金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 退職年金等積立金에 대한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退職年金等積立金額에 100분의 1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第3節 申告 및 納付

第88條 (退職年金等積立金의 중간신고) 퇴직연금업무등을 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6월을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월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간주하여 계산한 경우에 당해 기간의 과세표준인 退職年金等積立金額
2. 전호의 退職年金等積立金額에 대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3. 전2호에 기기하는 금액의 계산기초 기타 대장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第89條** (退職年金等積立金의 확정신고) 퇴직연금업무등을 행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부터 2월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인 退職年金等積立金額
2. 전호의 退職年金等積立金額에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3.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법인세액에서 다음 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당해 신고서에 관한 기한후 신고서의 제출 또는 신고서의 미제출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포함하며 이들 액에 대하여 수정신고서의 제출 또는 개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개정후의 법인세액으로 한다)을 공제한 금액

4. 전 3호에 게기하는 금액의 계산기초 기타 대장성령이 정하는 사항

**第90條** (退職年金等積立金의 중간신고에 의한 납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은 당해 신고서에 기재한 동조제2호의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당해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第91條** (退職年金等積立金의 확정신고에 의한 납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은 당해 신고서에 기재한 동조제2호의 금액(동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당해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 2. 法人稅法施行令

### 第2編 內國法人的 納稅義務

#### 第1章 各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

**第105條** (退職給與規程의範圍) 법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退職給與規程은 다음에 게기하는 규정으로 한다.

1. 團體協約에 의하여 정해지는 退職給與의 支給에 관한 規程
2. 勤勞基準法 제89조제1항(就業規則의 作成 및 申告의 意義) 또는 船員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신고된 就業規則에 의하여 정해지는 退職給與의 支

## 給에 관한 規程

3. 勤勞基準法 제89조 또는 선원법 제97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居住者가 작성한 退職給與의 支給에 관한 規程을 사전에 納稅地의 관할 稅務署長에게 신고한 경우에 당해 規程

第106條 (退職給與充當金計定의 移越限度額) ①법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4항에서 “이월한도액”이라 한다)은 다음의 금액 중 보다 적은 금액으로 한다.

1.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가. 각 사업연도종료시에 재직하는 피용자의 전원이 그 때에 자기사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한 경우에 각 피용자에 대하여 그 때에 정해져 있는 법률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退職給與規程(이하 제109조까지 “退職給與規程”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된 退職給與額의 合計額(이하 이조에서 “期末退職給與의 要支給額”이라 한다)

나. 가목에서 규정하는 피용자중 전 사업연도종료시부터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전원이 그 때에 자기사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한 경우에 각 피용자에 대하여 그 때에 정해져 있는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계산되는 退職給與額의 合計額

2. 期末退職給與의 要支給額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시에 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법 제5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退職給與充當金計定의 金額을 공제한 金額

②전항의 경우에 각 사업연도 종료시에 전조제1호에 게기하는 規程을 정하고 있지 않은 內國法人에 대하여는 전항제1호의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시에 재직하는 피용자에 관한 급료, 임금, 상여 및 이들의 성질을 가지는 報酬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액에 산입되는 것의 총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동호의 금액은 당해 보수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④ (생략)

第108條 (退職金控除契約등을 締結한 경우의 移越限度額의 特例등) ①내국법인이 제135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퇴직금공제에 관한 제도에 해당하는 퇴직금공제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이하 이조에서 “退職金共濟契約等”이라 한다) 혹은 법 제8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適格退職年金契約(이하 이조에서 “適格退職年金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혹은 체결한 경우 또는 厚生年金基金을 설립하고 있는 경우에 전2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退職給與規程에 피용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중에 퇴직금공제계약등 또는 적격퇴직연금계약등에 기초한 급여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피용

자에 관계되는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서 규정하는 퇴직급여액은 당해 피용자가 자기사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한 경우에 당해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계산되는 퇴직급여액중 당해 퇴직금공제계약등 또는 적격퇴직연금계약등에 기초한 급여금 이외의 보수(이하 이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퇴직급여”라 한다)

2. 퇴직급여규정의 改正 또는 퇴직금공제계약등 혹은 적격퇴직연금계약등의 變更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시에 재직하는 피용자중 전 사업연도종료시부터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자에 대한 退職給與에 대하여, 전 사업연도 종료시에는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지 않게 되었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사업연도 종료시에는 퇴직금공제계약등 혹은 적격퇴직연금계약등에 기초한 급여금 또는 후생연금기금으로부터의 급여금으로서 지급되지 않게 되었던 경우에는, 당해 피용자에 관계되는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퇴직급여액은 당해 피용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시에 퇴직급여규정이 전 사업연도 종료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 경우에 당해 피용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게 되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퇴직급여액에 의한다.

3. 適格退職年金契約을 체결하고 있는 內國法人 혹은 체결한 내국법인 또는 厚生年金基金을 설립하고 있는 內國法人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이전의 각 사업연도에 전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것에 수반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조에서 “移行年度”라 한다)에 이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한 경우에 전조제1항제2호의 금액(이하 이호에서 “調整前累積限度超過額”이라 한다)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그 이행연도에서 사업연도 종료시에 그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법제5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급여총당금계정의 금액이 그 때에 이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한 전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期末退職給與의 要支給額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調整前累積限度額“이라 한다) 이하가 되는 최초의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동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期末退職給與의 要支給額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중 보다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가. 당해 사업연도 종료시에 이월퇴직급여총당금계정의 금액

나. 당해 사업연도의 조정전누적한도액에, 그 이행연도의 조정전누적한도초과액에 84부터 그 이행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기간의 월수에 상당하는 수(그 수가 84를 초과할 때에는 84)를 공제한 수를 곱하여 84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②전항의 월수는 曆에 따라 계산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第135條 (適格退職年金契約等의 賦金等의 損金算入)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다음에

열거하는 부금, 보험료, 신탁금 등 또는 신탁금 등이나 예·저금 등의 불입에 충당하기 위한 금전을 지출한 경우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상 손금액에 산입한다.

1. 중소기업퇴직금공제사업단, 중소기업퇴직금공제법 제2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업종퇴직금공제조합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제5항(특정퇴직금공제단체의 승인)에서 규정하는 특정퇴직금공제단체가 행하는 退職金共濟制度에 근거하여 被共濟者(사업주가 퇴직금공제사업을 행하는 단체에 부금을 납부하고 그 단체가 사업주가 고용하는 被傭者의 퇴직에 대하여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退職金共濟契約에 근거하여 退職給與金의支給을 받을者를 말한다)를 위하여 支出한 賦金.(동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나目 내지 다목(퇴직금공제제도등에 근거한 일시금으로 퇴직 수당등으로 간주되지 않은 것)에 규정하는 賦金을 제외하며, 동법 제92조제1항(종전의 적립사업에 대한 취급)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의 특정업종퇴직금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 법 제84조제3항(適格退職年金契約等의 意義)에 규정하는 適格退職年金契約에 근거하여 제159조제2호(適格退職年金契約의 요건)에 규정하는 수익자등을 위하여 지출한 賦金 또는 保險料.(동조제3호에 규정하는 요건에 위반하여 그 임원에게 지출한 부금 또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3.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1971년 법률 제912호) 제6조의2제1항(勤勞者財產形成給與契約등)에 규정하는 勤勞者財產形成給與金契約에 근거하여 동항제2호에 규정하는 신탁수익자등(다음 호에서는 “신탁수익자”라 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동항제1호에 규정하는 信託金등(다음 호에서는 “신탁금등”이라고 한다)
4.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 제6조의3제2항(근로자재산형성기금계약)에 규정하는 제1종 근로자재산형성기금계약에 근거하여 신탁수익자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신탁금 등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제2종 근로자재산형성기금계약에 근거하여 동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에게 지출하는 동항제1호에 규정하는 예·저금 등의 불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법 제7조의12(각출)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金錢

## 第2章 退職年金等積立金에 대한 法人稅

第156條의2 (用語의 定義) 이 장에서 다음 각호의 용어의 의의는 당해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適格退職年金契約 -- 법 제84조제3항(適格退職年金契約등의 정의)에 규정하는 適格退職年金契約을 말한다.

2. 通常賦金額 — 당해 후생연금기금의 가입원에 대하여 후생연금기금령(1966년 정령 제324호) 제24조(과거근무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급여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제4호에서 “過去勤務期間”이라 한다)을 당해 후생연금기금에 관한 급여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계산한 부금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후생연금기금수준부금액 — 당해 후생연금기금을 설립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 후생연금기금령 제17조(標準報酬의 基準)에서 규정하는 표준보수기준을 사용하여 계산한 당해 후생연금기금의 가입원에 관한 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로서 불입하여야 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표준보수기준을 사용하여 계산한 당해 후생연금기금의 가입원과 관련한 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로 불입하여야 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4. 過去勤務賦金額 — 당해 후생연금기금의 가입원에 대하여 과거근무기간을 당해 후생연금기금과 관련한 급여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에 산입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과거근무기간을 산입하기 위하여 증가하는 부금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5. 總合賦金額 — 당해 후생연금기금의 가입원과 관련한 통상 부금액과 과거근무부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6. 引繼給與率 — 다음에 열거하는 비율을 말한다.
- 가. 후생연금기금연합회에 대하여 후생연금보험법 제160조제1항(중도탈퇴자와 관련한 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급여의 지급에 관한 의무의 이전이 된 동항에 규정하는 중도탈퇴자의 당해 이전과 관련한 연금급여액(후생연금기금연합회가 동법 제160조의2제3항(중도탈퇴자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금급여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산한 당해 연금급여액)을 당해 중도탈퇴자의 후생연금기금령 제22조(기준표준보수월액)에 규정하는 기준표준보수월액(이하 이호에서는 “기준표준보수월액”이라 한다)에 당해 중도탈퇴자의 동령 제20조(연금급여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원이었던 기간)에 규정하는 연금급여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가입원이었던 기간(이하 이호에서는 “加入員期間”이라 한다)의 월수를 곱하여 얻은 액에서 나누어 얻은 율
- 나. 후생연금기금연합회가 후생연금보험법 제162조의3제2항(해산기금가입원과 관련한 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47조제4항(청산)에 규정하는 해산기금가입원에 지급하는 연금급여액(동법 제159조제2항제1호(연합회의 업무)에 규정하는 사업에 의하여 당해 연금급여액을 가산하는 경우 또는 동법 제162조의3제5항(해산기금가입원과 관련한 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금급여액을 부가 또는 가산

한 당해 연금급여액)을 당해 해산기금가입원의 가입원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얻은 액에 나누어 얻은 을

7. 課稅中途脫退者등 — 전호에 규정하는 중도탈퇴자 또는 해산기금가입원 중 인계급여율이 1천분의 20.25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8. 課稅厚生年金基金契約 — 법 제84조제3항에 규정하는 厚生年金基金契約으로 다음 계약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법 제84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내국법인이 후생연금기금과 체결한 계약으로 당해 후생연금기금에 관한 통상부금액이 후생연금기금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 나. 가.에 규정하는 내국법인이 후생연금기금연합회와 체결한 계약으로 과세중도탈퇴자등이 있는 계약
9. 勤勞者財產形成給與契約 — 법 제8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勤勞者財產形成給與契約을 말한다.
10. 勤勞者財產形成基金契約 — 법 제8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勤勞者財產形成基金給與契約을 말한다.

第157條 (信託에 관한 退職年金等積立金額의 計算) ①법 제84조제2항제1호(퇴직연금등 적립금액의 계산)에서 규정하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동호의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개시시에 체결되어 있는 각각의 適格退職年金契約에 관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때까지 도래한 최후의 財產計算時(신탁법 제39조제2항(재산목록작성의 시기)에 규정하는 시기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조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계약에 관한 신탁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그 내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선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金額(평가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선정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7조(유가증권의 법정평가방법)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2. 당해 계약에 관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액과 금전 및 유가증권 이외의 자산취득을 위하여 필요하였던 금전의 합계액
3. 당해 계약에 관한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수익배분으로서 그 계산기간이 당해 재산계산시에 종료하는 금액
4. 당해 계약에 근거하여 불입된 부금의 총액 중 당해 재산계산시에 당해 계약에 관한 수익자가 그 때까지 부담한 부분의 금액에서 당해 계약에 근거하여 퇴직연금지급을 받고 있는 각 수익자의 그 시기까지 지급받은 당해 퇴직연금액에 당해 각 수익자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적격퇴직연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에 규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②법 제84조제2항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동호의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개시시에 체결되어 있는 각각의 課稅厚生年金基金契約과 관련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시기까지 도래한 최후의 재산계산시에 있어서의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열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조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계약과 관련한 신탁재산(당해 계약이 후생연금기금연합회와 체결된 課稅厚生年金基金契約인 경우는 과세중도탈퇴자등과 관련한 신탁재산에 한한다. 다음 호에서 “과세신탁재산”이라 한다)에 속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내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선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평가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선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7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2. 당해 계약과 관련한 과세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액과 금전 및 유가증권이외의 자산취득을 위하여 필요하였던 금액의 합계액
3. 당해 계약이 후생연금기금과 체결된 課稅厚生年金基金契約인 경우는 가목 또는 나목에 열거하는 경우의 구분에 따라 가목 또는 나목에 열거하는 금액
  - 가. 당해 계약이 나목에 규정하는 계약 이외의 계약인 경우 -- 당해 계약과 관련한 전2호에 열거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당해 계약과 관련한 통상 부금액 가운데 후생연금기금수준부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나. 당해 계약이 과거근무부금금액의 불입을 받는 후생연금기금과 관련한 계약으로 당해 계약의 과거근무부금액이 다음에 열거하는 과거근무부금액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계약과 관련한 전 2호에 열거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당해 계약과 관련한 총합부금액((2) 또는 (3)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 부금액과 (2) 또는 (3)에 규정하는 조정과거부금액과의 합계액) 가운데 후생연금기금수준부금액과 과거근무부금액((2) 또는 (3)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 또는 (3)에 규정하는 조정과거근무부금액)과의 합계액이 점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1) 당해 계약의 과거근무부금액의 전부가 일정한 불입예정기간에 거쳐 불입하는 과거근무부금금액(이하 이조에서는 “과거근무평준부금액”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는 것 -- 당해 과거근무부금액이 과거근무부금후생연금기금수준액 이하의 것인 경우
    - (2) 당해 계약의 과거근무부금금액이 과거근무평준부금액 및 일시에 불입하는 과거

근무부금액(이하 이호에서는 “과거근무부금일시불부금액”이라 한다)로 되어 있는 것 — 조정과거근무부금액(당해 과거근무평준부금액과 당해 과거근무일시불금액에 당해 과거근무평준부금액과 관련한 불입예정기간에 따른 다음 항 각호에 열거하는 배수를 곱하여 이를 17.63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과거근무부금후생연금기금수준액 이하인 경우

- (3) 당해 계약의 과거근무부금액의 전부가 과거근무일시불부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 — 조정과거근무부금액(당해 과거근무일시불부금액을 17.63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해 계약과 관련한 후생연금기금수준부금액의 27분의 17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인 경우

4. 당해 계약이 후생연금기금연합회와 체결된 課稅厚生年金基金契約인 경우 — 당해 계약과 관련한 각 과세중도탈퇴자등의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천분의 20.25를 곱하고 이를 당해 과세중도탈퇴자등의 인계급여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③전항제3호 나目에서 규정하는 과거근무부금후생연금기준수준액이란 課稅厚生年金基金契約과 관련한 후생연금기금수준부금액의 27분의 17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에 열거하는 당해 계약과 관련한 과거근무평준부금금액의 불입예정기간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에 열거하는 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가. 당해 불입예정기간이 7년이상 10년이하의 경우 2.22
- 나. 당해 불입예정기간이 10년초과 15년이하의 경우 1.67
- 다. 당해 불입예정기간이 15년초과 20년이하의 경우 1.4
- 라. 당해 불입예정기간이 20년초과 25년이하의 경우 1.25
- 마. 당해 불입예정기간이 25년초과 30년이하의 경우 1.15

- ④법 제84조제2항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동호의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개시시에 체결되어 있는 각각의 勤勞者財產形成給與契約 또는 勤勞者財產形成基金給與契約과 관련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시기까지 도래한 최종의 재산계산시에 있어서의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조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계약과 관련한 신탁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에 대해 그 내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대하여 선정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평가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선정한 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7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2. 당해 계약과 관련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액과 금전 및 유가증권이외의 재산취득을 위하여 필요하였던 금액의 합계액

3. 당해 계약과 관련한 신탁재산의 수익배분으로 그 계산기간이 당해 재산계산시에 종료하는 수익배분액

⑤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또는 전항제1호의 선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은 제34조제1항 제1호 가목(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규정하는 原價法으로 한다.

⑥제34조제5항, 제35조, 제36조, 제38조제1항 및 제40조 내지 제47조(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의 선정)의 규정은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제2항중 “내국법인은”을 “내국법인은 자신이 체결하고 있는 각 適格退職年金契約, 각 厚生年金基金契約 또는 각 勤勞者財產形成基金給與契約과 관련한 신탁재산에 대하여”로 한다.

⑦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조정비율이라 함은 백분의 7에 당해 연도사업개시시까지 도래한 상기규정에 규정하는 신탁재산과 관련한 최후의 재산계산시가 속하는 날의 익일부터 당해 사업연도개시시가 속하는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월수로 곱하여 이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에 백분의 백을 더한 비율을 말한다.

⑧전항의 월수는曆에 따라 계산하며,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이를 버린다.

⑨법 제85조제1항(퇴직연금업무등의 인계를 받은 경우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받는 동항에 규정하는 합병법인등에 대해 동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기초가 되는 동호에 규정하는 退職年金等積立金額의 계산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7항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이를 규정 중 “당해 사업연도개시시”는 “법 제85조제1항에 규정하는 합병 또는 양도시”로 한다.

第158條 (生命保險과 관련한 退職年金等積立金額의 計算) ①법 제84조제2항제2호 가목 (退職年金等積立金額의 계산)에 규정하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동호의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개시시에 체결되어 있는 각각의 適格退職年金契約에 대하여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에서 제2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계약과 관련한 보험업법 제88조제1항(책임준비금)에 규정하는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금액 가운데 보험료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당해 계약에 근거하여 불입한 보험료총액 가운데 당해 사업연도개시시에 있어서의 당해 계약과 관련한 보험금수취인이 그 시기까지 부담한 부분의 금액에서 당해 계약에 근거하여 퇴직연금의 지급을 받고 있는 각 보험금수취인이 그 시기까지 지급을 받은 당해 퇴직연금액에 당해 각 보험금수취인과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적격퇴직연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에 규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 ②법 제84조제2항제2호 나목에 규정하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동호의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개시시에 체결되어 있는 각각의 課稅厚生年金基金契約에

대하여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에서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계약과 관련한 보험료적립금(당해 계약이 후생연금기금연합회와 체결된 課稅厚生年金基金契約인 경우에는 과세중도탈퇴자등과 관련한 보험료적립금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당해 계약이 후생연금기금과 체결된 과세후생연금기금인 경우 -- 가목 또는 나목에 열거하는 경우의 구분에 따라 각각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하는 금액
  - 가. 당해 계약이 나목에 규정하는 계약이외의 계약인 경우 -- 당해 계약과 관련한 전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당해 계약과 관련한 통상 부금액 가운데 후생연금기금수준액이 점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나. 당해 계약이 과거근무부금액의 불입을 받는 후생연금기금과 관련한 계약이고 또한 당해 계약의 과거근무부금액이 전조제2항제3호 나목 (1), (2) 또는 (3)에 열거하는 과거근무부금액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호 나목 (1), (2) 또는 (3)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계약과 관련한 전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당해 계약과 관련한 동항제3호 나목에 규정하는 총합부금액 가운데 후생연금기금수준부금액과 과거근무부금액(동호 나목 (2) 또는 (3)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 나목 (2) 또는 (3)에 규정하는 조정과거근무부금액)과의 합계액이 점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당해 계약이 후생연금기금연합회와 체결된 과세후생연금기금인 경우 -- 당해 계약과 관련한 각 과세중도탈퇴자등이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천분의 20.25을 곱하고 이를 당해 과세중도탈퇴자등의 인계급수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③법 제84조제2항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동호의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개시시에 체결되어 있는 각각의 勤勞者財產形成給與契約 또는 勤勞者財產形成基金給與契約에 대하여 이러한 계약과 관련한 보험업법 제88조제1항에 규정하는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금액 가운데 보험료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전조제9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의 전 3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이들 규정 중 “당해 사업연도개시시”는 “법 제85조제1항(퇴직연금업무등의 인계를 받은 경우의 특례)에 규정하는 합병 또는 양도시”로 한다.

第158條의2 (生命控除와 관련한 退職年金等積立金額의 計算) ①법 제84조제2항제3호 가목(退職年金等積立金額의 계산)에 규정하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동호의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개시시에 체결되어 있는 각각의 適格退職年金契約에 대하여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에서 제2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계약과 관련한 농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5(공제사업과 관련한 책임준비금)에 규정하는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금액 가운데 공제부금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당해 계약에 근거하여 불입된 부금의 총액 중 당해연도사업개시시에 있어서의 당해 계약과 관련한 공제금수취인이 그때까지 부담한 부분의 금액에서 당해 계약에 근거 하여 퇴직연금의 지급을 받고 있는 각 공제연금수취인이 그 때까지 지급을 받은 당해 퇴직연금액에 당해 공제금수취인과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적격퇴직연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에 규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 한 금액

②법 제84조제2항제3호 나목에 규정하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동호의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개시시에 체결되어 있는 각각의 勤勞者財產形成給與契約 또는 勤勞者財產形成基金給與契約에 대하여 이러한 계약과 관련한 농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5에 규정하는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금액 가운데 공제부금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57조제9항(퇴직연금업무등의 인계를 받은 경우의 退職年金等積立金額의 계산)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전 2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이들 규정 중 “당해 사업연도개시시”는 “법률 제85조제1항(퇴직연금업무등의 인계를 받은 경우의 특례)에 규정하는 합병 또는 양수시”로 한다.

第158條의3 (損害保險과 관련한 退職年金等積立金額의 計算) ①법 제84조제2항제4호 (退職年金等積立金額의 계산)에 규정하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동호의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개시시에 체결되어 있는 각각의 勤勞者財產形成給與契約 또는 勤勞者財產形成基金給與契約에 대해서 이들 계약과 관련한 보험업법 제88조제1항(적립준비금)에 규정하는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금액 가운데 환불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57조제9항(퇴직연금업무등의 인계를 받은 경우의 退職年金等積立金額의 계산)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전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 중 “당해 사업연도개시시”는 “법 제85조제1항(퇴직연금업무등의 인계를 받은 경우의 특례)에 규정하는 합병 또는 양도시”로 한다.

第158條의4 (預·貯金受信과 관련한 退職年金等積立金額의 計算) ①법 제84조제2항제5호 가목(退職年金等積立金額의 계산)에 규정하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동호의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개시시에 체결되어 있는 각각의 課稅厚生年金基金契約에 대하여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에서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계약과 관련한 예·저금금액(당해 계약이 후생연금기금연합회와 체결된 課稅

厚生年金基金契約인 경우에는 과세중도탈퇴자등과 관련한 예·저금액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당해 계약이 후생연금기금과 체결된 課稅厚生年金基金契約인 경우는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의 구분에 따라 각각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하는 금액
  - 가. 당해 계약이 나목에 규정하는 계약 이외의 계약인 경우 -- 당해 계약과 관련한 전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당해 계약과 관련한 통상부금액 가운데 후생연금기금수준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나. 당해 계약이 과거근무부금액의 불입을 받는 후생연금기금과 관련한 계약이고 또한 당해 계약의 과거근무부금금액이 제157조제2항제3호 나목 (1), (2) 또는 (3)에 규정하는 과거근무부금액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호 나목 (1), (2) 또는 (3)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계약과 관련한 전호에 열거하는 금액에 당해 계약과 관련한 동항제3호나목에 규정하는 총합부금액 가운데 후생연금기금수준부금액과 과거근무부금액(동호 나목 (2) 또는 (3)에 규정하는 조정과거근무부금)과의 합계액이 점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당해 계약이 후생연금기금연합회와 체결된 課稅厚生年金基金契約인 경우 -- 당해 계약과 관련한 각 과세중도탈퇴자등의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천분의 20.25를 곱하고 이를 당해 가세중도탈퇴자등의 인계급여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②법 제84조제2항제5호 나목에 규정하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동호의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개시시에 체결되어 있는 각각의 勤勞者財產形成基金給與契約과 관련한 예·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57조제9항(퇴직연금업무등의 인계를 받은 경우의 退職年金等積立金額의 계산)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전 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규정 중 “당해 사업연도개시시”는 “법 제85조제1항(퇴직연금업무등의 인계를 받은 경우의 특례)에 규정하는 합병 또는 양도시”로 한다.

第158條의5 (有價證券의 購入등과 관련한 退職年金等積立金額의 計算) ①법 제84조제2항제6호 나목(退職年金等積立金額의 계산)에 규정하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동호의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개시시에 체결되어 있는 각각의 課稅厚生年金基金契約에 대해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계약과 관련한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필요하였던 금액(당해 계약이 후생연금기금계약연합회와 체결된 課稅厚生年金基金契約인 경우에는 과세중도탈퇴자등과 관련한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필요하였던 금액에 한한다)
2. 당해 계약이 후생연금기금과 체결된 課稅厚生年金基金契約인 경우 -- 가목 또는 나

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하는 금액

가. 당해 계약이 나목에 규정하는 계약이외의 계약인 경우 -- 당해 계약과 관련한 전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당해 계약과 관련한 통상부금액 가운데 후생연금기금수준부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당해 계약이 과거근무부금액의 불입을 받는 후생연금기금과 관련한 계약이고 또 한 당해 계약의 과거근무부금금액이 제157조제2항제3호 나목 (1), (2) 또는 (3)의 과거근무부금액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호 나목 (1),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계약과 관련한 전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당해 계약과 관련한 동항제3호 나목에 규정하는 총합부금액 가운데 후생연금기금수준부금액과 과거근무부금액(동호 (2) 또는 (3)에 규정하는 조정과거근무부금액)의 합계액이 점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당해 계약이 후생연금기금연합회와 체결된 課稅厚生年金基金契約인 경우 -- 당해 계약과 관련한 각 과세중도탈퇴자등의 제1호에서 정하는 금액에 천분의 20.25를 곱하고 이를 당해 과세중도탈퇴자등의 인계률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②법 제84조제2항제5호 나목에 규정하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동호의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개시시에 체결되어 있는 각각의 근로자재산형성기금급여계약과 관련한 예·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제157조제9항(퇴직연금업무등의 인계를 받은 경우의 退職年金等積立金額의 계산)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전 2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이를 규정 중 “당해 사업연도개시시”를 “법 제85조제1항(퇴직연금업무등의 인계를 받은 경우의 특례)에 규정하는 합병 또는 양도시”로 한다.

第159條 (適格退職年金契約의 要件) 법 제84조제3항(適格退職年金契約등의 의의)에 규정하는 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은 그 계약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퇴직연금에 관한 신탁, 생명보험 또는 생명공제계약으로 한다.

1. 퇴직연금(퇴직연금의 지급요건을 불비로 인하여 또는 퇴직연금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는 같다)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2. 사업주가 신탁회사(금융기관의신탁업무등의겸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동법 제1조 제1항(겸영의 인가)에 규정하는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는 같다), 생명보험회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농업협동조합법 제10조제1항제8호(공제에 관한 시설)의 사업을 행하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 가운데 그 사업이 전국의 구역에 미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장에서는 같다)와 체결한 신탁계약, 생명보험

계약 또는 생명공제계약으로 사업주가 그 피용자(법 제35조제5항(피용자로서의 직무를 가지는 임원의 의의)에 규정하는 피용자로서의 직무를 가지는 임원을 포함하고 일용직 및 임시직은 제외한다)를 수의자, 보험금수취인 또는 공제금수취인(이하 이 조에서는 “수의자등”이라 한다)으로 부금 또는 보험료(이하 이조에서는 “부금등”이라 한다)를 불입하고 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당해 수의자등의 퇴직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을 것

3. 수의자등(당해 계약에 근거하여 그 자에 대해 부금등이 불입되는 기간중에 있는 수의자에 한한다) 가운데 당해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이하 이조에서는 “사업주”라고 한다)인 개인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또는 사업주인 법인의 임원(전호에 규정하는 피용자로서의 직무를 가지는 임원을 제외한다)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할 것
4. 부금등의 액 및 급여액이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합치한 적정한 年金計理에 근거하여 산정되고 있는 것일 것
  - 가. 부금등의 액 및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정이율은 년 5%이상일 것
  - 나. 부금등의 액 및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정사망률 또는 예정탈퇴율은 그 산정시의 현황에 있어 합리적으로 계산되고 있을 것
5. 부금등(다음 호에 규정하는 부금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액 또는 보수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방법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것일 것
6. 과거근무채무등의 액(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수의자등의 가입 또는 급여수준의 개정이 있거나 또는 사전에 정하여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당해 계약에 근거하여 퇴직연금의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보하여야 하는 금액의 재계산이 이루어짐으로서 그 계약에 근거하여 퇴직연금의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규로 유보하여야 하는 금액이 계산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유보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는 같다)과 관련한 부금등에 대하여 제8호 나목에 규정하는 금액 이외에 다음 각목의 1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것일 것
  - 가. 일정액의 부금등(당해 부금등의 매 1년의 액이 과거근무채무등의 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나. 보수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부금등(당해 부금등의 매 1년의 액이 당해 계약에 관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시에 계산한 가목에 규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다. 과거근무채무등의 현재액(과거근무채무등의 액 중 아직 불입되고 있지 아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는 같다)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부금등(당해 부금등의 매 1년의 액이 과거근무채무등의 현재액의 100분

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인 것에 한하며, 과거근무채무등의 현재액이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전호에 규정하는 부금등의 액 이하인 때에는 당해 과거근무채무등의 현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금등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7. 당해 계약의 체결시부터 5년 이내의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당해경과하는 시에 있어서의 제1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신탁과 관련한 退職年金等積立金額의 계산)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당해 계약과 관련한 신탁재산의 가액, 보험료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공제금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계약에 근거하여 퇴직연금의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보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초과부분의 금액의 전액을 부금에 충당하거나 또는 사업주에 반환하는 것일 것
8. 당해 계약과 관련한 전호에 규정하는 유보하여야 할 금액에서 당해 계약과 관련한 과거근무채무등의 현재액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조에서는 “要留保額”이라 한다)은 다음에 열거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사업주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 가. 사업주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 후생연금기금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당해 해제에 의하여 반환받은 금액 가운데 수익자등이 부담한 부금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을 그 부담하는 부금으로 즉시 후생연금기금에 불입하는 경우의 그 불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수익자등이 다른 適格退職年金契約과 관련한 수익자등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업주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 당해 해제로 반환받는 금액을 당해 다른 適格退職年金契約과 관련한 그 부담하는 부금등으로 즉시 불입하는 경우의 그 불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당해 계약과 관련한 신탁회사간, 생명보험회사간 또는 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및 농업협동조합연합회간에 인수비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가 당해 인수비율이 감소한 이들 법인으로부터 요유보액 가운데 당해 감소한 인수비율에 대응하는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아 당해 인수비율이 증가한 이들 법인에 대하여 당해 금액을 그 부담하는 부금등으로 즉시 불입한 그 불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9.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한 요유보액은 전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수익자등에게 귀속하는 것일 것
10. 부금등의 액 또는 급여액 기타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에 대하여 수익자등 가운데 특정한 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취급을 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11.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 통상의 조건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기타 이와 유사한 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 및 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당해 계약과 관련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 12. 당해 계약이 상당기간 계속하는 것일 것

第160條 (適格退職年金契約의 承認) ①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그 체결한 퇴직연금과 관련한 신탁, 생명보험 또는 생명공제계약에 관하여 전조에 규정하는 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의 성명 또는 명칭 기타 대장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계약의 계약서사본 기타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전항의 신청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당해 계약의 내용이 전조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을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③국세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한 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그 체결한 適格退職年金契約에 관하여 급여액 또는 부금등의 액 기타 전조 각호에 규정하는 요건과 관련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한 변경에 관련한 승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⑥제1항에 규정하는 신탁, 생명보험 또는 생명공제계약 가운데 당해 법인이 전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전에 국세청장의 인정을 받은 정형적인 계약서(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의 성명 또는 명칭, 당해 정형적인 계약서의 약정 연월일 기타 대장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동항의 신청서로 보며, 당해 신고서의 제출을 제2항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체결한 適格退職年金契約으로 전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은 것에 대하여 당해 適格退職年金契約의 기초가 되었던 정형적인 계약서(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의 범위내에서 급여액 또는 부금등의 액 기타 전조 각호에 열거하는 요건과 관련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適格退職年金契約의 상대방인 사업주의 성명 또는 명칭 기타 대장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신고서를 제4항의 승인의 신고서로 보며, 당해 신고서의 제출을 동항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第161條 (適格退職年金契約의 승인의 취소) ①국세청장은 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체결한 適格退職年金契約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한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당해 계약 가운데 급여액 또는 부금등의 액 기타 제159조각호(適格退職年金契約의 요건)에 규정하는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전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 당해 계약 가운데 전호에 규정하는 사항의 1에 반하는 사실이 있을 경우  
 ②국세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의 취소처분을 하는 때에는 동항에 규정하는 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한다.

### 3. 所得稅法<sup>2)</sup>

#### 第2編 居住者의 納稅義務

##### 第2章 課稅標準 및 그 計算 및 所得控除

第30條 (退職所得) ①退職所得이란 퇴직수당, 일시은급 기타 퇴직에 의하여 일시에 받는 급여 및 이들의 성질을 가지는 급여(이하 이조에서 “退職手當等”이라 한다)에 관계되는所得을 말한다.

②퇴직소득의 금액은 그 해의 퇴직수당등의 수입금액에서 退職所得控除額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前항에서 규정하는 退職所得控除額은 다음 각호의 경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 政令으로 정하는 勤續年數(이하 이항에서 “勤續年數”라 한다)가 20년 이하인 경우 : 40만엔에 해당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勤續年數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 800만엔과 70만엔에 해당 근속연수에서 20년을 공제한 연수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

#### ④ (생략)

第31條 (退職手當等으로 간주되는 一時金) 다음의 一時金은 이 법률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전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수당등으로 간주한다.

- 국민연금법, 후생연금보험법(제9장의 규정을 제외한다), 국가공무원등공제조합법, 지방공무원등공제조합법, 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법, 농림어업단체직원공제조합법

2) 전문개정 1947년 3월 31일 법률 제27호; 최근개정 1992년 5월 6일 법률 제39호.

및 농업자연금기금법의 규정에 의거한 일시금 기타 이들 법률의 규정에 의한 社會保障 또는 共濟에 관한 制度와 유사한 제도에 의거한 一時金(이와 유사한 紿與를 포함한다. 제3호에서도 같다)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

2. 후생연금보험법 제9장(厚生年金基金 및 厚生年金基金聯合會)의 규정에 의거한 一時金으로 동법제122조에서 규정하는 가입원의 퇴직에 기인하여 지급되는 것
3. 法人稅法 제84조제3항(適格退職年金等積立金額의 計算)에서 규정하는 적격퇴직연금계약에 의거하여 지급을 받는 일시금으로, 그 일시금이 지급될 기인으로 된 근무를 한 자의 퇴직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당해 계약에 의거하여 불입된 보험료 또는 부금 중에서 당해 근무를 한 자가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금액에서 그 부담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一時金으로 政令으로 정하는 것

第35條 (雜所得) ①雜所得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급여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및 일시소득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말한다.

②雜所得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그 해의 공적연금등의 수입금액에서 공적연금등공제액을 공제한 잔액
2. 그 해의 잡소득(공적연금등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에 관계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③전항에서 규정하는 公的年金等이란 다음의 年金을 말한다.

1. 제31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거한 年金 기타 동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도에 의거한 年金(이와 유사한 급여를 포함한다. 제3호에서도 같다)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
  2. 恩給(一時恩給을 제외한다) 및 과거근무에 의거하여 사용자인 자로부터 지급되는 年金
  3. 제31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계약에 의거하여 지급을 받는 退職年金(당해 계약에 의거하여 불입된 보험료 또는 부금중에서 그 퇴직연금이 지급될 기인으로 된 근무를 한 자가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퇴직연금액에서 그 부담금액중 그 퇴직연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연금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
- ④제2항에서 규정하는 公的年金等控除額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합계액이 140만엔(그 거주자가 연령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70만엔) 미만인 경우에는 140만엔(그 거주자가 연령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70만엔)으로 한다.
1. 100만엔(그 거주자가 연령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엔)

2. 그 해의 공적연금등의 수입금액에서 전호에 계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다음에 계기하는 경우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에 계기하는 금액
- 가. 당해 잔액이 360만엔 이하인 경우 : 당해 잔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당해 잔액이 360만엔을 초과하고 720만엔 이하인 경우 : 90만엔과 당해 잔액에서 360만엔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과의 합계액
- 다. 당해 잔액이 7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 144만엔과 당해 잔액에서 720만엔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과의 합계액
- ⑤전항의 경우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의 연령이 65세 미만인가의 여부의 판정은 그 해 12월 31일의 연령에 의한다.

第54條 (退職給與充當金) ①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居住者로서 사업소득을 발생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者 중, 정령으로 정하는 退職給與規程을 정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관계되는 피용자(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기타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퇴직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연도에 退職給與充當金計定에 이월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금액중 그 해 12월 31일( 그 거주자가 해의 중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시)에 재직하는 그 사업에 관계되는 피용자의 전원이 자기사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견적액 중 그 해에 증가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을 기초로 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은 그 거주자의 그 해의 사업소득의 금액의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을 가지는 거주자는 전항의 피용자가 퇴직한 경우에, 청색신고서의 제출승인을 취소된 경우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되게 된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 또는 동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한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은 각각 취소되게 된 날 또는 취소한 날이 속하는 해의 사업소득의 금액의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확정신고서에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 이월된 금액의 필요경비에의 산입에 관한 명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⑥(생략)

第74條 (社會保險料控除) ①居住者가 각 연도에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기타 친족이 부담하여야 할 社會保險料를 지급한 경우 또는 보수에서 공제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 또는 공제된 금액을 그 거주자의 그 해당연도분의 總所得金額, 退

職所得金額 또는 山林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社會保險料란 다음에 게기하는 것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제9조제1항제7호에 게기하는 보수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의 보험료

2.~3. (생략)

4.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금의 가입원으로서 부담하는 부금

5. (생략)

6. 厚生年金保險法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 및 厚生年金基金의 加入員으로서 부담하는 賦金(동법 제1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徵收金을 포함한다)

7.~13.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社會保險料控除라 한다.

第76條 (生命保險料控除) ① 居住者가 각 年度에 生命保險契約등에 관계되는 保險料 또는 賦金(다음 항에서 규정하는 個人年金保險料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生命保險料”라 한다)을 支拂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그 거주자의 그 해의 總所得金額, 退職所得金額 또는 山林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

1. 그 해에 지불된 생명보험료금액의 합계액이 25,000엔 이하인 경우 : 당해 합계액

2. 그 해에 지불된 생명보험료금액의 합계액이 25,000엔 초과 5만엔 이하인 경우 : 25,000엔과 당해 합계액에서 25,000엔을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의 합계액

3. 그 해에 지불된 생명보험료금액의 합계액이 50,000엔 초과 10만엔 이하인 경우 : 37,500엔과 당해 합계액에서 50,000엔을 공제한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의 합계액

4. 그 해에 지불된 생명보험료금액의 합계액이 1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 5만엔

② 個人年金保險料등 (생략)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生命保險料契約等이란 다음에 게기하는 계약중 당해 계약에 의거한 보험료, 연금, 공제금 또는 일시금(이들과 유사한 급여금을 포함한다)의 수취인의 전부를 그 보험료 혹은 부금의 불입을 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 기타 친족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 또는 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생명보험회사 또는 외국보험사업자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2. 간이생명보험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간이생명보험계약

3. 농업협동조합법 제10조제1항제8호의 사업을 행하는 농업협동조합이 체결한 생명공  
제계약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공제계약
  4. 법인세법 제8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適格退職年金契約
- ④ 개인연금보험계약등 (생략)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控除는 生命保險料控除라 한다.

#### 4. 所得稅法施行令

##### 第2編 居住者の 納稅義務

###### 第2章 課稅標準 및 그 計算 및 所得控除

第153條 (退職給與規程金의範圍) 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退職  
給與規程은 다음에 게기하는 규정으로 한다.

1. 團體協約에 의하여 정해지는 退職給與의 支給에 관한 規程
2. 勤勞基準法 제89조제1항(就業規則의 作成 및 申告의 意義) 또는 船員法 제9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行政관청에 신고된 就業規則에 의하여 정해지는 退職給與의 支  
給에 관한 規程
3. 勤勞基準法 제89조 또는 船員法 제97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居住者가 작성한  
退職給與의 支給에 관한 規程을 사전에 納稅地의 관할 稅務署長에게 신고한 경우에  
당해 規程

第154條 (退職給與充當金計定의 移越限度額) ①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의 금액 중 보다 적은 금액으로 한다.

1.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 가. 그 해 12월 31일에 재직하는 피용자의 전원이 동일에 자기사정에 의하여 퇴직하  
는 것으로 가정한 경우에 각 피용자에 대하여 동일 현재에 정해져 있는 법률 제  
5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退職給與規程(이하 제158조까지 “退職給與規程”이라 한  
다)에 의하여 계산된 退職給與額의 合計額(이하 이조에서 “期末退職給與의 要支給  
額”이라 한다)
  - 나. 가목에서 규정하는 피용자중 전연도 12월 31일부터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전  
원이 동일에 자기사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한 경우에 각 피용자에 대하

여 동일 현재에 정해져 있는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계산되는 退職給與額의 合計額

2. 期末退職給與의 要支給額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해 12월 31일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법 제5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退職給與充當金計算의 金額을 공제한 金額

②전항의 경우에 그 해 12월 31일에 전조제1호에 게기하는 規程을 정하고 있지 않은 居住者에 대하여는 전항제1호의 금액이 동일에 재직하는 피용자에 관한 급료, 임금, 상여 및 이들의 성질을 가지는 報酬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액에 산입되는 것의 총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동호의 금액은 당해 보수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第156條 (退職金控除契約등을 締結한 경우의 移越限度額의 特例等) 거주자가 중소기업 퇴직금공제사업단 혹은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정업종퇴직금공제계약 혹은 제74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특정퇴직금공제단체가 행하는 퇴직금공제제도에 해당하는 퇴직금공제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이하 이조에서 “退職金共濟契約等”이라 한다) 혹은 법인세법 제8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適格退職年金契約(이하 이조에서 “適格退職年金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혹은 厚生年金基金을 설립하고 있는 경우에 전2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退職給與規程에 피용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중에 퇴직금공제계약등 또는 적격퇴직연금계약등에 기초한 급여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피용자에 관계되는 제154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서 규정하는 퇴직급여액은 당해 피용자가 자기사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한 경우에 당해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계산되는 퇴직급여액중 당해 퇴직금공제계약등 또는 적격퇴직연금계약등에 기초한 급여금 이외의 보수(이하 이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퇴직급여”라 한다)
2. 퇴직급여규정의 改正 또는 퇴직금공제계약등 혹은 적격퇴직연금계약등의 變更에 의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재직하는 피용자중 전연도 12월 31일부터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자에 대한 退職給與에 대하여, 동일에는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지 않게 되었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해 12월 31일에는 퇴직금공제계약등 혹은 적격퇴직연금계약등에 기초한 급여금 또는 후생연금기금으로부터의 급여금으로서 지급되지 않게 되었던 경우에는, 당해 피용자에 관계되는 제154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퇴직급여액은 당해 피용자에 대하여 동일에 퇴직급여규정이 전연도 12월 31일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 경우에 당해 피용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게 되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퇴직급여액에 의한다.
3. 適格退職年金契約을 체결하고 있는 거주자 또는 厚生年金基金을 설립하고 있는 거주

자로서 그 해 이전의 각 연도에 전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것에 수반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이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한 경우에 전조제1항제2호의 금액(이하 이호에서 “調整前累積限度超過額”이라 한다)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그 조정전누적한도초과액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연도에서 그 해 12월 31일에 그 해의 전연도에서 이월된 법제5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이 그 때에 이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한 전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期末退職給與의 要支給額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調整前累積限度額“이라 한다) 이하가 되는 최초의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동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期末退職給與의 要支給額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중 보다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가. 그 해 12월 31일에 이월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

나. 그 해의 조정전누적한도액에, 조정전누적한도초과액을 7로 나누어 이에 7부터 전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연수에 상당하는 수(그 수가 7를 초과할 때에는 7)을 공제한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 II. 厚生年金保險法 중 關聯規定

### 1. 厚生年金保險法<sup>3)</sup>

####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률은 勤勞者의 老齡, 障害 또는 死亡에 대하여 保險給與를 행하고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아울러 厚生年金基金이 加入員에 대하여 행하는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 제8장 — 생략]

#### 第9章 厚生年金基金 및 厚生年金基金聯合會<sup>4)</sup>

##### 第1節 厚生年金基金

第106條 (基金의 目的) 厚生年金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은 加入員의 老齡에 대하여 保險給與를 행함으로써 加入員의 生活安定과 福祉向上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07條 (組織) 基金은 適用事業所의 사업주 및 그 적용사업소에 사용되는 被保險者로 조직한다.

※ 적용사업소 제6조, 피보험자 제9조, 제10조<sup>4)</sup>

3) 제정 1954. 5. 19. 법률 제115호, 최근개정 1990년 2월 6일 법률 제40호. 여기서는 제1장(總則), 제2장(被保險者), 제3장(保險給與), 제4장(福祉施設), 제5장(費用의 負擔), 제6장(不服申請), 제7장(雜則) 및 제8장(罰則)은 피용자의 공적연금인 厚生年金保險制度에 관한 규정이므로 번역을 생략한다.

4) 1965년 6월 1일 法律 第104號에 의한 개정으로 第9章 추가.

5) 제6조(적용사업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소 혹은 사무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또는 선박을 適用事業所로 한다.

1. 다음에 게기하는 사업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로서 상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것 <各目 생략>

第108條 (法人格) ①基金은 法人으로 한다.

②基金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第109條 (名稱) ①基金은 명칭중에 厚生年金基金이라는 文字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基金이 아닌 자는 厚生年金基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과조치 1965년 법률 제104호 부칙 제21조

第110條 (設立) ①1 또는 2 이상의 적용사업소에 정령으로 정하는 數 이상의 被保險者를  
當時 사용하는 事業主는 당해 1 또는 2 이상의 적용사업소에 대하여 基金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적용사업소의 사업주는 共同으로 基金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의 數는  
합산하여 상시 전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어야 한다.

第111條 ①적용사업소의 사업주가 基金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基金을 설립하고자 하는  
적용사업소에 사용되는 피보험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規約을 작성하고, 후생  
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적용사업소에 사용되는 피보험자의 3분의 1 이상으로 조직하는 노동  
조합이 있을 때, 사업주는 동항의 동의 이외에 당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2 이상의 적용사업소에 대하여 基金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2항의 동의는 각 적  
용사업소에 대하여 얻어야 한다.

第112條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認可申請과 동시에 基金設立의 認可申請을 행한 경우  
에 前2條중 “적용사업소”는 “적용사업소가 될 사업소”로,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될 자”로 한다.

第113條 (成立時期) 基金은 設立認可를 받은 때에 成立한다.

---

2. 전호에 게기하는 것 이외에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로서 상시 종업  
원을 사용하는 것

3. 선원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선원으로서 선박소유자에게 사용되는 자가 승무하는 선박

②전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적용사업소의 사업주로 본다.

③제1항의 사업소 이외의 사업소의 사업주는 都道府縣知事의 인가를 받아 당해 사업소를 적용사업  
소로 할 수 있다.

④전항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 당해 사업소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소에 사용되는 자의 2분의 1 이상  
의 동의를 얻어 도도부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피보험자) 적용사업소에 사용되는 65세 미만의 자는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가 된다.

제10조 ①적용사업소 이외의 사업소에 사용되는 65세 미만의 자는 도도부현지사의 인가를 받아 후  
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②전항의 인가를 받음에는 그 사업소의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第114條 基金이 성립할 때에 이사장이 선임되기까지의 기간에는 基金設立의 認可申請을 한 적용사업소의 사업주가 이사장의 직무를 행한다. 이 경우에 당해 적용사업소의 사업 주는 이 章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이사장으로 본다.

第115條 (規約) 基金은 規約을 作成하여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소의 소재지
3. 基金의 설립에 관계되는 적용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의 명칭 및 소재지)
4. 대의원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가입원에 관한 사항
7. 표준보수에 관한 사항
8.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에 관한 사항
9.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에 충당하여야 할 적립금의 管理 · 運用契約에 관한 사항
10. 부금 및 그 부담구분에 관한 사항
11. 사업연도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12.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3.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14. 공고에 관한 사항
15. 기타 조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②전항의 규약의 변경(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은 후생장관의 認可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전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약을 변경한 때에 基金은 지체없이 후생장 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第116條 (公告) 基金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의 명칭,사무소의 소재지,임원의 성 명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第117條 (大議員會) ①基金에 대의원회를 둔다.

②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조직한다.

③대의원의 정수는 짹수로 하고, 그 반수는 설립사업소(基金이 설립된 적용사업소를 말 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주가 설립사업소의 사업주(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설립사업 소에 사용되는 자 중에서 선정하고, 나머지 반수는 가입원이 호선한다.

④대의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⑤ 대의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대의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의 자가 회의에 부의할 사항 및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대의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때에, 이사장은 그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대의원회에 의장을 둔다.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⑦ 전 각항에 정하는 것 이외에 대의원회의 소집, 의사절차 기타 대의원회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第118條 ①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변경

2. 매사업연도의 예산

3. 매사업연도의 사업보고 및 결산

4. 기타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사장은 대의원회가 성립하지 않을 때 또는 이사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 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임시긴급시행을 요하는 것 을 처분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 다음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그 승인 을 구하여야 한다.

④ 대의원회는 감사에 대하여 기금의 업무에 관한 감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보고를 청구 할 수 있다.

第119條 (任員) ① 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는 짹수로 하며 그 반수는 설립사업소의 사업주가 선정한 대의원으로, 나 머지 반수는 가입원이 호선한 대의원으로 각각 호선한다.

③ 이사중 1인을 이사장으로 하고, 설립사업소의 사업주가 선정한 대의원인 이사중에서 이사가 선거한다.

④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학식경험을 가지는 자, 설립사업소의 사업주가 선정한 대의원 및 가입원이 호선한 대의원중에서 각각 1인을 선거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⑥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하더라도 후임임원이 취임할 때까지의 기간은 계속 그 직무를 행한다.

⑦ 감사는 이사 또는 기금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第120條 (任員의 職務) ① 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집행한다. 이사장에게 사 고가 있을 때 또는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설립사업소의 사업주가 선정한 대의원인 이 사중에서 사전에 이사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거나 또는 그 직무를 행한다.

② 기금의 업무는 규약에 별단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이사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을 보좌하여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에 충당하여야 할 적립금의 管理·運用에 관한 기금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기금의 업무를 감사한다.

⑤ 감사는 감사결과에 의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장 또는 대의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第120條의2 (理事의 義務 및 損害賠償責任) ① 이사는 전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 법령에 근거한 후생장관의 처분, 규약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기금을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가 전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그 업무를 해태한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第120條의3 (理事의 禁止行爲 등) ① 이사는 자기 또는 당해 기금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에 충당해야 할 적립금의 管理·運用의 적정을 해치는 것으로서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기금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이사를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체시킬 수 있다.

第120條의4 (理事長의 代表權制限) 기금과 이사장(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리하거나 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은 대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학식경험을 가지는 자 중에서 선임된 감사가 기금을 대표한다.

第121條 (基金의 任員 및 職員의 公務員性) 기금의 임원 및 기금에 사용되고 그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별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본다.

第122條 (加入員) 기금의 설립사업소에 사용되는 피보험자는 당해기금의 가입원이 된다.

第123條 (資格取得의 時期) 가입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가입원 자격을 취득한다.

1. 설립사업소에 사용되게 된 때

2. 사용되는 사업소 또는 선박이 설립사업소가 된 때

3. 설립사업소에 사용되는 자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第124條 (資格喪失의 時期) 가입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날(그 사실이 있었던 날에 다시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혹은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된 때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에 가입원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설립사무소에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
3. 사용되는 사업소 또는 선박이 설립사업소가 아니게 된 때
4.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5. 65세에 달한 때

第125條 (加入員資格의 得喪에 관한 特例) 가입원자격을 취득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 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에 소급하여 가입원이 아니었던 자로 본다.

第126條 (동시에 2이상의 基金의 設立事業所에 사용되는 者의 取扱) ①동시에 2이상의 기금의 설립사업소에 사용되는 피보험자는 제1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기금 이외의 기금의 가입원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②전항의 선택은 그자가 2이상의 기금의 설립사업소에 사용되게 된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자가 동항의 선택을 한 때에는, 그자가 2이상의 기금의 설립사업소에 사용된 날에 소급하여 선택한 하나의 기금 이외의 기금의 가입원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자가 동항의 선택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2이상의 기금중 하나의 기금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⑤甲기금의 가입원이 동시에 乙기금의 설립사업소에 사용되게 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乙기금을 선택한 때에는, 그자는 乙기금의 가입원이 된 날에 甲기금의 가입원 자격을 상실한다.

⑥제1항에 규정하는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한 기금의 가입원으로 되지 않은 때에는, 그자는 그날로 당해 기금 이외의 기금의 가입원자격을 취득한다.

第127條 ①동시에 설립사업소와 설립사업소 이외의 사업소 또는 선박에 사용되는 피보험자는 제1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금의 가입원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전항의 신청은 그자가 동시에 설립사업소와 설립사업소 이외의 사업소 또는 선박에 사용된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이내에 당해 설립사업소에 관계되는 기금에 하여야 한다.

③설립사업소 이외의 사업소 또는 선박에 사용되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설립사업소에 사용되게 된 경우에 제1항의 신청을 한 때에는 동시에 설립사업소와 설립사업소 이외의 사업소 또는 선박에 사용된 날에 소급하여 당해 설립사업소에 관계되는 기금의 가입원으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한다.

④기금의 가입원이 동시에 설립사업소 이외의 사업소 또는 선박에 사용된 경우에 제1항의 신청을 한 때에는 동시에 당해 기금의 설립사업소와 설립사업소 이외의 사업소 또는

선박에 사용된 날에 당해 기금의 가입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第128條 (設立事業所의 事業主의 申告) 설립사업소의 사업주는 가입원에 관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또는 표준보수의 결정 혹은 개정에 대하여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었던 때에는 신속히 그 통지가 있었던 사항을 기금에 신고하여야 한다.

第129條 (標準報酬) ①기금은 가입원의 보수월액에 기초하여 표준보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가입원이 당해기금의 설립사업소 이외의 적용사업소(제10조제2항의 동의를 한 사업주의 사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동시에 사용된 자일 때에는 그자가 당해기금의 설립사업소 이외의 적용사업소에서 받은 보수월액을 전항에서 규정하는 표준보수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전2항에서 규정하는 보수의 범위 및 월액의 산정방법, 표준보수의 기준 및 표준보수의 결정과 개정방법은 정령으로 정한다.

④설립사업소의 사업주는 가입원의 보수월액에 관한 사항을 기금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기금은 표준보수의 결정 또는 개정을 행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설립사업소의 사업주는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 신속히 이를 당해 통지에 관계되는 가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당해 기금의 설립사업소이외의 적용사업소의 사업주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수월액에 관한 사항을 동항의 기금에 신고하여야 한다.

第130條 (基金의 業務) ①基金은 第106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입원 또는 가입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年金給與의支給을 행한다.

②基金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원 혹은 가입원이었던자의 死亡 또는 가입원의 脫退에 관하여 一時金給與의支給을 행할 수 있다.

③基金은 가입원 또는 가입원이었던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다.

④基金은 후생장관의 認可를 받아 업무의 일부를 信託會社(신탁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生命保險會社, 厚生年金基金聯合會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연금계리에 관한 업무는 厚生年金基金聯合會에 위탁할 수 없다.

第130條의2 (年金給與等積立金의 管理·運用에 관한 契約의 締結) ①基金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회사 또는 생명보험회사와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에 요하는 비용에 관하여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基金은,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에 충당하여야 할 적립금(이하 “年金給與等積立金”이라 한다)의 운용에 있어서 전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이외의 방법에 의할 것을 적정하

게 취급하는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정령으로 정하기에 적합하다는 취지의 후생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에 요하는 비용에 관하여 당해 인정이 있었던 날 이후에 당해 基金이 징수한 부금액의 누적액 및 당해 누적액의 운용수입 기타 정령이 정하는 수입액의 합계액에서 급여비용의 일부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지출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액(당해액이 연금급여등적립금 총액의 3분의 1 상당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당해 3분의 1 상당액. 이하 이條에서 단순히 “누적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회사 혹은 생명보험회사와 신탁·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투자자문업자(유가증권투자자문업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1986년 법률第74호) 第2條第3項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投資一任契約(동법 第2條第4項에서 규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③基金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당해 투자일임계약의 누적액에 대하여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회사와 운용방법을 특정하는 金錢信託契約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생장관의 인정을 받은 基金중 연금급여등적립금의 총액이 500억엔 이상인 基金이며 또 당해 연금급여등적립금의 管理·運用의 體制에 대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내용의 후생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은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에 요하는 비용의 누적액에 대하여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2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금융기관 혹은 증권회사로서 정령이 정하는 것(이하 “金融機關等”이라 한다)과 다음 각호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운용방법을 특정하는 금전신탁계약(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유가증권으로서 정령이 정하는 것의 구입에 의하여 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2. 전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구입에 관한 계약
3. 예금 또는 저금의 예입에 관한 계약

⑤基金은 전항제2호의 유가증권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당해 계약의 상대방인 금융기관과 당해 유가증권의 보관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또는 투자자문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30條의3 (年金計理) 基金은 적정한 연금계리에 의거하여 그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第131條 (年金給與의 基準) ①基金이 지급하는 연금급여는 적어도 당해 基金의 가입원 또는 가입원이었던 자가 老齡厚生年金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그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자에게 基金이 지급하는 연금급여는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소멸이유 이외의 이유로 그 수급권을 소멸시켜서는 아니된다.

※ 노령후생연금 제42조<sup>6)</sup>

第132條 ①基金이 지급하는 연금급여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원의 표준보수 및 가입원기간에 의거하여 그 금액이 산정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基金이 지급하는 연금급여로서 노령후생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노령후생연금액의 계산기초가 되었던 피보험기간 중 동시에 당해 基金의 가입원기간(이하 이항에서 “가입원인 피보험자이었던 기간”이라 한다)의 평균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7.5의 상당액에 가입원인 피보험기간에 관한 피보험자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基金은 지급하는 연금급여의 수준이 전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2.7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상당하는 수준에 달하도록 노력한다.

第133條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자에게 基金이 지급하는 연금급여는, 당해 노령후생연금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연금급여의 금액 중 전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제한이 없다.

※ 노령후생연금의 지급정지 제46조<sup>7)</sup>

第134條 (裁定) 基金이 지급하는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가지는 자의 청구에 의거하여 基金이 재정한다.

第135條 (年金給與의 支拂期月)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자에게 基金이 지급하는 연금급여의 지불기월에 대하여는 당해 노령후생연금의 지불기월의 예에 의한다. 다만, 연금급여의 금액이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달하지 않는 경우의 지불기월에 대하여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불기월 제36조<sup>8)</sup>

6) 제42조(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자) 노령후생연금은 피보험자기간을 가지는 자가 65세에 달한 때에 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그자의 보험료납부기간과 보험료면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5년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46조(지급정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액이 가산된 노령후생연금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에 대하여 가산이 행해지고 있는 배우자가 노령후생연금, 장해후생연금,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기초연금, 공제조합이 지급하는 연금급여 기타 연금급여중 노령 혹은 퇴직 또는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급여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의 지급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그 기간동안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에게 가산하는 액에 상당한 부분의 지급을 정지한다.

8) 제36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기월) ①연금의 지급은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하고, 권리가 소멸한 달에 종료한다.

②연금은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

第136條 (準用規定) 제37조, 제40조, 제40조의2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은 基金이 지급하는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에 대하여, 제36조제1항과 동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전단의 규정은 基金이 지급하는 연금급여에 대하여, 제41조제2항의 규정은 사망을 지급이유로 하는 일시금급여(이하 “死亡一時金”이라 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0조중 “수급권자”는 “수급권을 가지는 자”로, 동조중 “정부”와 제40조의2중 “사회보험청장관”은 “基金”으로, 제41조제1항중 “노령후생연금”은 “基金이 지급하는 연금급여 또는 탈퇴를 지급이유로 하는 일시금급여”로 각각 대체한다.<sup>9)</sup>

---

한 달까지의 기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연금은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및 12월의 6기에 각각 전월분까지를 지급한다. 다만 전지불기월에 지급하여야 한 연금 또는 권리가 소멸한 때 혹은 연금지급을 정지한 경우에 그 기의 연금은 지불기월이 아닌 월에 있어서도 지불한 것으로 한다.

9) 제37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그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자의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그자의 사망당시에 그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그 미지급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한 자가 유족후생연금의 수급권자인 처인 때에는 그자의 사망당시에 그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子로서 그자의 사망에 의하여 유족후생연금의 지급정지가 해제된 자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子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서 사망한 수급권자가 사망전에 그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때에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그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④미지급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순위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순위에 의한다.

⑤미지급보험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1인이 한 청구는 전원을 위하여 그 전액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보고, 그 1인에 대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손해배상청구권) ①정부는 사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가액의 한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당해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정부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0조의2(부당이득의 징수)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사회보험청장관은 수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1조(수급권의 보호 및 공과의금지) ①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담보제공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연금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별도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하는 경우 및 노령후생연금을 받을 권리를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세 기타 공과는 보험급여로서 지급받은 금전을 표준으로 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노령후생연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권리의 소멸 제45조<sup>10)</sup>

第136條의2 (年金給與積立金등의 積立) 基金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급여등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第136條의3 (年金給與等積立金 및 資金의 運用等) ①연금급여등적립금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②基金업무상의 여유금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목적 및 자금의 성질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③基金의 사업연도 기타 그 재정에 관하여는 전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第137條 <삭제> (1985년 법률제34호)

第138條 (賦金) ①基金은基金이 지급하는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에 관한 사업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賦金을徵收한다.

②부금은 연금급여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각월에 대하여 징수한다.

③부금금액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원의 표준보수월액을 표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④제12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입원에 관한 부금금액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표준보수월액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에 대한 당해基金의 설립사업소에서 받은 보수월액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第139條 (賦金의 負擔 및 納付義務) ①가입원 및 가입원을 사용하는 설립사업소의 사업주는 각각 부금의 반액을 부담한다.

②基金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사업소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부금액의 부담비율을 증가할 수 있다.

③설립사업소의 사업주는 사용하는 가입원 및 자신이 부담하는 부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가입원이 동일한基金의 2이상의 설립사업소에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에, 각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부금액 및 부금의 납부의무에 대하여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140條 (徵收金) ①基金은, 제12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입원에 관한 연금급여의 지급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가입원에 관하여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당해 가입원의 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②당해 가입원 및 제12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당해基金의 설립사업소 이외의 적용사

---

10) 제45조(실권)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 소멸한다.

업소의 사업주(제10조제2항의 동의를 한 사업주를 포함한다)는 각각 전항의 징수금을 부담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징수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당해 基金의 설립사업소의 사업주이었던 경우에 당해 가입원에 관한 부금으로서 부담하게 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에 따라 각각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각각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사업주가 설립사업소의 사업주인 경우 -- 당해 가입원이 그 사업주의 사업소 또는 선박에 설립된 基金의 가입원이었던 경우에 그 자에 대하여 부금으로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

2. 당해 사업주가 설립사업소의 사업주가 아닌 경우 -- 당해 가입원이 가입원이 아니라 고 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하여 보험료로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에서 그 자에 대하여 보 험료로서 부담하는 금액을 공제한 액에 상당하는 금액

④당해 가입원은 제1항의 징수금액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액을 공제한 액을 부담한다.

⑤제1항의 징수금은 당해 가입원의 연금급여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가입원기간의 각월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한다.

⑥당해 가입원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당해 가입원 및 자신이 부담하는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⑦당해 가입원이 당해 基金의 2이상의 설립사업소 이외의 사업소 또는 선박에 동시에 사 용되는 경우에 각 사업주의 징수금의 납부의무에 대하여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141條 (準用規定) ①제83조,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은 賦金 및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徵收金에 대하여, 제86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은 賦金 기타 이절의 규정에 의한 徵收金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83조제2항 및 제3항, 제86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및 제87조제1항중 “사회보험청장관”과 제86조제6항중 “후생장관”은 “基金”으로, 제8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중 “보험료액”은 “부금 또는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금액”으로, 제87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중 “보험료”는 “부금 또는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으로 대체하며, 부금에 대하여는 제84조중 “피 보험자”는 “가입원”으로, 제85조제3호중 “피보험자가 사용되는 사업소”는 “설립사업 소”로, 동조제4호중 “선박”은 “설립사업소인 선박”으로,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 수금에 대하여는 제84조중의 “사업주”는 “당해基金의설립사업소 이외의 적용사업소의 사업주(제10조제2항의 동의를 한 사업주를 포함한다)”로, “피보험자”는 “당해基金의 설립사업소이외의 적용사업소에 사용되는 가입원인 피보험자”로, 제85조제3호중 “피 보험자가 사용되는 사업소”는 “설립사업소 이외의 사업소”로, 동조제4호중 “선박”은

“설립사업소 이외의 선박”으로 각각 대체한다.<sup>10)</sup>

②전항에서 준용하는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基金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市町村에 대하여 처분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市町村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그 처분에 착수하지 않거나 또는 90일 이내에 그 처분을 종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③基金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후생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142條 (合併) ①基金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정수의 4분의 3 이상으로 의결하고 후생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11) 제83조(보험료의 납부) ①매월의 보험료는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회보험청장관은 납입고지를 한 보험료액이 당해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액을 초과하는 것을 안 때에 또는 납부한 보험료액이 당해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액을 초과하는 것을 안 때에 그 초과부분에 관한 납입고지 또는 납부를 그 납입고지 또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의 기일에 납부될 보험료에 대하여 납기를 앞당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앞당겨 납입고지 또는 납부를 한 것으로 간주한 때에는 사회보장청장관은 그 내용을 당해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보험료의 납기전징수) 보험료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에는 납기전이라도 모두 징수할 수 있다.

1.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목 생략>

2. 법인인 납부의무자가 해산한 경우

3. 피보험자가 사용되는 사업소가 폐지된 경우

제86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보험료 기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체납한 자가 있을 때에 사회보험청장관은 기한을 지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④ <생략>

⑤사회보험청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거나 또는 납부의무자의 거주지 혹은 그자의 재산소재지의 시정촌에 대하여 그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⑥시정촌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시정촌세의 예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후생장관은 징수금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액을 당해 시정촌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88조(선취특권의 순위) 보험료 기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선취특권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의 것으로 한다.

제89조(징수에 관한 통칙) 보험료 기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은 이 법률에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합병에 의하여 基金을 설립함에는, 각 基金의 대의원회에서 임원 및 대의원중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규약을 만들고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基金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基金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基金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基金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基金의 가입원이었던 자의 당해 基金의 가입원기간은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基金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基金의 가입원기간으로 본다. 다만 厚生年金基金聯合會가 그 지금에 관한 의무를 승계하고 있는 연금급여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基金의 가입원이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43條 (分割) ① 基金이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정수의 4분의 3 이상으로 의결하고 후생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 基金의 분할은 설립사업소의 일부에 대하여 행할 수 없다.

③ 분할을 행하는 경우에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基金의 가입원이 될 피보험자 또는 분할후 존속하는 基金의 가입원인 피보험자의 수는 제110조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어야 한다.

④ 분할에 의하여 基金을 설립함에는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基金의 설립사업소가 될 적용사업소의 사업주가 규약을 만들고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⑤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基金은 분할에 의하여 소멸한 基金 또는 분할후 존속하는 基金의 권리의무의 일부를 승계한다.

⑥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권리의무의 한도는 분할의 의결과 동시에 의결하여 후생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⑦ 基金이 분할한 때,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基金에 연금급여의 지급에 관한 의무가 승계된 자의 분할에 의하여 소멸한 基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基金의 가입원기간은 당해의 무를 승계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基金의 가입원기간으로 본다. 다만, 厚生年金基金聯合會가 그 지금에 관한 의무를 승계하고 있는 연금급여의 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基金의 가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44條 (設立事業所의 増減) ① 基金이 설립사업소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킬 때에는 증가 또는 감소에 관계되는 적용사업소의 사업주의 전부 및 그 적용사업소에 사용되는 피보험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基金이 설립사업소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증가에 관계되는 적용사업소에 사용되는 피보험자의 3분의 1 이상으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전항의 동의 외에 당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증가 또는 감소에 관계되는 적용사업소가 2이상인 때에는 제1항의 피보험자의 동의 또는 전항의 동의는 각 적용사업소에 대하여 얻어야 한다.

④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認可의 신청이 있었던 사업소에서는 설립사업소의 증가에 관한 규약변경의 認可신청을 행한 경우에는 전3항중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로 될 자”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업소를 감소시키는 경우에, 基金의 가입원은 설립사업소를 감소시킨 후에도 제110조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어야 한다.

第145條 (解散) ① 基金은 다음의 이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대의원 정수의 4분의 3 이상에 의한 대의원회의 결의

2. 基金의 사업계속의 불능

3. 제1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

② 基金은 전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유에 의하여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후생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146條 (基金의 解散에 의한 年金給與등의 支給에 관한 義務의 消滅) 基金이 해산한 때에는 당해 基金의 가입원이었던 자에 관한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의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해산한 날까지 지급해야 할 연금급여 또는 일시금급여로서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의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47條 (清算) ① 기금이 제14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이사가 그 清算人이 된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후생장관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1.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을 때

2. 기금이 제1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

3. 청산인이 부적격하여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때

③ 전항의 경우에 청산인의 직무집행에 요하는 비용은 기금이 부담한다.

④ 해산한 기금의 잔여재산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한 날에 당해기금이 연금급여의 지급의무를 부담한 자(이하 “解散基金加入員”이라 한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⑤ 제121조의 규정은 기금의 청산인에 대하여, 민법 제73조 및 제78조 내지 제80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38조의 규정은 기금의 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 제138조제4호중 “법원”은 “후생장관”으로 대체한다.

⑥ 전 각항의 정함 이외에 해산한 기금의 청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第148條 ① 후생장관은 해산한 기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산사무의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요구하거나 또는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기금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혹은 실지에서 그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0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96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 및 검사에 대하여, 제100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③ 후생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질문 혹은 검사를 한 경우에, 청산사무가 법령, 규약 혹은 후생장관의 처분에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 청산사무가 현저하게 적정을 결한다고 인정할 때에 또는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산한 기금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청산사무에 관한 위반의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④ 해산한 기금 또는 청산인이 전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후생장관은 당해 기금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위반에 관계되는 청산인의 전부 혹은 일부의 개임을 명령하거나 또는 당해 위반에 관계되는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 ⑤ 후생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청산인에 대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전에 서면으로 변명의 일시, 장소 및 당해 처분의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第2節 厚生年金基金聯合會

第149條 (聯合會) ① 기금은 제16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도탈퇴자 및 해산기금가입원에 관한 연금급여의 지급을 공동으로 행하기 위하여 厚生年金基金聯合會(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전국을 통하여 하나로 한다.

第150條 (法人格) ①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연합회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第151條 (名稱) ① 연합회는 명칭중에 후생연금기금연합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가 아닌 자는 후생기금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52條 (設立認可등) ①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후생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認可신청은 5 이상의 기금이 공동으로 규약을 작성하여 기금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행한다.

③ 연합회는 설립認可를 받은 때에 성립한다.

④ 후생장관은 기금이 행하는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연합회에 가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제114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중 “기금의 설립認可신청을 한 적용사업소의 사업주”는 “연합회의 설립認可신청을 한 기금의 이사장”으로, “당해 적용사업소의 사업주”는 “당해 기금의 이사장”으로 대체한다.

第153條 (規約) ① 연합회는 규약을 작성하여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에 관한 사항
7.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8. 연금급여등적립금의 管理·運用 계약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사업연도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2.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13. 공고에 관한 사항
14. 기타 조직 및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② 제1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연합회의 규약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154條 (準用規定) 제116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155條 (評議員會) ① 연합회에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조직한다.

③ 평의원은 회원인 기금의 이사장이 호선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평의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평의원정수 3분의 1 이상의 자가 회의에 부의할 사항 및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평의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그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평의원회에 의장을 둔다.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⑦ 전각항에 정하는 것 이외에 평의원회의 소집, 의사절차 기타 평의원회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第156條 ① 다음 사항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변경
2. 매사업연도의 예산
3. 매사업연도의 사업보고 및 결산
4. 기타 규약이 정하는 사항

② 이사장은 평의원회가 성립하지 않을 때 또는 이사장이 평의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 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서 임시 긴급시행을 요하는

것을 처분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다음의 평의회에서 그것을 보고하고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평의원회는 감사에 대하여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감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보고를 청구할 수 있다.

第157條 (任員) ①연합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이사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평의원 이외의 자 중에서 평의원회가 선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이사 중 1인을 이사장으로 하고 이사중에서 호선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⑤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하더라도 후임의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의 기간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감사는 이사 또는 연합회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第158條 (任員의 職務等) ①이사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집행한다.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시장이 사전에 지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리하거나 또는 직무를 행한다.

②연합회의 업무는 규약에 별단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을 보좌하고 연금급여등적립금의 管理·運用에 관한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④감사는 연합회의 업무를 감사한다.

⑤감사는 감사결과에 의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장 또는 평의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제111조의 규정은 연합회의 임원 및 연합회에 사용되어 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158條의2 (理事의 義務 및 損害賠償責任) ①이사는 전조제3항에 규정하는 연합회의 업무에 대하여 법령, 법령에 기초하고 있는 후생장관의 처분, 규약 및 평의원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연합회를 위하여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이사가 전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연합회의 업무에 대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이사는 연합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第158條의3 (理事의 禁止行爲等) ①이사는 자기자신 또는 연합회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연금급여등적립금의 管理·運用의 적정을 해하는 것으로서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연합회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이사를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체시킬 수 있다.

第158條의4 (理事長의 代表權制限) 연합회와 이사장(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장의 직무를 대리하거나 또는 그 직무를 행하는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은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감사가 연합회를 대표한다.

第159條 (聯合會의 業務) ①聯合會는 제16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급여의 지급의무를 승계하고 있는 中途脫退者 및 解散基金加入員에게 年金給與를 支給하고 제160조의2제3항 및 제162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一時金給與를 支給한다.

②연합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厚生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1. 해산기금가입원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에 대하여 일정액이 확보되고자 하는 기금의 각출금등을 원자로 하여 연금급여의 금액을 부가하는 사업
2. 기금이 행하는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령이 정하는 것

③연합회는 기금의 가입원 및 가입원이었던 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設을 할 수 있다.

④연합회는 제1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받아 기금의 업무의 일부를 행할 수 있다.

⑤연합회는 후생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무의 일부를 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第159條의2 (年金給與等積立金의 管理·運用에 관한 契約의 締結) ①연합회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회사 또는 생명보험회사와 年金給與 및 一時金給與에 요하는 비용에 관하여 신탁 또는 보험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연합회는 연금급여등적립금의 운용에 있어서 전항에 규정하는 계약 이외의 방법에 의할 것을 적정하게 취급하는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정령으로 정하기에 적합하다는 취지의 후생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에 요하는 비용에 관하여 당해 인정이 있었던 날 이후에 연합회가 이 법률에 기초하여 기금 또는 해산기금으로부터 교부 받거나 또는 징수한 액의 누적액 및 당해 누적액의 운용수입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수입액의 합계액에서 급여비용의 일부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지출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액(당해액이 연금급여등적립금 총액의 3분의 1 상당액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3분의 1상당액. 이하 이조에서 단순히 "누적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회사 혹은 생명보험회사와 신탁·보험계약을 체결

하거나 또는 투자자문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연합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당해 투자일임계약의 누적액에 대하여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회사와 운용방법을 특정하는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연합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생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연금급여등적립금의 관리·운용의 체제에 대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내용의 후생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에 요하는 비용의 누적액에 대하여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2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금융기관등과 다음 각호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운용방법을 특정하는 金錢信託契約(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유가증권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의 구입에 의하여 운용하는 것에 한한다)

2. 전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구입에 관한 계약

3. 예금 또는 저금의 예입에 관한 계약

⑤연합회는 전항제2호의 유가증권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당해 계약상 대방인 금융기관등과 당해 유가증권의 보관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제130조의2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159條의3 (年金計理) 연합회는 적정한 연금계리에 의거하여 그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第160條 (中途脫退者에 關聯한 措置) ①基金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신청함으로써 中途脫退者(당해 기금의 가입원자격을 상실한 자(당해 가입원자격을 상실한 날에 당해 기금이 지급하는 연금급여의 수급권을 가지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그자의 당해 기금의 가입원기간이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당해 기금의 가입원기간에 관한 연금급여의 지급의무를 이전할 수 있다.

②연합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의 이전의 신청이 있었던 때에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의 이전을 행하는 경우에 기금은 연합회에 대하여 당해 중도탈퇴자의 가입원기간에 관한 연금급여의 현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현가상당액”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할 현가상당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정령으로 정한다.

⑤연합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가상당액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연금급여의 지급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⑥연합회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탈퇴자에 관한 연금급여의 지급의무를 승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중도탈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연합회는 중도탈퇴자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동항의 통지에 대신하여 통지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第160條의2 ①基金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과 관련한 중도탈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탈퇴를 지급이유로 하는 제130조제2항의 一時金給與(이하 “脫退一時金”이라 한다)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脫退一時金相當額”이라 한다)의 교부를 연합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기금은 당해 중도탈퇴자에 관한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가상당액을 교부할 때에 당해 신청과 관련한 탈퇴일시금상당액을 연합회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연합회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일시금상당액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당해 교부금을 원자로 하여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중도탈퇴자에 관한 연금급여액을 가산하거나 또는 사망일시금 기타 일시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④기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일시금상당액을 교부한 때에는, 당해 중도탈퇴자에 관한 탈퇴일시금의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⑤연합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탈퇴자에 관한 연금급여액을 가산하거나 또는 일시금급여를 지급하게 된 때에는 전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아울러 그 내용을 당해 중도탈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전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동조제7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161條 ①연합회가 제16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급여의 지급의무를 승계하고 있는 중도탈퇴자가 다시 원래 기금의 가입원이 된 때에, 당해 기금은 당해 중도탈퇴자에 관한 당해 연금급여의 지급의무(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가 당해 연금급여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어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산된 금액의 염금급여의 지급의무로 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가 일시금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일시금급여의 지급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당해 기금은 연합회에 대하여 당해 중도탈퇴자에 관한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의 현가상당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현가상당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정령으로 정한다.

第162條 ①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탈퇴자에 관한 연금급여의 지급의무를 연합회에 이전한 기금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이 있은 경우에 당해 중도탈퇴자가 당해 합병 또는 분할이 있었던 기금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기금의 가입원이었던 때에는 전조제1항중 “다시 원래 기금”은 “합병 또는 분할이 있었던 기금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기금”으로 대체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42조제4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第162條의2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된 금액의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의 지급의무를 승계한 기금의 당해 의무의 승계에 관계되는가입원에 대하여 제160조 내지 전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제160조제1항 및 제3항중 “에 관한 연금급여”는 “에 관한 다음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가산된 연금급여 및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급여”로, 동조제5항 및 제6항중 “연금급여”는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로, 제160조의2제3항중 “일시금급여를 지급하는”은 “일시금급여액을 가산하는”으로, 동조제5항중 “의 액을 가산하거나 또는 일시금급여를 지급하는”은 “또는 일시금급여액을 가산하는”으로, 제161조제1항 및 전조제1항중 “연금급여”는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로 한다.

第162條의3 (解散基金加入員에 關한 措置) ① 연합회는 기금이 해산한 때에 해산기금가입원에 관한 제85조의2에서 규정하는 책임준비금 상당액을 당해 해산기금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해산기금가입원이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또는 기금이 해산한 날에 당해 기금에 관계되는 해산기금가입원이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을 가지고 있던 때에, 연합회는 당해 해산기금가입원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전항의 연금급여의 액은 당해 노령후생연금의 액의 계산기초가 된 피보험기간 중 동시에 당해 해산한 기금의 가입원기간에 관한 제132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해산기금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기금가입원에게 분배되어야 할 잔여재산의 교부를 연합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⑤ 연합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해산기금가입원에게 분배되어야 할 잔여재산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해산기금가입원에 관한 연금급여액을 가산하거나 또는 사망일시금 기타 일시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⑥ 연합회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잔여재산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제147조제4항의 규정에 대하여는 당해 잔여재산은 당해 해산기금가입원에게 분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⑦ 연합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기금가입원에 관한 연금급여액을 가산하거나 또는 일시금급여를 지급하게 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해산기금가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60조제2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동조제7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163條 (裁定) 제159조제1항의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를 받을 권리 있는 그 권리를 가지는 자의 청구에 의거하여 연합회가 裁定한다.

第163條의2 (年金給與의 支給停止) 연합회가 제16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

는 연금급여는 당해 해산기금가입원이 수급권을 가지는 노령후생연금에 대하여 제38조 제1항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되고 있는 때에 그 기간은 지급을 정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금급여중 제162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64條 (準用規定) ①제37조, 제40조, 제40조의2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은 연합회가 지급하는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에 대하여, 제36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39조제2항전단 및 제45조의 규정은 연합회가 제16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연금급여에 대하여, 제41조제2항의 규정은 사망일시금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35조중 “(제44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액을 제외한다) 또는 당해 가산하는 액”은 “(제162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된 액을 제외한다)”로,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0조 및 제45조중 “수급권자”는 “수급권을 가지는 자”로, 제40조중 “정부” 및 제40조의2중 “사회보험청장관”은 “연합회”로, 제41조제1항 및 제45조중 “노령후생연금”은 “연합회가 지급하는 연금급여”로 각각 대체한다.

②제86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의2의 규정 및 제162조의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86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및 제87조제1항중 “사회보험청장관”과 제86조제6항중 “후생장관”은 “연합회”로 대체한다.

③제136조의2 및 제136조의3의 규정은 연합회의 연금급여등적립금의 적립 및 그 운용, 업무상의 여유금의 운용 및 사업연도 기타 그 재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165條 <삭제> (1985년 법 제34호)

第166條 (解散) ①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로 해산한다.

1. 평의원정수의 4분의 3이상에 의한 평의원회의 의결
2. 제1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

②연합회는 전항제1호의 이유에 의하여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후생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第167條 (聯合會의 解散에 의한 年金給與등의 支給義務의 消滅)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중도탈퇴자 및 해산기금가입원에 관한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의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해산한 날까지에 지급하여야 하였던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로서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의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68條 (清算) ①연합회가 제16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이사가 그 청산인이 된다. 다만 평의원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연합회가 제16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후생장관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③제147조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제3항,제5항 및 제6항 및 제148조의 규정은 연합회의 청산에 대하여 준용한다.

### 第3節 雜 則

第169條 (不服申請) 표준보수 혹은 연금급여 혹은 일시금급여에 관한 처분 또는 부금 기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 혹은 징수처분 혹은 제141조제1항 및 제164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91조의3중 “제90조제1항 또는 제91조”는 “제169조에서 준용하는 제90조제1항 또는 제91조”로 대체한다.

第170條 (時效) ①부금 기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그 환불을 받을 권리는 2년을 경과한 때에,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을 경과한 때에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연금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당해 연금의 전액이 지급정지되어 있는 기간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③부금 기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납입고지 또는 제141조제1항 및 제16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督促은 민법 제1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

第171條 (期間의 計算) 이 장 또는 이 장의 규정에 의거한 명령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장에서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172條 (戶籍事項의 無料證明) 市町村長은 기금,연합회 또는 연금급여 혹은 일시금급여의 수급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당해 市町村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원,가입원이었던 자 또는 연금급여 혹은 일시금급여의 수급권을 가지는 자의 호적에 관하여 무료로 증명을 행할 수 있다.

第173條 (書類等의 提出) 기금 또는 연합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금급여 또는 일시금급여의 수급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장해상태에 관한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第174條 (準用規定) 제98조제1항의 규정은 설립사업소의 사업주에 대하여, 동조제2항의 규정은 가입원에 대하여, 동조제3항의 규정은 연금급여 또는 일시금급여의 수급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은 이들 급여의 수급권을 가지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경우에 동조제1항중 “제27조”는 “제128조”로, 제98조제1항 및 제2항 중 “都道府縣知事”는 “기금”으로, 동조중 “사업주”는 “설립사업소의 사업주”로,

동조제3항 및 제4항중의 “사회보험청장관”은 “기금 또는 연합회”로 대체한다.<sup>12)</sup>  
第175條〈삭제〉(1989년 법 제86호)

第176條(契約締結의 申告) 기금 또는 연합회는 제130조의2제1항 내지 제5항 또는 제159조의2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후생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후생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계약조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第176條의2(年金計理關係書類의 年金計理人에 의한 確認等) 이 법률에 기초하여 기금(제111조제1항 혹은 제143조제4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합병에 의하여 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설립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연합회가 후생장관에게 제출하는 연금계리업무에 관한 서류로서 후생성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서류가 적정한 연금계리에 기초하여 작성되고 있다는 것을 연금계리인(연금계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험지식을 가지는 자로서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이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第177條(報告書의 提出) 기금 또는 연합회는 후생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후생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178條(報告의 要求等) ①후생장관은 기금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기금 혹은 연합회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혹은 실지에서 그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0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96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 및 검사에 대하여, 제100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179條(基金에 대한 監督) ①후생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질문 혹은 검사를 한 경우에 기금 또는 연합회의 사업의 관리 혹은 집행이 법령, 규약 혹은 후생장관의 처분에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 기금 혹은 연합회의 사업의 관리 혹은 집행이 현저하게 적정성을 결한다고 인정할 때 또는 기금 혹은 연합회의 임원이 그

12) 제98조(신고등) ①사업주는 후생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후생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도도부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피보험자는 후생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도도부현지사에게 신청하거나 또는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수급권자는 후생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험청장관에 대하여 후생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고 후생성령이 정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의 규정에 의한 사망신고의무자가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사회보험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의 관리 혹은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기금 혹은 연합회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그 사업의 관리 혹은 집행에 대하여 위반의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내용을 명할 수 있다.

② 후생장관은 기금 또는 연합회의 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기간을 정하여 당해 기금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기금 혹은 연합회 혹은 그 임원이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기금 혹은 연합회가 전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후생장관은 당해 기금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위반에 관계되는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④ 기금 또는 연합회가 전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후생장관은 동항의 명령에 관계되는 임원을 개임할 수 있다.

⑤ 기금 또는 연합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그 사업의 상황에 의하여 그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후생장관은 당해 기금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48조제5항의 규정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48조제5항중 “당해 청산인”은 “당해 기금 또는 연합회의 임원”으로 대체한다.

第180條 (權限의 委任) 이 장의 규정에 의한 후생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都道府縣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181條 (實施規定)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실시를 위한 절차 기타 집행에 필요한 세칙은 후생성령으로 정한다.

#### 第4節 罰則

第182條 ① 설립사업소의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2. 제12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3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독촉장에서 지정하는 기한까지 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제12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설립사업소 이외의 적용사업소의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9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때

2. 제140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독촉장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해산한 기금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징수금을 독촉장에서 지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마찬가지이다.

第183條 ①제178조 또는 제148조제1항(제16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또는 이들 규정에 의한 당해 직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혹은 이들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혹은 기피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2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은 자도 전항과 마찬가지이다.

第184條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사람의 대리인, 피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전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며 동시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第185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기금 또는 연합회의 임원, 대리인 혹은 피용자 기타 종업원 또는 청산인은 10만엔 이하의 科料에 처한다.

1. 제115조제3항(제15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148조제3항(제16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제17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때
4. 제1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연합회가 행하게 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행한 때

第186條 기금 또는 연합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1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1. 제116조(제1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고를 해태하거나 또는 허위의 공고를 한 때
2. 제160조제6항, 제160조의2제5항 또는 제162조의3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60조제7항(제160조의2제6항 및 제162조의3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고를 해태하거나 또는 허위의 공고를 한 때
4. 제17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때

第187條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1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 설립사업소의 사업주가 제1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때
- 설립사업소의 사업주가 제174조에서 준용하는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때
- 가입원이 제174조에서 준용하는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또는 신청을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신청을 한 때
- 호적법의 규정에 의한 사망신고의무자가 제174조에서 준용하는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第188條 제109조제2항 또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생연금기금이라는 명칭 또는 후생연금기금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 附 則 (1954년 5월 19일 법률제115호)

第1條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1954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第4條의3 (高齡任意加入被保險者) ①적용사업소에 사용되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노령후생연금,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기초연금 기타 노령 또는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는 연금급여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가지지 않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하여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 ②~⑨ <생략>

第4條의4 (高齡任意加入被保險者의 基金加入) ①적용사업소에 사용되는 피보험자중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로서 그자에게 관계되는 보험료의 부담 및 납부에 대하여 동조제7항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의 동의가 없는 자는 제110조, 제111조 및 제144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②기금의 설립사업소에 사용되는 피보험자중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로서 그자에게 관계되는 보험료의 부담 및 납부에 대하여 동조제7항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의 동의가 없는 자는 제1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금의 가입원으로 하지 않는다.

③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동조제7항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의 동의가 있는 자에 한한다)인 가입원은 당해 사업주의 동의가 있는 날 또는 그 사용되는 사업소가 설립사업소가 된 날 중 나중의 날에 가입원자격을 취득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원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124조제1호 내지 제4호 혹은 전조제5항제2호 혹은 제3호의 하나에 해당되게 된 날 또는 동조제7항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의 철회된 날의 다음날(그 사실이 있었던 날에 다시 전항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그날)에 가입원자격을 상실한다.

第13條 ①기금이 지급하는 연금급여는 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당해 기금의 가입원 또는 가입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가입원 또는 가입원이었던 자가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다만 가입원이 자격을 취득한 달에 당해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를 제외한다.

2.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자로서 당해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달 이후에 가입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있어서 그 연금액이 부칙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개정된 때. 다만 가입원자격을 취득한 달 또는 그 다음달부터 개정된 때를 제외한다.

②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자에게 기금이 지급하는 연금급여는 당해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의 소멸이유(당해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자가 65세에 달한 때를 제외한다) 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그 수급권을 소멸시켜서는 아니된다.

③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자에게 기금이 지급하는 연금급여에 대하여, 제133조중 “규정하는 액”은 “규정하는 액(당해 노령후생연금이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고 있을 때에는 전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액으로부터 당해액에 대하여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에 그 지급이 정지된 부분의 액을 공제하여 얻은 금액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

#### 附 則 (1965년 6월 1일 법률제104호)

第21條 (名稱의 使用制限에 관한 經過措置) 부칙 제1조단서에 게기하는 규정의 시행일 현재 후생연금기금 또는 후생연금기금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률에 의한 개정후의 후생연금보험법 제109조제2항 및 제151조제2항의 규정은 동일 이후 6개월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第22條 (基金의 認可申請節次에 관한 經過措置) 사업주는 부칙 제1조단서에 게기하는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도 규약의 작성, 설립인가의 신청 기타 후생연금기금의 설립에 필요 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 附 則 (1990년 6월 22일 법률제40호)

이 법률의 규정은 1990年 8月 1日 또는 1990年 10月 1일부터 시행한다.

## 2. 厚生年金基金令<sup>13)</sup>

### 第1章 厚生年金基金

#### 第1節 設立

第1條 (設立에 필요한 被保險者數) 厚生年金保險法(이하 “法”이라 한다.)第110條第1項에서 규정하는 政令으로 정하는 數는 500인으로 한다.

#### 第2節 管理

第2條 (規約의 變更) 법 제11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115조제1항제2호에 게기하는 사항의 변경(사무소의 개설 또는 폐지에 관계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115조제1항제3호에 게기하는 사항의 변경(厚生年金基金의 설립에 관계되는 적용사업소의 증가 또는 감소에 관계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115조제1항제14호에 게기하는 사항의 변경
4. 기타 후생장관이 정하는 사항

第3條 (設立의 公告) 厚生年金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이 설립된 때에는 4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基金의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이사장의 성명 및 주소
4. 설립사무소(基金이 설립된 적용사업소, 이하 같다)의 명칭 및 소재지
5. 설립認可 연월일

第4條 (變更의 公告) 基金은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3) 제정 1996.9.27.政令제324호, 개정 1969.12.6.政令제282호, 1971.8.2.政令제262호, 1973.10.13.政令제308호, 1976.7.27.政令제202호, 최근개정 1993년 7월 28일 政令제256호.

第5條 (合併 또는 分割의 公告) ①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基金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 아울러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基金 또는 분할전의 基金의 명칭 및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합병 또는 분합후 존속하는 基金은 전조에 의한 공고와 아울러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합병 또는 분합의 認可연월일

2.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基金 또는 분합에 의하여 설립된 基金의 명칭 및 소재지

第6條 (公告方法) 전3조에 의한 공고는 官報에 게재하고 아울러 각사무소의 揭示板에 揭示하여야 한다.

第7條 (代議員會의 召集) ①이사장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사업연도 1회 通常代議員會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臨時代議員會를 소집할 수 있다.

第8條 (代議員會의 召集節次) 대의원회의 소집은, 긴급한 시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회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전 5일째에 해당하는 날이 종료할 때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 일시 및 장소를 적시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第9條 (定足數) 대의원회는 대의원정수(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의원의 수를 제외한다)의 반수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議事를 개시하거나 議決할 수 없다.

第10條 (대의원회의 의사) ①대의원회의 의사에는 법 및 이 정령에 별단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規約變更(제2조 각호 사항을 제외한다)의 議事는 대의원정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 결정한다.

③代議員會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이 同意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1條 (代議員의 除斥) 대의원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의 議事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대의원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第12條 (代理) ①대의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이 아니면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

③대리인은 5인 이상의 대의원을 대리할 수 없다.

④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13條 (會議錄) ①대의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대의원의 성명 및

의사경과의 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장 및 대의원회가 정하는 2인 이상의 대의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基金은 회의록을 基金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가입원 및 가입원이었던 자는 基金에 대하여 전항의 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基金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4條 (加入員原簿의 備置) ① 基金은 후생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한 加入員原簿를 基金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입원 또는 가입원이었던 자는 基金에 대하여 전항의 원부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또는 당해 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基金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의 청구 또는 조회의 회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3節 加入員

第15條 (基金의 法定選擇) 법 제126조제1항이 규정하는 자로서 동항의 선택을 하지 않은 자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금은 다음과 같다.

1. 2이상의 기금설립사업소에 사용된 날에 각 기금에 대하여 각각 다른 기금의 설립사업소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은 자로서 그자의 보수월액을 산정한 경우에 그것들의 보수월액이 다른 때에는 가장 높은 보수월액에 관계되는 기금
2. 각 기금에 대하여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이 같은 경우에는 그자가 2이상의 각 기금의 설립사업소에 사용된 날 이전부터 그 하나의 기금의 가입원일 때에는 당해 기금
3. 각 기금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이 같은 경우에는 그자가 2이상의 각 기금의 설립사업소에 각각 사용된 날이 동일일 때에는 都道府縣지사(각 기금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都道府縣의 구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후생장관)가 지정하는 기금

第16條 (報酬의 範圍) 표준보수의 기초가 되는 보수의 범위는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보수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sup>14)</sup>

다만 후생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7條 (標準報酬의 基準) ① 표준보수의 기준은, 月額이 515,000엔 미만의 보수에 대하

14) 法 第3條(定義)제1항제3호 “報酬” — 임금, 급료, 봉급, 수당, 상여금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받는 모든 것을 말한다. 다만 일시로 받은 것 및 3월을 초과하는 기간 단위로 받는 것을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는 법 제20조의 表와 같이 하고, 월액이 515,000엔 이상인 보수에 대하여는 보수월액이 30,000엔 또는 그 단수의 증가단위로 표준보수의 등급을 1등급씩 누진하고, 각 등급의 표준보수월액은 각각 당해 등급에 속하는 보수월액의 최저한에 150,000엔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기금은 표준보수의 등급에 관하여 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제30등급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최고등급의 표준보수월액에 대응하는 보수월액에 대하여는 최고한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전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기금은 후생장관의 승인을 받아 표준보수월액의 구분 및 이에 대응하는 보수월액의 구분에 대하여 별단의 정함을 할 수 있다. 다만 최저등급의 표준보수월액은 80,000엔으로 하여야 하며, 최고등급의 표준보수월액은 530,000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第18條 (報酬月額의 산정방법 및 표준보수의 결정 및 개정의 방법) 보수월액의 산정방법 및 표준보수의 결정 및 개정의 방법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의 예에 의한다. 다만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보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의 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준보수의 기초가 되는 보수의 범위에 포함시킨 기금은, 그 예에 의한 것으로 되는 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생장관의 승인을 받아 표준보수의 결정 및 개정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第4節 紿與 및 業務의 委託

第19條 (差別的 取扱의 禁止) 기금이 지급하는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는 가입원 혹은 가입원이었던 자 또는 이들의 유족 중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을 행하는 것 이어서는 아니된다.

第20條 (年金給與額의 산정기초가 되는 가입원기간) ①연금급여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가입원기간의 계산은 月에 의하며 加入員資格을 취득한 月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月의 前月까지를 이에 산입하는 것으로 한다.

②가입원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원래 기금의 가입원자격을 취득한 자의 年金給與額의 산정기초가 되는 가입원기간은 당해 기금 전후의 가입원이었던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第21條 가입원자격을 상실한 후 그자가 당해 자격을 상실하기 전에 사용되었던 적용사업소에 관한 기금의 합병 또는 분할이 있었던 경우에 그자가 당해 적용사업소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기금의 가입원이 된 때에는, 전조 제2항중 “다시 원래기금”은 “합병

또는 분할이 있었던 기금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기금”으로, “당해기금”은 “이들 기금”으로 대체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22條 (基準標準報酬月額) 연금급여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표준보수월액(이하 “基準標準報酬月額”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가입원기간이 1월인 때에는 당해 가입원자격을 취득한 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

1. 가입원이었던 전기간의 평균표준보수월액(가입원기간의 계산기초가 되는 각월의 표준보수월액을 평균한 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2. 일정기간 계속한 가입원기간의 평균표준보수월액
3. 연금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그 월에 당해 기금의 가입원이었던 자에 있어서는 가입원이 아니게 된 달의 전월로 한다)의 표준보수월액

第23條 (年金給與額의 산정방법) 연금급여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가입원의 기준표준보수월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가입원기간의 월수를 곱하는 방법
2. 전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입원의 기준표준보수월액 및 가입원기간을 사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3. 제1호 또는 전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금액에 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방법

第24條 (過去勤務期間) 기금은 후생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금의 가입원의 기금설립전의 기간중 당해 기금이 설립되어 있었다면 그자가 가입원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기간 기타 이에 준하는 기간을 연금급여액의 산정기초로 사용할 수 있다.

第25條 (一時金給與) 일시금급여는 다음 조 및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아울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한다.

- 第26條 (死亡을 지급이유로 하는 일시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
- ① 사망을 지급이유로 하는 일시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加入員 또는 加入員이었던 者의 遺族으로 한다.
  - ② 전항의 유족은 사망한 자의 配偶者(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子, 父母, 孫, 祖父母 또는 兄弟姊妹로서 그자의 사망당시 그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로 한다.
  - ③ 사망을 지급이유로 하는 일시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遺族의 順位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 ④ 사망을 지급이유로 하는 일시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일 때에 1인이 한 청구는 전원을 위하여 전액에 대하여 한 것으로 간주하고, 1인에 대하여 한 지급

은 전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第27條 (年賦拂支給) 일시금급여는 당해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가 희망할 때에는 年賦拂로 지급할 수 있다.

第28條 (支拂期月의 특례) 법 제135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9만 엔으로 하고, 연금급여액이 이 액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연금급여의 지불기월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당해 연금급여액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월로 한다.

1. 6만엔 이상 9만엔 미만 : 2월, 6월 및 10월 또는 4월, 8월 및 12월
2. 3만엔 이상 6만엔 미만 : 6월 및 12월
3. 3만엔 미만 : 2월, 4월, 6월, 8월, 10월 또는 12월

第29條 (基金이 業務의 일부를 委託시킬 수 있는 法人) ①법 제130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은 다음에 게기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후생장관이 지정한 법인(이하 “指定法人”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연금계리업무를 법 제176조의2에서 규정하는 연금계리인이 실시하는 것일 것.
  2. 전호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기금으로부터 위탁되는 급여 및 부금등에 관한 업무 (이하 “受託業務”라 한다)를 적정하고 확실히 행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충분한 사회적 신용을 가질 것.
  3. 수탁업무를 장기에 걸쳐 확실히 행함에 충분한 경리적 기초를 가질 것.
- ②후생장관은 지정법인이 전항 각호의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동 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후생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한 때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한다.

## 第5節 契約

第30條 (信託 또는 保險의 契約) ①법 제1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信託契約은 그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기금이 지급하는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金錢信託(운용방법을 특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基金이 자기를 受益者로 하는 것일 것.
2. 당해 기금의 매사업연도의 말일에, 信託會社(신탁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금액의 합계액을 하회하지 않는 금액을 지불준비금으로 보유하는 것일 것.

- 가. 당해 기금에 지불하여야 할 지불금으로서 아직 지불하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나. 당해 기금이 연금급여 또는 일시금급여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이유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내용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기금에 해당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기에 충분한 금액
- 다. 연금급여 또는 일시금급여에 관하여 불복신청 또는 소송의 제기가 행해졌다는 내용이 당해 기금으로부터 통지된 때에는 다투어지고 있는 금액에 대응하는 금액
3. 기금이 당해계약을 해제하거나 혹은 신탁회사가 수탁자를 사임하거나 또는 당해 계약에 관한 신탁이 종료하거나 혹은 신탁회사가 임무를 종료한 때에는 신탁회사가 당해 계약에 관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정산하고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신속히 기금에 보고함과 동시에 당해 계약에 관한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당해 기금에 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일 것.
4. 전각호에 정하는 것 이외에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일 것.
- ②법 제1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保險契約은 그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 이어야 한다.
1. 기금이 지급하는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기금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것일 것.
  2. 당해 계약에 의거하여 기금이 받아야 할 배당금 또는 분배금은 후생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금으로부터 보험료로서 직접 수입되는 것일 것.
  3. 당해 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생명보험회사가 다음 가문 내지 라문에서 규정하는 액의 합계액에서 마문 및 바문에서 규정하는 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기금에 반환하는 것일 것.
- 가. 당해 계약이 종료한 날(이하 이항에서 “종료일”이라 한다)까지 당해 계약에 기초하여 기금으로부터 불입된 보험료에 대하여 연리4푼5리의 복리에 의하여 계산한 그 원리합계액의 총액으로부터 종료일까지 당해 계약에 기초하여 당해 계약에 관계되는 자산의 일부를 다른 자산과 분리하여 운용하기 위하여 당해 계약에 기초하여 설치하는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 이외의 계정으로부터 특별계정에 편입된 금액에 대하여 연리4푼5리의 복리에 의하여 계산한 그 원리합계액의 총액을 공제한 액
- 나. 종료일전에 당해 계약에 기초하여 특별계정으로부터 특별계정 이외의 계정에 편입된 금액에 대하여 연리4푼5리의 복리에 의하여 계산한 그 원리합계액의 총액
- 다. 당해 계약에 기초하여 기금에 지불되어야 할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아직 지불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라. 당해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당해 종료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당해 계약에 관계되는 자산(특별계정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운용수익의 총액으로부터 당해 자산을 연리4푼5리로 운용한 것으로 한 경우의 운용수익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

마. 종료일까지 당해 계약에 기초하여 기금에 지불한 보험금에 대하여 연리4푼5리의 복리에 의하여 계산한 그 원리합계액의 총액

바. 당해 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에 당해 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당해 계약에 기초한 사무관리에 요한 비용의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

4. 계약의 해제는 장래에 향하여서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일 것.

5. 전각호에 정하는 것 이외에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것.

第30條의2 (法 第130條의2第2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基金) 법 제130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設立認可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8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고 있는 것일 것.

2. 법 제13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금의 업무(이하 “管理運用業務”라 한다)를 집행하는 이사를 두고 있을 것.

3. 장래에 걸쳐 재정의 건전한 운영이 예상되는 것일 것.

第33條의3 (法 第130條의2第2項에서 규정하는 누적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收入額) 법 제130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수입액은 다음 각호의 액으로 한다.

1. 법 제130조의2제2항의 인정이 있었던 날(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인정일”이라 한다) 이후에 당해 인정을 받은 기금(이하 “인정기금”이라 한다)이 징수한 부금액의 누적액에 관한 운용수입액

2. 인정일 이후에 법 제1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정기금이 지불받은 손해배상금액의 누적액

3. 인정일 이후에 법 제1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기금이 징수한 징수금액의 누적액

4. 인정일 이후에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기금이 징수한 징수금액의 누적액

5. 인정일 이후에 법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따라 인정기금이 후생연금기금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교부금액의 누적액

6. 인정일 이후에 국민연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5년 법률제34호, 이하 “법률 제34호”라 한다) 부칙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기금이 지급하는 연금급여중 1986년 4월전의 월분급여에 요하는 비용에 대하여 국고가 부담한 부담금액의 누적액

7. 인정일 이후에 법률 제34호 부칙 제8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기금이 지급하는 연금급여에 요하는 비용에 대하여 후생연금보험의 관장자인 정부가 부담한 부담금액의 누적액

8. 제2호 내지 전호에 게기하는 수입액에 관한 운용수입액

9. 전 각호에 게기하는 것 이외에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수입액의 누적액

第30條의4 (法 第130條의2第2項에 규정하는 누적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支出額) ①법 제130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支出額은 다음의 액으로 한다.

1. 인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후의 매사업연도에 인정기금이 지급하는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에 요하는 비용액에 대해 사업연도에 관계되는 적립금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다음 항에서 “단연도급여비지출액”이라 한다.)의 누적액

2. 인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후의 매사업연도에 인정기금이 법 제160조제3항(법 제162조의2에서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교부금액에 대해 사업연도에 관계되는 전호의 적립금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다음 항에서 “단연도연금급여교부금지출액”이라 한다)의 누적액

3. 인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후의 매사업연도에 인정기금이 법 제16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교부금액에 대해 사업연도에 관계되는 제1호의 적립금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다음 항에서 “단연도일시금급여교부금지출액”이라 한다)의 누적액

4. 전3호에 게기하는 것 이외에 인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후의 매사업연도에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지출액(다음 항에서 “단연도후생성령지출액”이라 한다)의 누적액

②전항제1호의 적립금비율은 인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후의 매사업연도에 각각 제1호의 액에 대한 제2호의 액의 비율로 한다.

1. 인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후의 1사업연도(다음 호에서 “특정사업연도”라 한다)의 전사업연도 말일에 인정기금의 연금급여등적립금(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에 충당하여야 할 적립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액

2. 특정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의 말일에 대해 인정기금이 인정일 이후에 징수한 부금액의 누적액과 전조 각호에 게기하는 수입액의 합계액의 합산액(다음 항에서 “인정일후수입액”이라 한다)으로부터 당해 말일까지 당해 인정기금이 인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후의 매사업연도에 지출한 단연도급여비지출액, 단연도연금급여교부금지출액, 단연도일시금급여교부금지출액 및 단연도후생성령지출액의 합계액의 누적액을 공제한 액

③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후의 다음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의 적립금비율은 인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에 당해 인정기금의 연금급여등적립금의 액에 대한 동일에 인정일후수입액의 비율로 한다.

第30條의5 (法 第130條의2第2項에서 규정하는 누적액에 관계되는 信託 또는 保險契約)

①법 제1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信託契約은 당해 계약에 관계되는 자산의 구성비율에 대하여 인정기금이 당해 계약에 관계되는 신탁회사와 협의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법 제1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保險契約은 당해 계약을 기초하여 설치하는 특별 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구성비율에 대하여 당해 계약에 관계되는 생명보험회사가 인정기금과 협의하고자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계약에 대하여, 동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계약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30條의6 (投資一任契約) 법 제1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일임계약은 인정기금이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투자자문업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1986년 법률제74호)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第30條의7 (投資一任契約을締結하는 경우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 金錢信託契約) ①법 제1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방법을 특정하는 금전신탁계약은 당해 계약에 관하여 인정기금이 체결하고 있는 투자일임계약에 관계되는 투자자문업자의 지도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회사가 당해 지도에서만 기금에 대하여 당해 계약에 관계되는 신탁재산을 운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 금전신탁계약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항제1호중 “금전신탁(운용방법을 특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운용방법을 특정하는 금전신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第30條의8 (法 第130條의2第4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基金) 법 제130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운용관리업무에 관하여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방침을 정하고 있을 것
2. 오로지 관리운용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를 두고 있을 것
3. 당해 기금에 사용되어 그 사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관리운용업무의 집행에 관계되는 사무를 적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가지는 자일 것일 것.

第30條의9 (法 第130條의2第4項各號에 게기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金融機關等) 법 제130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계약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것(일본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에 한한다)으로 한다.

1. 법 제13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계약 : 신탁회사
2. 법 제130조의2제4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계약 : 증권거래법(1948년 법률제25호) 제65조의2제1항의 인가를 받은 은행, 신탁회사 기타 동항이 정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동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면허를 받은 증권회사

3. 법 제130조의2제4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계약 : 은행,신용금고,신용금고연합회,노동금고,노동금고연합회,농림중앙금고,상공조합중앙금고,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연합회,어업협동조합,어업협동조합연합회,수산가공업협동조합 및 수산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로서 예금 또는 저금의 수입업무를 행하는 것.

第30條의10 (運用方法을 特定하는 金錢信託에 관계되는 확실로 인정되는 有價證券) 법 제13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유가증권은 다음에 게기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1. 국채,지방채 및 대부신탁의 수익증권

2. 특별법령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社債 및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으로서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것.

第31條 (연금급여등적립금의 管理·運用에 관한 계약에 기초한 권리양도등의 금지) 기금은 법 제130조의2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급여등적립금의 管理·運用에 관한 계약에 기초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6節 費用의 負擔

第32條 (차별적 취급의 금지) 기금이 정수하는 부금은 가입원중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을 행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第33條 (賦金額의 산정방법) ①부금액의 산정은 가입원의 標準報酬月額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방법 기타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부금액은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에 요구하는 비용의 예상액 및 예정운용수입액에 비추어 후생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래에 걸쳐 재정의 균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계산되는 것이어야 하며, 적어도 5년마다 이 기준에 따라 재계산되어야 한다.

第34條 (사업주의 부금부담비율을 증가할 수 있는 한도) 기금은 각 가입원이 부담하여야 할 부금액의 당해 가입원의 부금액에 대한 비율이 제1호에 게기한 액의 제2호에 게기하는 액에 대한 비율에 하회하지 않는 한도에서 설립사업소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부금액의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1. 가입원 모두가 가입원이 아닌 것으로 한 경우에 그들이 보험료로서 부담하여야 되는 액의 총액으로부터 그들이 보험료로서 부담하는 액의 총액을 공제한 액

2. 부금의 총액

第35條 (동일기금의 2이상의 설립사업소에 사용되는 경우의 부금) ①법 제1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부금액은 제1호에 게기하는 액에서 제2호에

계기하는 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가입원에게 관계되는 부금의 액에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부금액의 부담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당해 기금의 각 사업소에 대하여 당해 가입원이 당해 사업소로부터 받는 표준보수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을 이들 금액의 합산액으로 나누어 얻은 금액  
②법 제1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금액은 당해 가입원에게 관계되는 부금액에 전항제2호에 계기하는 수를 곱하여 얻은 액으로 한다.

第36條 (설립사업소 이외의 2이상의 사업소에 사용되는 경우의 징수금의 납부의무) 법 제14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납부하여야 할 징수금은 당해 사업주가 당해 기금의 설립사업소의 사업주라고 한 경우에 전조제2항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당해 가입원에 대하여 부금으로서 납부하게 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징수금으로 한다.

## 第7節 財政 및 會計

第37條 (事業年度) ①기금의 사업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개시하고 다음해 3월 31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개시의 초년도에 있어서는 사업개시일에 시작하고 다음해(사업개시가 1월 1일 이후 3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그해)의 3월 31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개시일이 다음 표의 좌란에 해당할 때에는 초년도의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각각 당해 우란에서 정하는 날로 할 수 있다.

10월 1일 이후 12월 31일 이전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해의翌翌年의 3월 31일
1월 1일 이후 3월 31일 이전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해의翌年의 3월 31일

第38條 (豫算) ①기금은 매사업연도 예산을 작성하여 사업연도개시전에 후생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②기금의 사업개시 초년도의 예산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11조제1항 혹은 법 제143조제4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기금설립의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합병에 의한 기금설립의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하여 후생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第39條 (決算) ①기금은 매사업연도 당해 사업연도종료후 6월 이내에 후생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및 당해 사업연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의 의견을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얻은 후에 후생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전항의 서류를 기금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가입원 및 가입원이었던 자는 기금에 대하여 전항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금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9條의2 (年金給與等積立金의 運用) ① 인정기금 및 법 제130조의2제4항의 인정을 받은 기금은 연금급여등적립금액 중 동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누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정의 운용방법에 집중하지 않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생성령으로 정한다.

第40條 (餘裕金의 運用) 기금의 업무상 여유금은 은행예금, 우편저금 기타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第41條 (借入金의 制限) 기금은 차입금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후생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8節 解散 및 清算

第42條 (解散의 公告) 기금이 해산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기금의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설립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해산의 이유
5. 해산인가 또는 해산명령의 연월일

第43條 (清算人の 公告) 기금은 청산인이 취임 또는 퇴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성명 및 주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들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第44條 (財產目錄등의 承認)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기금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후생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기타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후생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第45條 (年金給與 등의 供託) 청산인은 후생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이 해산한 날까지 지급하여야 하였던 연금급여 또는 일시금급여로서 아직 지급하지 않는 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第46條 (殘餘財產의 處分制限) 청산인은 기금의 채무를 변제한 후가 아니면 그 잔여재산

을 처분할 수 없다.

第47條 (決算報告書의 承認) ① 청산인은 청산이 종료한 때에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후생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은 청산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종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2주 이내에 청산이 종료하였다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第48條 (解散 및 清算人の 公告方法) 제42조, 제43조 및 천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제6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第2章 厚生年金基金聯合會

第49條 (聯合會의 부대사업) 법 제15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가 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회원인 기금이 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도 및 연락
2. 기금에 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
3. 기금이 행하는 사업 및 연금제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전각호에 게기하는 것 이외에 회원인 기금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第49條의2 (聯合會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法人) 법 제159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指定法人으로 한다.

第50條 (중도탈퇴자의 加入員期間) ① 법 제16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법 제16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기금의 가입원기간은 연금급여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가입원기간의 계산의 예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하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급여액의 산정기초로서 사용되어야 할 기간이 있을 때에는 당해 가입원기간에 그 연금급여액의 산정기초로서 사용되어야 할 기간을 더한 것으로 한다.

第51條 (年金給與등의 支給에 관한 義務移轉의 申請) ① 법 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탈퇴자에게 관계되는 연금급여(법 제16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가 당해 연금급여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가산된 액의 연금급여로 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가 일시금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일시금급여(법 제1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되어 적용하는 법 제16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가 당해 일시금급여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가산된 액의 일시금급여)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관한 의무의 이전신청은 후생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중도탈퇴자가 당해 기금의 가입원

의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여 3월 이내에 한정하여 행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신청하지 못한 것에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단서의 경우에 신청은 그 이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의 말일까지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第52條(現價相當額의 計算) 법 제160조제4항 및 제16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현가상당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한다.

1. 당해 중도탈퇴자가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당해 연금급여액(법 제16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가 당해 연금급여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산액을 공제한 액,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연금급여액의 상당액에 후생장관이 정하는 수를 곱하여 행한다.
2. 법 제16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가 당해 연금급여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가산액 및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가 지급하게 되어 있는 일시금급여액(법 제16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적용하는 법 제16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가 당해 일시금급여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산된 액의 일시금급여액)에 대하여는 연합회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第52條의2(연금급여의 加算額等의 基準) 법 제160조의2제3항 및 제162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가 연금급여액에 가산하는 금액 및 지급하는 일시금급여액은 법 제160조의2제3항 및 제162조의3제5항에서 규정하는 교부금 및 그 운용수입액과 대조하여 후생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래에 걸쳐 재정의 균형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산되어야 한다.

第52條의3(年金給與加算額의 算定方法) 법 제160조의2제3항 및 제162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급여액에 가산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연합회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第53條(殘餘財產의 處分) 해산한 연합회의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령으로 정한다.

第54條(準用規定) ① 다음 표의 左欄에 게기하는 규정은 각각 같은 표의 右欄에 게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準用한다.

제2조(제2호를 제외)	연합회의 규약변경
제3조(제4호를 제외), 제4조 및 제6조	연합회의 공고

제7조 내지 제13조	평의원회
제14조	연합회의 중도탈퇴자 및 해산기금가입원에 관한 원부
제19조	연합회가 지급하는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
제25조 내지 제27조	연합회가 지급하는 일시금급여
제28조	연합회가 지급하는 연금급여의 지불기월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3(제4호 및 제5호를 제외), 제30조의4(제1항제3호를 제외), 제30조의5 내지 제30조의8, 제30조의10 및 제31조	연합회가 행하는 연금급여등적립금의 管理·運用에 관한 계약
제37조(제2항을 제외) 내지 제41조	연합회의 재정 및 회계
제42조(제3호를 제외) 및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연합회의 해산 및 청산

② 전항의 경우에 다음 표의 左欄에 게기하는 규정중 같은 표의 中欄에 게기하는 字句는 각각 같은 표의 右欄에 게기하는字句로 대체한다.

제2조	법 제115조제2항	법 제15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5조제
	법 제115조제1항제	법 제153조제1항제2호
	법 제115조제1항제	법 제153조제1항제13호
제4조	전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4조에서 준용하는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제6조	전3조	제54조에서 준용하는 제3조 및 제4조
제9조	제11조	제54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
제10조제2항	제2조각호	제54조에서 준용하는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8조	제54조에서 준용하는 제8조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가입원 및 가입원이었던 자	연합회가 연금급여 또는 일시금급여 지급의무를지고 있는 중도탈퇴자 및 해산기금가입원
제19조	가입원 혹은 가입원이었던 자	연합회가 연금급여 또는 일시금급여 지급의무를지고있는 중도탈퇴자 혹은 해산기금가입원
제25조	다음 조 및 제27조	제54조에서 준용하는 제26조 및 제27조
제26조제1항	가입원 또는 가입원이었던 자	연합회가 연금급여 또는 일시금급여 지급의무를지고있는 중도탈퇴자 또는 해산기금가입원
제28조	법 제135조단서	법 제16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제135조 단
제30조	법 제130조의2제1항	법 제159조의2제1항
제30조의2	법 제130조의2제1항	법 제159조의2제2항
	법 제120조제3항	법 제158조제3항
	기금	연합회
제30조의3	법 제130조의2제2항	법 제159조의2제2항
	기금(이하 "인정기금"이라 한다)이 징수한 부금의	연합회(이하 "인정연합회"라 한다)가 법에 기초하여 기금 또는 해산한 기금으로부터 교부받거나 또는 징수한
	법 제136조	법 제164조
	인정기금이	인정연합회가
	부칙 제84조제1항	부칙 제85조에서 준용하는 법률 제34호 부칙 제84조제1항
	부칙 제84조제1항 내지 제5항	부칙 제85조에서 준용하는 법률 제34호 부칙 제84조제2항 내지 제5항
	제2호 내지 전호	제2호, 제3호 및 전2호
	전각호	제2호, 제3호 및 전3호
제34조의4	법 제130조의2제2항	법 제159조의2제2항
	인정기금	인정연합회

	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따라
	전3호	제1호 및 제2호
	징수한 부금의	법에 기초하여 기금 또는 해산한 기금으로부터 교부받거나 또는 징수한
	전조각호	전조각호(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단연도일시금급여교부 금지출액 및	및
제30조의5	법 제130조의2제2항	법 제159조의2제2항
	인정기금	인정연합회
	제30조제1항	제54조에서 준용하는 제30조제1항
제30조의6	법 제130조의2제2항	법 제159조의2제2항
	인정기금	인정연합회
제30조의7	법 제130조의2제3항	법 제159조의2제3항
	인정기금	인정연합회
	제30조제1항	제54조에서 준용하는 제30조제1항
제30조의8	법 제130조의2제4항	법 제159조의2제4항
제30조의10	법 제130조의2제4항 제1호	법 제159조의2제4항제1호
제31조	법 제130조의2제1항 내지 제5항	법 제159조의2제1항 내지 제5항
제38조제2항	법 제111조제1항 혹은 제113조제4항의 규정 에 기초하여 기금설립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 는 사업주 또는 법 제 142조제2항의 규정에	연합회의 설립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금의 이사장이 작성하여

	기초하여 합병에 의한 기금설립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설립위원 이 작성하여	연합회의 설립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금의 이사장이 작성하여
제39조	대의원회	평의원회
	후생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후생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입원 및 가입원이었 던 자	연합회가 연금급여 또는 임시금급여 지급의무 를 지고있는 중도탈퇴자 및 해산기금가입원
제39조의2	기금	연합회
	부금수입의	연합회가 법에 기초하여 기금 또는 해산기금 으로부터 교부받거나 또는 징수하는
제39조의3	인정기금	인정연합회
	법 제130조의2제4항	법 제159조의2제4항
	기금	연합회
제48조	제42조, 제43조 및 전 조제2항	제54조에서 준용하는 제42조(제3호를 제외한 다), 제43조 및 제47조제2항

### 第3章 雜 則

第55條 (法 第85條의2에서 규정하는 責任準備金相當額의 算出方法) 법 제85조의2에서 규정하는 책임준비금액은 연합회가 해산한 날에 당해 연합회가 연금급여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정부가 적립하여야 할 책임준비금이 당해 연합회가 해산함으로써 증가하는 액의 상당액으로서 후생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산정기초가 되는 책임준비금의 예정이율은 年 5푼5리로 한다.

第56條 (權限의 委任) 법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厚生長官의 權限(설립사업소의 소재지가 2이상의 도도부현에 걸쳐있는 기금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都道府縣知事에게 委任한다. 다만 후생장관이 제3호 내지 제5호에 게기하는 권한을 스스로 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법 제11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금의 규약변경의 인가에 관한 권한 중 동조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15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것
- 법 제14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금이 행하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처분에 대한 인가에 관한 권한
- 법 제14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권한
- 법 제17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한(연합회에 관한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1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한(연합회에 관한 경우를 제외한다)

附 則 (1966년 9월 27일 정령제324호)

第1條 (施行忌日) 이 정령은 196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第2條 (賦金額의 算定方法에 관한 經過措置) 제33조제2항의 규정의 운용에 대하여는 당분간 동항중 “예정운용수입”은 “예정운용수입 및 법률 제34호 부칙 제8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생연금보험의 관장자인 정부의 부담”으로 한다.

第3條 (現價相當額의 계산에 관한 經過措置) 제52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당분간 동조제1호중 “상당하는”은 “상당하는 액으로부터 법률제34호 부칙 제84조제2항 내지 제5항(법률제34호 부칙 제8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금급여에 대하여 후생연금보험의 관장자인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액을 공제한”으로 한다.

附 則 (1993년 7월 28일 정령제256호)

이政令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III. 退職年金規程(例)

####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회사는 退職年金制度(이하 “本制度”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원의 퇴직에 즈음하여 年金 또는 一時金을 지급하고 퇴직후의 복지와 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본규정을 정한다.

第2條 (適用範圍) 本規定의 적용을 받는 자는 회사에 고용된 사원중 停年까지의 豫定勤續年數가 만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第3條 (加入資格) 前條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本制度에 가입할 자격을 취득한다.

第4條 (加入時期) 가입자격을 취득한 사원이 本制度에 가입하는 시기는 가입자격취득 직후의 7월 1일로 한다. 다만 本制度발족시에 가입자격을 가지는 자는 本制度발족시에 가입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本制度에 가입한 자를 “加入者”라 한다).

#### 第2章 紿 與

##### 第1節 通 則

第5條 (給與의 種類)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퇴직연금 및 이에 대신하는 일시금
2. 유족연금 및 이에 대신하는 일시금

第6條 (年金의 支給期日 및 年金額) 年金은 매년 2월, 5월, 8월 및 11월의 각 20일에 당해 지급월의 전월분까지 지급한다.

第7條 (年金 및 一時金額의 單數處理) 年金月額에 10엔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10원 단위로 切上하고, 一時金額에 100엔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100엔 단위로 切上한다.

##### 第2節 退職年金

第8條 (退職年金의 受給權) 加入者が 다음의 1에 해당하여 生存退職한 때에는 퇴직연금

의 수급권을 취득한다(이하 “**退職年金受給權取得者**”라 한다).

1. 勤續 만 1년 이상이며 만 55세 이상에 퇴직한 때
2. 心身障害에 의하여 만 45세 이상에 퇴직한 때
3. 傷病休職期間滿了에 의하여 만 45세 이상에 퇴직한 때
4. 만 45세 이상에 당사 任員으로 취임한 때
5. 회사명령에 의하여 만 45세 이상에 외부전출한 때

**第9條** (退職年金의 支給期間) 퇴직연금수급권취득자는 受給權取得時에 퇴직연금의 지급 기간을 5년, 10년 및 15년 중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하고, 이는 年金支給開始期日前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第10條** (退職年金의 支給開始期日 및 그 延期)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일은 退職年金의 受給權을 取得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로 한다. 다만 퇴직연금수급권취득자는 受給權取得時에 만 65세를 한도로 희망하는 달까지 퇴직연금의 支給開始期日을 연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는 年金支給開始日前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第11條** (退職年金의 年金月額) 퇴직연금의 初年度 年金月額은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으로 하고 다음年度 이후의 年金月額은 前年度의 연금월액에 1.03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금의 일부를 一時金으로 지급한 후의 연금월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控除한 금액으로 한다. 또 퇴직연금지급개시일의 延期를 한 때의 초년도 연금월액은 아래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연기기간에 대응한 별표 2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다음 연도 이후의 연금월액은 전년도의 연금월액에 1.03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退職時의 기준급여에 勤續年數 및 年金支給期間에 대응한 별표1의 지급율을 곱한 금액
2. 근속연수 및 연금지급기간에 대응한 별표 1에 정한 금액

### 第3節 遺族年金

**第12條** (遺族年金의 受給權) 加入者, 退職年金受給權取得者 또는 퇴직연금지급기간중의 수급자가 다음의 1에 해당한 때에, 그 遺族은 遺族年金의 受給權을 취득한다(이하 “**遺族年金受給權取得者**”라 한다).

1. 加入者가 勤續 만 1년 이상이며 만 45세 이상에 死亡退職한 때
2. 退職年金受給權取得者가 연금지급개시기일 전에 死亡한 때
3. 퇴직연금지급기간중의 수급자가 사망한 때

第13條 (遺族의 範圍 및 順位) 遺族年金受給權取得者가 될 유족의 범위 및 순위에 대하여는 勤勞基準法 施行規則 제42조 내지 제45조의 規定에 準據한다.

第14條 (遺族年金의 支給期間)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 때 : 유족연금수급권취득자는 受給權取得時에 유족연금의 支給期間을 5년, 10년 또는 15년 중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2조제3호에 해당한 때 : 퇴직연금의 지급기간에서 年金支給必의 期間을 공제한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15條 (遺族年金의 支給開始期日 및 그 延期) 유족연금의 지급개시기일은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로 한다. 다만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수급권취득자는 受給權取得時에 受給權取得後 5년 이내의 희망하는 달까지 지급개시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하지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급개시기일의 연기는 퇴직연금의 연기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第16條 (遺族年金의 年金月額) ①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遺族年金의 初年度 연금월액은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으로 하고 다음 年度 이후의 연금월액은 前年度의 연금월액에 1.03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금의 일부를 一時金으로 지급한 후의 연금월액은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또 유족연금지급개시일의 연기를 한 때의 초년도 연금월액은 아래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延期期間에 대응한 별표 2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다음 연도 이후의 연금월액은 전년도의 연금월액에 1.03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死亡退職時의 기준급여에 근속연수 및 연금지급기간에 대응한 별표1의 지급율을 곱한 금액

2. 근속연수 및 연금지급기간에 대응한 별표 1에 정한 금액

②제12조제2호에 해당하는 遺族年金의 初年度 연금월액은 유족연금수급권취득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에 대응하여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연금월액의 계산에 있어서 연기기간을 유족연금지급개시기일까지의 기간으로 바꾸어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다음 年度 이후의 연금월액은 前年度의 연금월액에 1.03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금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한 후의 연금월액은 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의 초년도 연금월액은 퇴직연금의 연금월액과 同額으로 하고 다음 年度 이후의 연금월액은 전년도의 연금월액에 1.03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금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한 후의 연금월액은 위의 금액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第4節 年金에 代身하는 一時金

第17條 (選擇一時金의 支給條件) ①퇴직연금 혹은 유족연금수급권취득자 또는 퇴직연금  
· 유족연금지급기간중의 수급자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年金의 一時金支給을  
請求하여 회사가 이를 認定한 때에는 장래의 연금의 全部 또는一部에 대하여 연금지급  
에 대신하여 一時金支給의 取扱을 한다(이하 이 일시금을 “選擇一時金”이라 한다).

1. 災害

2. 重疾病 및 후유증을 수반하는 重症의 心身障害(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중질병, 후유  
증을 수반하는 중증의 심신장애 및 死亡을 포함한다)

3. 주택의 取得

4.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배우자를 제외한다)의 결혼 또는 진학

5. 債務의 辨濟

6.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실

②선택일시금의 청구시기는 상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 퇴직연금  
· 유족연금지급개시기일전에 限定하는 것으로 한다. 또 퇴직연금 · 유족연금의 一部에  
대한 選擇一時金의 請求時期는 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취득시에 限定하는 것으  
로 한다.

③유족연금수급권취득자 또는 유족연금지급기간중의 수급자가 死亡한 때에는 次順位의  
유족연금수급권취득자에게 선택일시금을 지급한다.

第18條 (選擇一時金의 計算) ①연금지급개시기일전에 一時金을 選擇한 때에는 다음과 같  
이 계산한다. 또 연금의 지급을 연기하고 있는 경우의 선택일시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初  
年度 年金月額은 제11조 또는 제16조에 규정하는 초년도 연금월액계산에서 연기기간을  
일시금선택시까지의 기간으로 바꾸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年金의 全部를 一時金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초년도 연금월액에 연금지급기간(퇴  
직연금 및 유족연금수급권취득시에 선택일시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금지급기간을  
15년을 본다)에 대응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이 비율들을 “年金  
現價率”이라 한다)

연금지급기간이 5년인 때 : 54.02379

연금지급기간이 10년인 때 : 99.73505

연금지급기간이 15년인 때 : 138.41281

2. 연금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75%, 50% 또는 25% 중 하나의 비율(이  
하 “一時金選擇率”이라 한다)을 선택하는 것으로 하고 초년도 연금월액에 일시금선

택율을 곱하고 여기에 연금현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연금지급개시기일 이후에 일시금을 선택한 때에는 선택시에 受給중의 연금월액에 残餘年金支給期間에 대응한 별표 3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연금현가율계산에 사용하는 비율을 연 6.5%로 한다.

第19條 (少額年金의 取扱) 제11조에 의한 초년도 퇴직연금월액 또는 제16조에 의한 초년도 유족연금월액이 5,000엔 미만의 경우에는 연금지급에 대신하여 일시금을 지급한다.

### 第3章 制度의 運營

第20條 (制度의 運營方法) ①회사는 本制度의 건전한 운영을 꾀하기 위하여 加入者를 被保險者 및 受益者로 하여 생명보험회사 및 신탁은행과 각각 기업연금보험계약 및 연금신탁계약을 체결하고 企業年金保險契約에 관계되는 保險料積立金(이하 “保險料積立金”이라 한다) 및 年金信託契約에 관계되는 年金信託財產(이하 “年金信託財產”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은 이를 각 수탁회사에서 행하게 하며, 연금급여의 사무는 이를 ○○생명보험상호회사에서 행하게 한다.

②보험료적립금 및 연금신탁재산의 委託比率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업연금보험계약 : 81%

2. 연금신탁계약 : 19%

第21條 (賦金의 負擔) ①本規定에서 정하는 급여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정한 年金計理에 기초하여 정해진 所要賦金은 全額 회사가 부담한다.

②회사는 전항의 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입한 달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달까지 매월 각출한다.

1. 각 加入者の 기준보수합계액의 3.48% 相當額

2. 각 가입자 1인당 2,990엔

第22條 (過去勤務債務) ①회사는 本制度 실시에 따른 과거근무채무등의 금액의 債却에 요하는 賦金을 全額 부담한다.

②과거근무채무등의 금액의 계산방법은 洗替一括管理方式으로 한다.

③과거근무채무등의 금액의 상각은 法人稅法 施行令 제159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 상각비율은 매년 100분의 6.67로 한다.

④회사는 전항에서 정하는 부금으로서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입한 달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달까지 매월 각출한다.

1. 각 가입자의 基準報酬合計額의 5.36% 相當額

2. 각 가입자 1인당 6,380엔

第23條 (制度運營의 費用) 회사는 前2조에서 정하는 賦金 이외에 제20조에서 정하는 기업연금보험계약에 관계되는 附加保險料를 全額 부담한다.

第24條 (賦金額의 再計算) 會社는 3년마다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정하는 本制度의 賦金額 및 그 算出根據를 재계산하고 필요에 따라 그 수정을 행한다. 다만 다음 회의 재계산일은 1900년 0월 0일로 한다.

第25條 (超過留保額의 返還) 前條에서 정하는 賦金再計算時에 보험료적립금 및 연금신탁재산이 法人稅法 施行令 제159조제7호에서 정하는 퇴직연금의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보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에 회사는 당해 초과부분의 반환을 받아 이를 수령하는 것으로 한다.

第26條 (制度의 開閉) ①本制度가 폐지된 때에는 보험료적립금에 대하여는 제2항에 의하여 분배하고, 연금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분배한다.

②보험료적립금은 각각의 責任準備金에 비례하여 각 가입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연금지급기간중의 수급자에 대응하는 보험료적립금은 분배하지 않고 당해 수급자에게 계속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③연금신탁재산은 이미 연금지급을 개시한 수급자에 대하여 그자와 관련한 責任準備金相當額을 분배한다. 다만 연금신탁재산이 부족할 때에는 책임준비금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④前項에 의한 분배를 행하여 연금신탁재산에 殘餘가 있을 때에는 전항에 규정한 수급자를 제외한 각 가입자에 대하여 책임준비금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 第4章 雜 則

第27條 (年金 및 一時金의 受給節次) 퇴직연금수급권취득자 및 유족연금수급권취득자는 수급권취득시에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紿與의 種類, 一時金選擇率, 年金支給期間 및 年金支給開始期日에 대하여 그 선택결과를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1.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
2. 인감등록증명서
3. 급여청구서
4. 기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

第28條 (讓渡擔保의 禁止) 本制度에 기초한 연금 및 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第29條 (勤續年數의 計算) ①근속연수는 채용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하고, 그 단수는 月割로 계산한다. 월할계산을 할 때에는 15일 이하를 버리고 16일 이상을 切上하여 1개월로

한다. 다만 死亡退職을 할 때에는 1개월 단위로 切上한다.

②근속연수에 다음의 기간이 있을 때에는 단체협약 제25조의 취급에 의한다.

1. 상병휴직기간

2. 특별휴직기간

3. 자기사정에 의한 휴직기간

第30條 (基準報酬) 本制度에서 사용하는 기준보수는 회사의 報酬規定에서 정하는 기본급에 41,600엔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紿與算定額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가입자의 퇴직시 또는 사망시의 기준보수로 한다.
2. 賦金算定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매년 7월 1일 현재의 기준보수로 하고, 그 해의 7월부터 다음 해의 6월까지 적용한다.

第31條 (支給制限) 가입자가 團體協約 제28조제8호에서 정하는 懲戒解雇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本制度에 의한 연금을 減額하거나 혹은 지급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

#### 附 則

本制度는 19〇〇년 ○월 ○일부터 실시한다.



## IV. 우리나라의 公的年金 · 退職金 · 個人年金貯蓄 관련 稅法規程

### 1. 所得稅法

法 第5條 (非課稅所得) 다음 각호의 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나) (생략)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負傷 · 疾病 또는 死亡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年金과 慰藉의 성질이 있는 紿與

(라) 國民年金法에 의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 · 장해연금 ·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마) 前職大統領禮遇에 관한법률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편국법에 의하여 退職者 · 退役者 또는 死亡者의 유족이 받는 紿與

(바)~(하) (생략)

5~6 (생략)

法 第22條 (退職所得)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甲種

(가) 퇴직급여

甲種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甲種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乙種

乙種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

②퇴직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1. 甲種

(가) 퇴직급여

퇴직급여액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나)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에서 그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 단체퇴직보험금

단체퇴직보험금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2. 乙種

퇴직급여액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④ 國民年金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退職金轉換金은 제1항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 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⑤ 제2항 각호의 규정중 공제하는 금액을 “退職所得特別控除額”이라 한다.

法 第33條 (退職給與充當金의 必要經費計算) ①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居住者가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计上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算入한다.

② 사계

③ 퇴직급여충당금의 處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法 第62條 (退職所得控除) ① 退職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는 당해年度의 退職給與額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勤績年數(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을 控除한다.

〈勤績年數〉 〈控除額〉 (생략)

② 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退職給與額에서 控除하는 金額은 退職給與額에서 退職所得特別控除를 한 金額을 限度로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规定에 의한 控除를 “退職所得控除”라 한다.

④ 退職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당해年度중에 2회이상 退職함으로써 退職給與를 받는 때에는 당해年度의 退職給與의 合計額에 1회에 限하여 退職所得控除를 한다.

⑤ 第61條第5項의 规定은 第1項의 退職所得控除에 있어서 이를 準用한다.

法 第70條 (稅率)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 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생략)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稅額으로 한다.

③~⑩ (생략)

令 第60條 (不動產所得등의 必要經費의 計算) ①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으로 한다.

1~9 (생략)

9의2.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團體退職保險”이라 한다)의 보험료

9의3~19 (생략)

②~⑤ (생략)

⑥제1항제9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이 전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直前年度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⑦제1항제9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는 과세표준核定신고서에 財務部令이 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1항제9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을 산입한다.

令 第65條 (退職給與充當金의 必要經費計算)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당해연도에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이 전원 퇴직할

-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외더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③법 제33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염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가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 ⑤녹색신고자가 이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상당액을 금융기관·보험회사등에 예치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중 퇴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規則 第15條 (退職所得의範圍) ①법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3.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 ②삭제

③퇴직공로금·퇴직위로금과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라)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 2. 法人稅法

法 第13條 (退職給與充當金의 損金算入) ①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損金으로 계상한 때에는 大統領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損金에 산입한다.

## ②삭제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퇴직급여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令 第13條 (福利厚生費)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를 손비로 한다.

#### 1~3 (생략)

4.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가목의 지출금액에 한한다.

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의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신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의자로 하는 신탁(이하 "종업원퇴직신탁"이라 한다)의 부금

#### 5~8 (생략)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 및 종업원퇴직신탁(이하 "단체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및 부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월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총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및 신탁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등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금등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令 第18條 (退職給與充當金의範圍)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총당금이라 함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해 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총당금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총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법 제1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

입되는 상여금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③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법 제1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規則 第7條 (退職給與充當金의 計算 등) ①영 제18조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

$$\text{퇴직급여충당금} = \text{연간지급총급여액} \times 10\%$$

2.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

$$\text{퇴직급여충당금} = \text{당해 사업연도지급총급여액} \times 10\%$$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③및 ④삭제

⑤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6-3(2)호서식을 준용한다.

### 3. 租稅減免規制法

法 第80條의2 (個人年金貯蓄에 대한 所得控除 등) ①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貯蓄(이하 “個人年金貯蓄”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②個人年金貯蓄의 加入者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만료전에 중도해약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所得稅法 제1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所得稅를 부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所得控除를 받은 者가 저축가입일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中途解約한 경우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金融機關(이하 “個人年金貯蓄取扱機關”이라 한다)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2천원을 限度로 하며, 이하 “中途解約追徵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중도해약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④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해외이주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 ⑤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약추징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稅額에 未達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기관이 중도해약 추징세액에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⑥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 개인연금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中途解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⑦ 개인연금저축의 所得控除·所得稅非課稅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今 第75條의2 (個人年金貯蓄의 範圍등) ①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라.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체신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 마.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조합(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 가입대상이 만 20세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이상일 것. 다만, 1949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자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은 별표8에 의한다.

4.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체신보험의 경우에는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안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1인이 2이상의 계좌에 가입한 경우의 금액계산은 매월 또는 3월마다의 불입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 ②법 제8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취급기관은 저축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한 분과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법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規則 第40條의2 (個人年金貯蓄의 範圍等) ①법 제80조의2제4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휴업·폐업
  3. 저축가입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4. 저축가입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②법률 제474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보험과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중 생명공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변경일 현재 만 20세이상일 것
  2. 당초 보험계약내용이 보험료 불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매월 또는 3월 단위로 적립식으로 불입하는 보험일 것
  3. 당초 계약내용이 계약만료일 이후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거나 약관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일 것
- ③~④ (생략)

## 외국법제분석 94-3 日本의 企業年金法制 分析

---

1994年 9月 10日 印刷

1994年 9月 15日 發行

發行人 張 明 根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株) 韓國컴퓨터産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화 : 722-2901/3, 722-0163/5  
등록번호 : 1981. 8.11 제 1-190호

---

本院의 承認 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원 3,000원

